



# HOMO MIGRANS

Vol.29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2023

Nov.

■ 특집 · 인종과 문화·정치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History

Homo Migrant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Vol.29(Nov. 2023)

# 이주사학회 운영진

회장 오영인(평택대)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문종현(세종대)  
학술이사 구지훈(창원대)  
김대보(원광대)  
라영순(연세대)  
이은영(부산대)  
정재현(목포대)  
대외협력이사 김정식(신라대)  
다문화교육이사 윤종필(동국대)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양재혁(한성대)  
편집위원 정용숙(춘천교육대)  
김정욱(인천대)  
허 현(충남대)  
고유경(원광대)  
이용재(전북대)  
문경희(창원대)  
이경일(경성대)  
정대성(부산대)  
신동규(창원대)  
해외편집위원 Klaus DITTRICH(EdUHK)  
Kyungmi KIM(Paris 7)

## 감사

마은지(송실대)

주소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우정당 310호  
문종현 교수 연구실

전화번호 02-3408-3953

홈페이지 <http://www.homomigrans.com>

이메일 [homomigrans@gmail.com](mailto:homomigrans@gmail.com)

편집위원회 전용 이메일 [homomigransed@gmail.com](mailto:homomigransed@gmail.com)

회비 일반회원- 6만원(자동이체: 월 5천원), 학생회원- 1만원

납부계좌번호 국민은행 781402 04 104469 문종현(이주사학회)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29호(2023년 11월)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지은이 · 펴낸곳 이주사학회

주소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우정당 310호

문종현 교수 연구실

전화번호 02-3408-3953

이메일 [homomigrans@gmail.com](mailto:homomigrans@gmail.com) 홈페이지 <http://www.homomigrans.com>

ISSN 2093-3061

---

#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

2023년 11월  
ISSN: 2093-3061

<편집자의 글>	5
<특집논문> 인종과 문화·정치	
· 허락되지 않은 면죄부: 영화 <치욕의 대지(Mudbound)> 깊이 보기 ————— 오영인	7
· 인종위기의 리듬: 아이스 큐브의 갱스터 랩 <Black Korea> ————— 이찬행	28
· 흑인법(code noir)의 식민지성: 호모 사케르 만들기 — 문종현	53
<일반논문>	
· 6세기 전반 近江毛野臣의 한반도 행적 검토 ————— 박민경	81
·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독일 튀빙겐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 육영수	115
<연구회 휘보>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호모 미그란스』 원고 작성법>	
<『호모 미그란스』 편집 규정>	
<연구회 회칙>	

이주사학회

---

# Homo Migrans- Migration, Colonialism, Racism

---

Nov. 2023  
ISSN: 2093-3061

<Editorial>	5
<Special> Race, Culture and Politics	
· Unacceptable Indulgence: Deep Learning from a Movie “Mudbound” ————— Oh, Young In	7
· Rhythm of Racial Crisis: Ice Cube’s Gangster Rap “Black Korea” ————— Lee, Chanhaeng	28
· The Coloniality of Code noir: Making Homo sacer ——— Moon, Jong-Hyun	53
<Article>	
· An Examination of Ohuminokenanoomi’s Life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irst Half of the Sixth Century ——— Park, Min-Kyung	81
· A Happy Individual Rather Than a Proud Korean: An Oral Life-History of Female Korean Diaspora in Tübingen, Germany ——— Yook, YoungSoo	115
<Bulletin>	
<Ethic Rules>	
<Editing Rules>	
<Contribution Rules>	
<Association Rules>	

Korean Society for Migration History

## Homo Migrans

“이제 전 세계의 지구촌화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함께 인간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가 요구되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의 자기 성찰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모 미그란스(Homo Migrans)의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담론을 넘어서는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 편집자의 글 ■

『호모미그란스』 29호는 ‘인종과 문화·정치’ 특집을 마련했다. 오영인은 「허락되지 않은 면죄부: 영화 <치욕의 대지(Mudbound)> 깊이 보기」에서 미국에서 인종 혐오와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 <치욕의 대지(Mudbound)>에 주목한다. 논문은 영화 <치욕의 대지>를 통해 쿠클릭스클랜(Ku Klux Klan: 이후 클랜)의 역사적 지속성을 확인한다. 논문은 미국에서 인종갈등과 혐오의 역사가 세대를 이어 대물림되며 지속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클랜의 활동 또한 한 번도 소멸되거나 사라진 적이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한다. 논문에 따르면, <치욕의 대지>는 클랜의 지속성이 클랜의 본질인 지역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레퍼런스로서, 클랜의 지역성 혹은 지역문화가 어떻게 작동했으며 어떤 근거와 논리로 인종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었는지 그 행태를 클랜의 긴 역사성 속에서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찬행의 논문 「인종위기의 리듬: 아이스 큐브의 갱스터 랩 <Black Korea>」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한 갱스터 래퍼 아이스 큐브가 1991년 10월에 발표한 곡 <Black Korea>에 의해 로스앤젤레스의 한·흑 관계가 악화되었던 과정과 아이스 큐브의 노래에 분노한 한인들의 집단적 대응에 대해 분석한다. <Black Korea>가 실려 있는 아이스 큐브의 앨범 <<Death Certificate>>는 높은 수준의 랩으로 구성됐다고 평가받지만, <Black Korea>의 가사는 노골적으로 한인 이민자 상인들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로스앤젤레스 한인 커뮤니티는 <Black Korea>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실행한다. 이찬행은 논문에서 한·흑 관계의 갈등뿐만 아니라, 아이스 큐브의 유감 표명을 비롯한 흑인과 한인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을 환기한다. 그러나 1991년 겨울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혐오 관련 사건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한·흑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향후 발생하게 될 폭동 사태를 예고하는 불안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형성됐다고 논문은 설명한다. 문종현은 「흑인법(code noir)의 식민지성: 호모 사케르 만들기」는 프랑스령 식민지 노예제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흑인법(Code noir)이 지닌 식민지성을 이탈리아 정치 철학자 조르지오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개념을 통해 분석한다. 논문은 흑인 노예의 사회적 지위와 의무, 그리고 노예 주인 지배자의 권리를 규정한 1685년 루이 14세 치하 프랑스에서 제정된 흑인법(Code noir)은 메트로폴리스 프랑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에 적용된 새로운 법률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흑인법은 프랑스에서 흑인=노예라는 등식을 최초

로 성립시킨 법률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논문은 흑인법은 흑인 노예가 왕국의 신민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주체가 아닌 오로지 법률의 대상일 뿐이었음을 주장하며, 프랑스 본국에는 인정되지 않던 노예제를 법률로 정당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한다.

『호모미그란스』 29호는 한국고대사와 구술사 분야의 일반논문 2편을 소개한다. 먼저, 박민경의 「6세기 전반 근강모야신(近江毛野臣)의 한반도 행적 검토」는 탁순과 안라의 자존을 위한 중재와 한반도 각국의 동향 파악 및 韓子の 통제 및 정리를 위해 야마토 정권이 파견한 사신 근강모야신의 외교 활동이 6세기 전반 한반도 외교 지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박민경에 따르면, 『일본서기』가 전하는 모야신의 행적은 ‘임나지배’를 전제로 기술되었지만, 그 실상은 탁순과 안라 그리고 야마토 정권 간 정치적 실리가 합치된 결과이자 탁순과 안라의 국가적 실리를 위한 활동으로 양국의 정치적 질서 하에서 이뤄졌다. 논문은 모야신(毛野臣)에게 부여된 역할이나 파견된 목적 등은 결과적으로는 성취되지 못했지만, 모야신의 행적은 이후 안라와 백제의 외교방식의 다양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다시 말해 박민경은 모야신의 외교 활동이 안라와 백제가 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왜계관료를 기용하여 야마토 정권과의 외교를 전개해 나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육영수의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독일 튀빙겐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현재 독일 튀빙겐에 거주하는 파독 간호사 출신 한인 여성(Ms. Oh)의 생애를 소개한다. Ms. Oh는 고국에서 겪었던 두 딸의 어머니이자 이혼녀로서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 파독간호사로 지원하여 독일로 건너갔다. 슈투트가르트 병원에 배치된 Ms. Oh는 같은 직장에서 대체 군복무 중이었던 독일 남성과 재혼 후 튀빙겐으로 이주했다. 한국에 두고 온 자녀들을 입양하고 재혼으로 얻은 아들딸을 부양하기 위해 Ms. Oh는 피부 관리사와 미용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30년 동안 개인사업을 경영했다. 육영수의 논문은, 합리적인 ‘독일 시스템’ 덕분에 독일에서 보낸 반세기는 행복했었지만, 교포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독일 사회에도 동화되지 못한 외톨이 인생을 살았다는 Ms. Oh의 회고를 소개한다. 논문은 민족의 거대 서사에서 기대할 수 없는 행복을 찾는 개인의 삶에 대한 반추와 회고를 담은 구술사를 통해 사생활의 역사 또는 가족의 역사가 들려주는 삶의 경험과 의미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허락되지 않은 면죄부: 영화 <치욕의 대지(Mudbound)> 깊이 보기

오 영 인

### I. 서론

“인생은 스승, 시간은 치유자(healer)  
 그리고 나는 야생의 강과 같은 신자(believer)  
 자존심은 살인자, 탐욕은 괴물이다  
 그러나 사랑은 그들 모두보다 강하고 강하다  
 손에는 백기, 나는 싸우고 싶지 않다  
 모래 위에 선은 없어, 난 네 편이야  
 이제 우리 사이의 차이들은 제쳐두어야 할 때다.”  
 - 영화 <치욕의 대지> OST 중

2017년 1월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 행정부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행정부로 정권교체 되었다. 일견 미국 민권운동 역사의 상징이자 가장 가시적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되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와는 전혀 다른 정책 성향과 신념을 내세운 트럼프는 선거운동 내내 인종주의적 발언들을 쏟아내며 백인 유권자들을 결집시켰다. 즉,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라는 자국 우선주의 슬로건 하에 전(全)지구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반(反)세계화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反)이민, 반(反)이슬람을 주장하며 인종간 혐오와 갈등의 불씨를 당겼다. 미 연방수사국 FBI 통계에 의하면 스스로 인종주의자임을 드러내기 시작한 증오단체들은 2017년 926개에서 2019년까지 2년 사이 100개 이상이 증가한 1,030개였고 이중 백인우월주의 단체임을 당당히 밝힌 단체는 2017년 100여 개에서 2019년 거의 100% 증가

한 196개로 증가했다. 여기에 2019년 중국에서 시작되어 전파된 COVID-19로 인해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까지 더해져 미국 내 증오단체들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sup>1)</sup>

우선 혐오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혐오 표현의 사전적 의미는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취향) 등에 기반을 둔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해 증오나 폭력을 유도할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경멸적이거나 차별적인 표현”이다.<sup>2)</sup> 문제는 이러한 혐오가 범죄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 법무부가 규정하는 증오범죄는 “혐오를 바탕으로 폭행, 살인, 방화, 기물파손, 그리고 실제 저지르지 않더라도 범죄를 예고하고 위협, 혹은 청부하는 등을 포함하는 모든 폭력적인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실제 미국 사회의 증오범죄는 2021년 1만840건으로 전년도의 8천52건과 비교해 3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그렇다면 인종혐오나 증오범죄가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분출된 것인가? 미국 역사에 있어서 인종갈등과 관련 범죄는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인종문제는 미국 사회에 있어서 변수가 아니고 상수이다. 특히 흑인과의 인종갈등은 그 역사가 길고 지독히 깊다. 남북전쟁 이후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 된 흑인과의 접촉이 악몽이 아닌 현실이 되자 미국은 흑인을 백인 사회에서 완벽하게 분리해내는 인종분리(Segregation)를 실시했다. 그와 함께 린치(Lynch) 등의 인종폭력을 행사하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흑인들을 실질적인 노예상태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과 차별은 사회 전반 구석구석에서 탄탄하게 재생산되었다. 그런데 1960년대 거대한 사회개혁의 물결 속에서 흑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위한 민권운동이 거세게 불어닥쳤고 1964년 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은 학교나 작업장 그리고 모든 공공시설에서의 인종분리가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듬해 1965년 투표권법(Voting

---

1) 인터넷 기술과 SNS 관계망의 발달로 인터넷 혐오단체 또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손쉽게 만들고 가입도 용이한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속 증오 집단은 특정 과별이나 집단에 웹메일 필요도 없이 혐오의 대상을 확대해가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계도 국경도 허물면서 넘나들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4062700009> (검색일: 2023년 10월 11일).

2) <https://dictionary.cambridge.org/us/dictionary/english/hate-speech> (검색일: 2023년 11월 01일)

3) <https://www.justice.gov/hatecrimes/learn-about-hate-crimes/chart> (검색일: 2023년 11월 01일)

Rights Act of 1965)으로 유색인들도 실질적인 참정권을 통해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민권법과 투표권법의 제정 60년을 맞이하는 지금 인종갈등과 차별은 사라졌는가? 인종분리라는 단어가 범조문에서는 지워졌을지 몰라도 인종혐오와 증오집단은 지금도 더 다양하고 정교한 외피를 쓰고 존재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증오집단은 “인종, 국가, 종교, 성별, 성적 취향 또는 기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적개심과 악의를 조장하여 폭력을 옹호하고 실행하는 사회집단”이다.<sup>4)</sup> 미국 역사에서 쿠클럭스클랜(Ku Klux Klan: 이후 클랜)만큼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은 없다. 클랜은 1865년 12월 24일 남북전쟁 직후 남부연합군 출신 퇴역군인들이 처음 조직한 이후 성장과 쇠퇴 과정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미국의 상징적 증오집단이다. 전후 남부의 소위 ‘잃어버린 대의(Lost Cause)’를 되찾기 위해 조직된 클랜은 백인우월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인종차별적 폭력단체로 1871년 쿠클럭스클랜법(Ku Klux Klan Act of 1871)으로 해체되는 듯했으나 시기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오히려 증오의 대상을 흑인에서 반이민, 반카톨릭, 반유대주의, 반공주의 그리고 동성애 혐오 등으로 확대하며 오늘날까지 인종차별적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클랜의 폭력성

4) <https://dictionary.cambridge.org/us/dictionary/english/hate-speech> (검색일: 2023. 11. 01.)

5) 학계에서 그동안 클랜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클랜이 등장한 역사적 배경, 클랜의 조직과 확장 전략, 클랜의 종교적 신념과 상업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주제가 소개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연구들은 다음 참조. Arnold S. Rice, *The Ku Klux Klan in American Politics* (New York: Haskell, 1972); David M. Chalmers, *Hooded Americanism: The History of the Ku Klux Klan* (New York: F. Watts, 1981); Leonard J. Moore, *Citizen Klansmen: The Ku Klux Klan in Indiana, 1921-1928*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1); Roland G. Fryer Jr. and Steven D. Levitt, “Hatred and Profits: Under the Hood of the Ku Klux Kla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7-4(2012), pp. 1883-1925; Paul Easterling, “KKK Christology: A Brief on White Class Insecurity,” in Stephen C. Finley, Biko Mandela Gray, Lofi Latrice Martin (eds.), *The Religion of White Rage: Religious Fervor, White Workers and the Myth of Black Racial Progres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0), pp. 125-134. 여성 클랜에 대한 연구는 다음 참조. Kathleen M. Blee, *Women of the Klan: Racism and Gender in the 1920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Nancy Maclean, *Behind the Mask of Chivalry: The Making of the Second Ku Klux Kl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을 시의적절한 시기에 영화화한 작품이 <치욕의 대지(Mudbound)>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 1월에 개봉한 <치욕의 대지>는 극작가이자 영화감독인 디앤드리아 리스(Diandra Rees)가 힐러리 조던(Hillary Jordan)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골든 글로브를 비롯해 아카데미와 오스카 시상에서 각색상, 촬영상, 여우조연상 등 7개 이상 부문에 후보를 올리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남부 미시시피가 시공간적 배경인 이 영화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흑인과 백인 참전 병사를 중심으로 인종혐오의 잔혹성을 다룬 이야기이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소작농 백인 가족을 등장시켜 계급 갈등과 젠더 문제까지 밀도 있게 다루고 있다.

물론 미국 남부에서 클랜이 자행한 흑인에 대한 인종폭력을 다룬 영화가 <치욕의 대지>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이 영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영화를 통해 클랜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클랜에 대한 연구는 1기부터 4기 혹은 첫 번째 클랜부터 네 번째 클랜까지로 그 역사적 시기를 도식적으로 나누어 클랜의 성장과 쇠퇴를 분절적으로 다뤘었다. 도식적으로 정리하자면, 1기 클랜은 1865년을 시작으로 1871년 클랜법으로 사라졌다가 1915년을 기점으로 2기 클랜이 부활했고 1944년 탈세 문제로 다시 해산되었다가 1960년대 민권운동의 반작용으로 3기 클랜이 재등장했다. 이후 1965년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의 강경 대응으로 소멸되었으나 1970년대 말 경제적 불안으로 마지막 4기가 재부활했다는 것이다.<sup>6)</sup> 그러나, 미국에서 인종갈등과 혐오의 역사가 세대를 이어 대물림되며 지속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클랜의 활동 또한 한 번도 소멸되거나 사라진 적이 없다. 특히 클랜의 역사 중 전국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전성기를 누렸다고 평가되는 2기 클랜은 1944년 해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국적 조직은 와해되었을지 모르나 지

---

1994); Linda Gordon, *The Second Coming of the KKK: The Ku Klux Klan of the 1920s and the American Political Tradition* (New York: Liveright, 2017). 국내 연구로는 다음 참조. 안윤모, 「1920년대 쿠클럭스클랜과 도덕 개혁」, 『미국사연구』, 17호(2003), 77-98쪽; 황혜성, 「1920년대 KKK: 하얀 두건, 검은 속셈」, 『서양사론』, 122호(2014), 82-111쪽; 김인선, 「1920년대 여성쿠클럭스클랜의 활동과 KKK의 성정치」, 『여성과역사』, 37호(2022), 215-253쪽.

6) 안윤모, 「1920년대 쿠클럭스클랜과 도덕개혁」, 77쪽; 황혜성, 「1920년대 KKK: 하얀 두건, 검은 속셈」, 82-83쪽.

역의 클랜맨(Clan-man)들의 활동은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도 개별 주, 카운티, 그리고 타운에서 그 기세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 영화 <치욕의 대지>는 바로 이 시기 어떻게 잔인한 인종폭력이 지역에서 계속 자행되었는가를 증명해 보인다. 다시 말해 이 영화는 클랜의 지속성이 클랜의 본질인 지역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충분한 레퍼런스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영화 <치욕의 대지>를 통해 클랜의 지역성 혹은 지역문화가 어떻게 작동했으며 어떤 근거와 논리로 인종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었는지 그 행태를 클랜의 긴 역사성 속에서 재고해보고자 한다.

## II. 영화이야기

영화 <치욕의 대지(Mudbound)>는 소설가 힐러리 조던의 처녀작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조던의 소설은 인종차별의 아물지 않은 어찌면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으며 소설이 출간되기도 전인 2006년 미출판 처녀작에 주는 벨웨더상(the Bellwether Prize)을 수상하기도 했다. 소설의 모티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조던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실제로 도시에서 갑자기 남부 아칸소의 작은 시골 농가로 이사하면서 경험한 고단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반복적으로 나누던 일상의 대화였다.<sup>7)</sup> 그렇게 전쟁의 상흔을 겪어야 했던 백인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소설은 점차 더 다양한 사람들의 더 많은 목소리, 특히 일상에서 암묵적으로 침묵 당한 목소리를 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짐 크로우(Jim Crow) 남부를 그저 역사책에서만 읽는 것과 실제 멀쩡한 버스 기사가 흑인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며 풍만한 백인 여성이 앉을 수 있게 입 닦치고 고개 숙여 버스에서 내리라고 으박지르는 현장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입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sup>8)</sup> 조던에게 미국 남부는 하나의 지역적 설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제 행동하는 중요한 캐릭터이기도 했다. 남부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이기에 그러하다.

영화 <치욕의 대지>는 1945년 이후 남부 미시시피의 영세한 농장주인 백

7) Edward Piacentino, “Hillary Jordan’s *Mudbound* and the Neo-Segregation Narrative,” *The Mississippi Quarterly*, 67-2(2014), pp. 268-270.

8) *Ibid.*, p. 267, 재인용.

인 가족과 그 농장의 소작농인 흑인 가족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로, 등장 인물들이 각자의 입장을 독백형식으로 이끌어나간다.<sup>9)</sup> 영화에 등장하는 백인의 캐릭터는 3가지로 구분된다. 흑인을 인간 이하로 간주하는 전형적인 남부 클랜맨(Klan-man)인 주인공의 아버지와 흑인을 노예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인종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주인공의 형, 그리고 흑인과 거리낌 없이 소통하는 주인공 제이미이다.<sup>10)</sup>

영화는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였던 아버지를 매장하기 위해 백인 형제가 진흙을 파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원래 도시에 살고 있었던 형 부부와 아버지는 농장주가 꿈이었던 장남의 의지로 농장의 저택으로 이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주택 사기를 당해 흑인거주지역인 농장 근처로 이사하면서 소작농이었던 주인공 론셀 가족과의 관계가 설정된다. 주인공 제이미와 론셀은 2차 대전에서 각각 공군 조종사와 전차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전후 고향인 미시시피로 돌아와 전역 군인으로 마주한다. 두 사람은 똑같이 전쟁을 경험했으나 그 의미는 서로 달랐다. 전투기에 동승한 전우가 바로 옆에서 피를 쏟으며 전사하는 것을 목격한 제이미는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코올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로 돌아와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나 론셀에게 전쟁은 짐 크로우 남부 고향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금지된 자유와 한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인식하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전쟁에서 나는 나라를 위해 죽음으로 맞서 싸운 군인이자 나치로부터 민간인을 구한 해방자였다”는 론셀의 독백에서 절기가 느껴진다.

고향으로 돌아온 론셀이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시내 식품점이었다. 가족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였다. 론셀은 이곳에서 제이미의 아버지를 비롯해 건장한 백인들과 정문에서 부딪치는데 이때 백인들은 군복 입을 론셀을 밀치며 흑인은 뒷문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제한다. 론셀은 비로소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은 고향과 마주하게 되고 미시시피에서 자신은 그저 니그로일 뿐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셀은 고개 숙이지 않고 백인들 정면에서 “전쟁에서 우리는 뒤가 아니라 전선 가장 앞에서 싸웠다”는 말을 뒤로 한 채 가족에게 향한다.

---

9) 거의 모든 주요 인물들은 화자로서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유일하게 독백 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제이미의 아버지이다.

10) <http://realfolkblues.net/?p=177> (검색일: 2023년 10월 24일).

미시시피의 여느 백인들과는 다르게 전장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제이미는 론셀과 전쟁이라는 공감대로 마음을 나누며 가까워진다. 특히 제이미는 공중에서 적군의 폭격으로 생명이 위협한 상황에서 자신을 엄호해주었던 생명의 은인인 흑인 폭격 조정사의 모습을 떠올리며 론셀에게 전우로 다가간다. 둘은 자주 어울렸다. 흑인의 자리인 트럭의 짐칸이 아닌 옆자리에서 같이 운전하고 술을 나눠 마시며 전쟁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준다. 처음엔 그런 제이미의 호의를 의심했던 론셀도 독일에서 만난 백인 여성과의 사랑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공감과 호의만으로 바뀌는 것은 없었다. 백인우월주의 자들에게는 가당치도 않았던 오히려 터부시되었던 행위인 니그로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못마땅해 하던 제이미의 아버지는 술에 의지하는 아들을 심하게 다그쳤고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는 제이미가 운전하던 트럭에서 론셀이 떨어뜨린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고 영화는 절정으로 흐른다. 사진은 론셀의 백인 연인이 보낸 사생아 아들과 찍은 것이었다. 백인 순혈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100% 아메리카니즘을 유지하고자 했던 남부 백인들에게 백인 여성의 순결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였고 론셀의 사진 한 장은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우) 론셀의 백인 연인과 사생아 아들의 사진; 좌) 백인 여성과의 혼교를 응징하는 KKK  
출처: 영화 <치욕의 대지>

노예해방 이후 미국에서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 간의 혼교는 철저히 통제되었다. 이유는 노예 신분이 모계를 승계하였기에 백인 여성의 혼혈아 출산은 인종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야만적 흑인과의 인종 간 혼교에 대한 백인들의 반응은 히스테리적이었고 그렇게 갑자기 흑인 남성의 섹슈얼리티가 남부 백인 정치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실제로, 놀랍게도 1967년까지 미국의 50개 주 중 40개가 넘는 주에서 혼종결혼금지법(Anti-miscegenation laws)을 유지하였다. 이는 명백히 백인의 순수혈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였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백인 여성과의 혼교라는 중대범죄의 증거를 확보한 제이미의 아버지는 재빠르게 타운의 지역 클랜을 소집했다. 인종폭력집단으로 악명 높은 KKK의 등장이었다. 이 시기는 이미 전국적인 규모를 자랑하며 승승장구했던 클랜이 탈세 문제로 해산을 명령받은 이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백인 연대는 굳건했다. 흑인의 범죄를 응징한다는 명분으로 아무런 부끄럼도 두려움도 없이 당당히 나타난 클랜들은 론셀을 발가벗기고 목을 매달아 단죄하기 시작한다. 더 잔인한 것은 제이미의 아버지가 그 단죄의 방법을 아들에게 직접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이다. 제이미는 적국(敵國)인 독일 여성을 인종적으로 더럽힌 것이 무슨 문제냐며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실어 울부짖었다. 그러나 클랜의 광기 어린 폭력 앞에서 제이미의 저항과 항변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혀가 잘려나가는 것으로 목숨을 부지한 론셀은 억울함에 오열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유일하게 전쟁의 트라우마를 공유했던 전우를 전쟁터가 아닌 고향에서마저 또 한 번 잃게 된 제이미는 론셀에 대한 죄책감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를 살해하는 천륜을 거스른 재앙을 저지르고 만다.

론셀의 아버지는 자식을 불구로 만든 원수의 농장에서 더 이상 소작을 할

---

11) Martha Hodes, "The Sexualization of Reconstruction Politics: White Women and Black Men in the South after the Civil War," *Journal of the History of Sexuality*, 3-3(1993), p. 403. 이외 미국 내 인종 간 혼종결혼을 둘러싼 논의에 대한 연구 성과를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 참조. Randall Kennedy, *Interracial Intimacy: Sex, Marriage, Identity, and Adoption* (New York: Vintage Books, 2003); Peggy Pascoe, "Miscegenation Law, Court Cases, and Ideologies of "Race" in twentieth-Century America," in Vicki L. Ruiz and Ellen Carol DuBois (eds.), *Unequal Sisters: A Multicultural Reader in U. S. Women's History* (New York: Routledge, 2000); Glenda Elizabeth Gilmore, *Gender and Jim Crow: Women and the Politics of White Supremacy in North Carolina, 1896-192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6).



수 없어 이사를 결심한다. 마차에 짐을 싣고 이동하는 도중 제이미 아버지의 관을 묻는 작업을 도와달라는 농장주의 부당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면서 짧지만 단호한 어조로 답한다. “내 아이들은 마차에서 내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 . .” 뒤이어 내뱉지 못하고 삼킨 말은 아마도 다음 세대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 정도의 저항도 하지 않는다면 지독한 인종폭력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는 울분이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 론셀은 소리를 낼 수 없는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사랑하는 아들과 연인이 있는 독일로 떠났고 제이미 또한 평생의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가슴에 품고 고향을 떠나면서 영화는 끝을 맺는다.

### III. KKK: 클랜의 지속성과 지역적 본질

미국 역사를 통틀어 인종갈등과 인종폭력의 가장 상징적 집단은 쿠클럭스 클랜(Ku Klux Klan)이다. 남북전쟁 직후 남부군의 장군이었던 네이던 포레스트(Nathan Forrest)를 중심으로 6명의 퇴역군인들이 테네시 주 풀라스키(Pulaski, Tennessee) 타운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 조직한 비밀 사조직이 그 시작이었다. 전후 ‘잃어버린 대의(Lost Cause)’를 되찾기 위해 조직된 클랜은 백인우월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해방 노예에게 허용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을 차단하기 위해 화형이나 린치 등의 폭력을 휘두르며 강력히 저항했다. 작은 사조직으로 시작한 클랜은 재건기 신남부의 전쟁세대 백인들의 상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전쟁과 패배, 그리고 재건의 공통된 역사 경험과 좌절과 절망이라는 감정을 공유하며 소수집단 심리를 자극했다. 전후 남부의 무력감과 열세의식이 백인우월주의라는 집단적 방어기제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sup>12)</sup>

그런데 클랜의 과격한 폭력성은 선을 넘고 있었고 그로인해 1871년 연방 의회는 클랜법(Ku Klux Klan Act of 1871)으로 조직의 활동을 막아보고자 했다. 문제는 이미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던 흑인에 대한 인종증오는 꺼지지 않았고 남부 내 개별 주, 카운티, 타운 등에서 지역주민들의 암묵적인 지지를 발판으로 작은 불씨들을 계속 살려나갔다는 점이다. 실제로 1877년 남부에서 연방군대가 철수하자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활동은 은밀하게 밤에만 자행되던 폭력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미리 지역 신문에 린치장소

12) 황혜성, 「1920년대 KKK: 하얀 두건, 검은 속셈」, 88쪽.

를 광고해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가듯 혹은 페스티벌을 즐기듯 하나의 지역문화로 받아들일 만큼 인종폭력의 대중성을 확보해나갔다. 전후 해방 노예 흑인은 그렇게 신남부 백인들을 결집하는 지역의 희생양이 되었다.

500명은 족히 넘어 보이는 백인들이 어떤 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또 어떤 이는 아들을 목마 태우고 한명의 감동이가 불에 타서 재가 되는 과정을 지루하다는 듯 지켜본다. 타들어가는 니그로는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하거나 살려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불이 약해지면 꺼질세라 사람들은 마른 잎을 불구덩이에 던진다. 그때 군중 무리 중 두 명의 남성이 울부짖고 있던 니그로의 아내와 어린 딸을 강제로 끌고 와 남편의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도록 머리채를 치켜들어 보인다. 그 옆의 제복 차림의 지역 관리들은 그저 구경꾼에 불과했다.<sup>13)</sup>

1890년 멤피스의 한 기자가 흑인의 화형 집행을 목격하고 기록한 것이다. 화형이나 린치는 남부 백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인종폭력이었다. 본래, 린치는 노예해방 이전 서부에서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징계나 사적 보복이 필요할 때 실시하던 서부의 전유물이었다. 따라서 당시 서부에서 린치의 대상자는 살인이나 절도로 잡힌 백인들이었다. 그런데 노예해방 이후 남부에서 린치는 노예 채찍을 대신하게 되었고 백인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폭력 행위가 되었다.<sup>14)</sup> 물론 정확히 얼마나 많은 흑인이 희생당했는지 그 숫자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노예해방 이후 19세기까지 미국 전체 인구의 10%가 흑인이었고 그 중 40% 정도가 남부에 거주했다. 그런데 그 중 73%가 린치나 화형을 당했고 희생자 중 95%가 노예출신이었다고 한다.<sup>15)</sup>

린치의 이유는 대부분 흑인의 불손함과 백인 여성 강간이었다. 흑인의 불손함이란 흑인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백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거나 백인에게 공격적인 언사를 하거나 법정에서 백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경우 등이었다. 무엇보다 백인의 피를 더럽혀 인종질서를 위협하는 흑인

---

13) James W. Clarke, "Without Fear or Shame: Lynching, Capital Punishment and the Subculture of Violence in the American South,"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2(1998), p. 270.

14) James W. Clarke, "Without Fear or Shame," pp. 271, 274.

15) *Ibid.*, p. 282.

의 백인 여성에 대한 강간은 가장 엄중하고 중대한 범죄였다. 그런데 흑인 남성의 성행위가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로 간주되면서 실제 행위여부와 그 진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단순히 백인의 추측과 편견, 그리고 말도 안되는 오해로 상상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도 헤아릴 수 없었다.<sup>16)</sup>

1871년 클랜법도 흑인에 대한 잔혹행위를 막을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연방대법원이 너무도 안이하게 클랜법을 해석했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은 클랜법이 단지 특정 남부 주를 상대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백인의 사적 린치행위를 용인했다.<sup>17)</sup> 심지어 남부 백인들은 린치를 정당화하기까지 했는데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린치는 시민의 주권을 표현하는 한 방식으로 성문법 권한 밖에서 설정된 권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린치는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집행되는 행위이고 비전문적 법의 집행은 주민과 가까운 지역공동체의 당연한 임무이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부의 지역 언론마저 이에 가세하여 린치를 단순한 지역의 사적이고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지역 대중문화로 스며들었다.<sup>18)</sup> 여기에 연방의 공권력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연방 개입에 대한 남부인들의 강한 반감이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실제로 일부 린치에 반대하는 백인이라 하더라도 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주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연방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인식했다. 남부 백인들에게 연방의 개입은 집단의 광기어린 폭력보다 더 무섭게 비난받을 일이었다.<sup>19)</sup>

상황이 이러하자 린치에 대한 지방 법원의 태도도 문제로 지목되었다. 사실 린치사건이 법원에 상정되는 일도 드물었지만 상정된다 해도 법원의 냉철한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다. 린치가 사적으로 시행될 때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지방 법원은 법을 만드는 것은 개개인 시민의 힘이고 그들이 만장일치로 행한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다. 이에 법학자들은 지방 법원의 무능력이 남부의 증오폭력을 방치하는 원인이라 꼬집었다. 1898년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 찰스 보나파르트

16) *Ibid.*, p. 280.

17) 황혜성, 「1920년대 KKK: 하얀 두건, 검은 속셈」, 83쪽; Christopher Waldrep, *African Americans Confront Lynching* (New York, 2009), pp. 9-12.

18) Christopher Waldrep, “National Policing, Lynching, and Constitutional Change,” *The Journal of Southern History*, 74-3(2008), pp. 592-594.

19) James W. Clarke, “Without Fear or Shame,” p. 283.

(Charles Bonaparte)는 “법은 만인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 집행 또한 만인의 이해에 복종해야한다. 여기서 특정 인종이나 특정 범죄가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학자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도 린치에 대한 개별지역의 사적통제를 용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지적했다. 즉, “법은 만인의 의지가 모인 집성체이고 그 집행을 개인의 판단과 통제에 맡겨두는 것은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를 잘못 인식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1905년 미국 학계에 있어서 린치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인 연구서로 평가되는 『린치법: 미국의 린치 역사에 대한 연구조사』를 편찬한 제임스 커틀러(James Elbert Cutler) 또한 서부도 남부도 린치라는 중대 폭력을 개인이 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커틀러에 따르면 사형에 처할 만큼의 중대범죄는 반드시 주권자의 법적 대리인인 사법체계 내에서 작동시켜야 하며 범망을 넘어 집행되는 폭력은 그 어떤 정당성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소수에 그쳤다. 오히려 백인의 특권을 지켜내지 못하는 법조인들의 이런 태도는 법에 대한 냉소주의적 반감만 증폭시켰고 결국 클랜은 스스로가 곧 법이고 정의가 되었다.<sup>20)</sup>

남부 (전)노예주에서의 린치 상황, 1882-1962

주	평균흑인 인구	비흑인 희생자 수	흑인 희생자 수	총 희생자 수	흑인 희생자 비율
앨라배마	39%	49	229	348	86%
아칸소	26%	58	226	284	80%
플로리다	34%	25	257	282	91%
조지아	40%	39	491	530	93%
루이지애나	41%	56	335	391	86%
메릴랜드	18%	2	27	29	93%
미시시피	52%	40	538	578	93%
북캐롤라이나	30%	15	85	100	85%
남캐롤라이나	50%	4	156	160	98%
테네시	20%	47	204	251	81%
텍사스	17%	191	352	493	71%
버지니아	30%	17	83	100	83%
총계	29%	609	3,264	3,873	84%

출처: Department of Records, and Research, Tuskegee Institute, Alabama; James W. Clarke, “Without Fear or Shame,” p. 282

20) Cristopher Waldrep, “National Policing, Lynching, and Constitutional Change,” pp. 595-596.

20세기를 넘어가면서 클랜은 그 조직을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해 나갔고 인종폭력의 논리 또한 정교하게 발전시켜나갔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클랜 임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 아래 18세에 미서전쟁(1898년)에 참전했던 윌리엄 시몬스(William Simmonse)는 애국심과 백인우월주의에 심취되어 있었다. 재건기 북면을 쓴 클랜의 활동을 영웅으로 미화한 무성영화 <국가의 탄생(The Birth of a Nation)>을 수없이 반복 감상하면서 클랜에 대한 환상을 키워온 시몬스는 1915년 클랜을 공식적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1916년 시몬스는 클랜을 “신성하고 애국적인 비밀자선단체”로 등록하고 이를 ‘보이지 않는 제국(Invisible Empire)’라 칭하며 스스로가 최고의 지도자인 ‘제국의 마법사(Imperial Wizard)’가 되었다.<sup>21)</sup>

초창기 조지아 주를 중심으로 지역의 회원을 모집하며 흩어진 남부의 세력을 규합해나가던 클랜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세기말 미국사회의 불안정 때문이었다. 20세기 전환기 미국은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훨씬 다양해진 이민자들의 유입에 의한 문화충돌은 물론이고 경제구조의 격변 속에서 계층/계급 간 불평등은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남부의 흑인들도 일자리를 찾아 북서부로의 대이주(Great Migration)를 감행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불만들이 폭발했다. 클랜의 입장에서 이는 흑인 이외 반(反)이민, 반(反)외국인, 반(反)카톨릭 반(反)유대인 등으로 혐오 대상의 확장을 의미했다. 여기에 1차 세계대전과 볼셰비키 혁명은 적색공포를 수반하며 애국심과 반공주의를 묘하게 결합시켰다. 인종문제는 물론이고 계급, 계층, 젠더 등과 관련된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갈등 속에서 불안해하던 미국인들에게 클랜은 ‘미국인을 위한 미국’ 혹은 ‘100% 미국인’이라는 틀로 설득력 있게 다가갔다.

중요를 기반으로 한 심리적 교감뿐 아니라 세기 전반기 클랜의 성장은 상업적 이익창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했다. 이제 클랜이 되기 위해 그냥 충성을 맹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입단비, 연회비, 망토나 마스크 등의 제복비용과 각종 비품구입비 등 다양한 항목의 비용을 지출해야 했고 클랜 조직은 이를 통해 꾸준하게 이윤을 창출했다.

21) 안윤모, 「1920년대 쿠킴스클랜과 도덕개혁」, 78~79쪽; 황혜성, 「1920년대 KKK: 하얀 두건, 검은 속셈」, 92~93쪽.

클랜의 조직도와 상업성을 꼼꼼하게 분석한 경제학자 로랜드 프라이더(Roland G. Fryer Jr.)나 스티븐 레빗(Steven D. Levitt)에 따르면, 20세기 전반기 클랜은 증오와 형제애라는 인간의 감정을 다층적 마케팅을 통해 매우 성공적으로 판매하고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사회조직이었다.<sup>22)</sup>

이렇게 성장했던 시몬스의 클랜은 일반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기를 거치며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여 1944년 소득세 탈세 문제로 해체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전국적 조직이 와해되고 그 기세가 꺾인 것은 사실이나 클랜의 본질인 지역성은 각 공동체, 카운티, 타운에서 쉽 없이 들끓고 있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에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그대로 투영되어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으로 다가왔다. 당장에 지역 곳곳에서 참전 영웅이나 된 듯 애국심으로 당당해진 제복 입은 흑인의 모습은 백인들에겐 강력한 위협이었다. 게다가 진화론을 공론화하고 마약 밀매가 성행하는 등 미국이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있다는 사회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공동체의 분열을 막고 약해진 연대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런 사회적 불안은 과거 형제애로 단결되었던 정직한 백인 미국 신교도들만의 세상에 대한 환상을 다시 끄집어냈다. 지역의 타운이나 카운티에서 클랜의 존재는 혼란하고 분노한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해줄 든든한 해결사로 낭만화 되고 있었던 것이다.<sup>23)</sup> 영화 <치욕의 대지>는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개별 지역 백인우월주의자들의 결속력이 어떻게 린치와 인종폭력을 정당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클랜의 지역성은 클랜이 시대를 막론하고 지속될 수 있는 본질적 근거였다. 남북전쟁 이후 재건기와 1, 2 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 이후 남부 백인들은 불안한 사회에서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했던 것을 복구시켜 몰두하는 것이 백인의 결집과 공동체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기

---

22) 20세기 전반 클랜 조직의 구체적인 조직도와 이윤창출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전체논문 참조. Roland G. Fryer Jr. and Steven D. Levitt, "Hatred and Profits: Under the Hood of the Ku Klux Klan," p. 1883; 황혜성, 「1920년대 KKK: 하얀 두건, 검은 속셈」, 100-107쪽.

23) Rory McVeigh and David Cunningham, "Enduring Consequences of Right-Wing Extremism: Klan Mobilization and Homicides in Southern Countries," *Social forces*, 90-3(2012), pp. 943-944

지역에서 함께 종교행사를 진행하고 십자가놀이나 지역정화운동, 혹은 사회적 이벤트도 후원하면서 회원들은 클랜 안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 있었다. 클랜에게 지역 공동체 내 유대와 연대는 종교적 신념과 같았고 그 힘이 클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sup>24)</sup>

#### IV. 결론

1985년 1월 테네시 주 풀라스키(Pulaski, Tennessee) 타운에서 경악할만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1월의 국가적 연례행사인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의 기념일을 반대하며 클랜 창단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풀라스키 클랜댄들이 “귀향 행진”이라는 퍼레이드를 벌였다는 것이다. 행렬의 선봉에 선 남성은 1865년 클랜의 창시자 6인의 이름과 장소를 기념하는 명판을 들고 있었다. 행사를 계획하고 주도한 클랜 후손과 회원들은 인터뷰에서 퍼레이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클랜은 더 이상 다른 인종의 대항세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구원세력이다. 유색인협회나 유대인협회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본 퍼레이드의 목적이다.”<sup>25)</sup> 그뿐이 아니다. 1989년에는 위스콘신 대학신문에 <클랜을 기리며(Memories of the Ku Klux Klan Honorary Society)>라는 기고문이 실리고 1920년대 연중 행사였던 흑인 분장쇼 사진들을 소개하는 이벤트가 진행되는가 하면 2009년에는 프린스턴 졸업생 주간지(Princeton Alumni Weekly: PAW)에 “클랜 멤버들의 1920년 강의”라는 꼭지의 소개 글이 실리기도 했다.<sup>26)</sup>

이런 현실과는 다르게 영화 <치욕의 대지>는 곳곳에서 인종 간 교감과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제이미와 론셀의 만남에서 제이미는 늘 론셀의 마음을 살핀다. 자기 아이를 사생아로 낳아 키우는

24) 안윤모, 「1920년대 쿠클럭스클랜과 도덕개혁」, 92-93쪽.

25) Michael Lewis and Jacqueline Serbu, “Kommemorating the Ku Klux Klan,” *The Sociological Quarterly*, 40-1(1999), pp. 139-140.

26) Timothy Messer-Kruse, “Memories of the Ku Klux Klan Honorary Society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The Journal of Blacks in Higher Education*, 23-1(1999), pp. 83-93. John S. Weeren, “Shades of Ku Klux Klan: The Class of 1920’s “Fiery Fourth”,” *The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Chronicle*, 71-1(2009), pp. 89-98.

연인에게 돌아가고 싶어도 고향에 남겨질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망설이는 론셀에게 스스로 만든 본인의 가족과 행복하길 기원하기도 하고, 형과의 갈등으로 미시시피를 떠날 결심을 했을 때도 망설이지 않고 론셀에게 찾아가 서로에게 친구였음을 확인한다. 또한 아버지를 비롯해 타운의 클랜에게 둘러싸여 생명을 위협받던 론셀을 위해 진심으로 저항하며 고통을 함께하기도 한다. 결정적으로 본인에겐 속죄 받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이지만 제이미는 아버지의 죽음이 론셀 가족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론셀이 빼앗겼던 가족사진을 찾아준다. 물론 이러한 통합의 메시지들은 매우 중요하고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두 명의 백인이 느끼는 공감이나 죄책감만으로 상처에 상처가 얹고 다시 덧나는 그 오랜 기간을 견뎌온 피해자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백인이 기대하는 면죄부는 피해자들이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허락받지 못한 면죄부가 아닐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여러 다른 외피로 위장한 클랜들이 움직이고 있으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지금 KKK나 인종문제를 이야기해야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원작자 힐러리 조던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지금은 탈인종(post-racial) 탈인권(post-civil rights)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과연 넘어섰다(post)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해묵은 이야기 같지만 과거의 짐 크로우는 어떠했고 현재의 짐 크로우는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거기에서부터 향후 펼쳐질 짐 크로우가 어떠할지 아니면 그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상이 될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sup>27)</sup>

평택대학교, 조교수, yioh@ptu.ac.kr

주제어(Key Words):

치욕의 대지(mudbound), 인종분리정책(Separate-but-Equal), 큐클러스클랜(Ku Klux Klan), 지속성(Continuity), 지역성(Locality)

투고일: 2023.10.23. 심사일: 2023.11.23. 게재확정일: 2023.11.23.

---

27) Edward Piacentino, “Hillary Jordan’s *Mudbound* and the Neo-Segregation Narrative,” p. 289, 재인용.



<국문초록>

**허락되지 않은 면죄부:  
영화 <치욕의 대지(Mudbound)> 깊이 보기**

오 영 인

본 연구는 미국에서 인종혐오와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에 개봉한 영화 <치욕의 대지(mudbound)>에 주목한다. 본고가 이 영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영화를 통해 클랜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클랜에 대한 연구는 1기부터 4기 혹은 첫 번째 클랜부터 네 번째 클랜까지로 그 역사적 시기를 도식적으로 나누어 클랜의 성장과 쇠퇴를 분절적으로 다뤄왔다. 도식적으로 정리하자면, 1기 클랜은 1865년을 시작으로 1871년 클랜법으로 사라졌다가 1915년을 기점으로 2기 클랜이 부활했고 1944년 탈세 문제로 다시 해산되었다가 1960년대 민권운동의 반작용으로 3기 클랜이 재등장했다. 이후 1965년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의 강경 대응으로 소멸되었으나 1970년대 말 경제적 불안으로 마지막 4기가 재부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인종갈등과 혐오의 역사가 세대를 이어 대물림되며 지속되어 온 것과 마찬가지로 클랜의 활동 또한 한 번도 소멸되거나 사라진 적이 없다. 특히 클랜의 역사 중 전국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전성기를 누렸다고 평가되는 2기 클랜은 1944년 해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국적 조직은 와해되었을지 모르나 지역의 클랜맨(Clan-man)들의 활동은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도 개별 주, 카운티, 그리고 타운에서 그 기세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 영화 <치욕의 대지>는 바로 이 시기 어떻게 잔인한 인종폭력이 지역에서 계속 자행되었는가를 증명해 보인다. 다시 말해 이 영화는 클랜의 지속성이 클랜의 본질인 지역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충분한 레퍼런스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영화 <치욕의 대지>를 통해 클랜의 지역성 혹은 지역문화가 어떻게 작동했으며 어떤 근거와 논리로 인종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었는지 그 행태를 클랜의 긴 역사성 속에서 재고해보고자 한다.

<Abstract>

**Unacceptable Indulgence:  
Deep Learning from a Movie “Mudbound”**

Oh, Young In

This study focuses on the movie <Mudbound>, which was released at a time when racial hatred and related crimes began to rapidly increase in the United States. The reason this paper focuses on this film is because the continuity of the Clan can be confirmed through this film. In general, research on clans in academia has dealt with the growth and decline of clans in a segmental manner by schematically dividing the historical period from the 1st to the 4th period, or from the first clan to the fourth clan. To summarize schematically, the first clan started in 1865 and disappeared under the Clan Act of 1871, and the second clan was revived starting in 1915. It was disbanded again in 1944 due to tax evasion issues, and was reorganized into the third clan as a reaction to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1960s. Afterwards, it was extinguished in 1965 due to President Lyndon B. Johnson’s hard-line response, but the last fifth clan was revived due to economic instability in the late 1970s. However, just as the history of racial conflict and hatred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clan’s activities have never been extinguished or disappeared. In particular, the second clan, which is considered to have enjoyed its heyday for the longest period of time nationwide in the clan’s history, is known to have been disbanded in 1944. But while the national organization may have disintegrated, the activities of local clan-men continued to hold strong in individual states, counties, and towns even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The film <Mudbound> proves how brutal racial violence continued to occur in the region during this period. In other words, this film can be said to be a sufficient reference to show that the continuity of the clan is based on locality, which is, in fact, the essence of the clan. Accordingly, through the movie <Mudbound>, this paper seeks to reexamine how the locality or local culture of the clan worked and on what basis and logic racial violence could be justified within the clan’s long history.

## 참고 문헌

### 1. 단행본

- Blee, Kathleen M., *Women of the Klan: Racism and Gender in the 1920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 Chalmers, David M., *Hooded Americanism: The History of the Ku Klux Klan* (New York: F. Watts, 1981).
- Gilmore, Glenda Elizabeth, *Gender and Jim Crow: Women and the Politics of White Supremacy in North Carolina, 1896-192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6).
- Gordon, Linda, *The Second Coming of the KKK: The Ku Klux Klan of the 1920s and the American Political Tradition* (New York: Liveright, 2017).
- Kennedy, Randall, *Interracial Intimacy: Sex, Marriage, Identity, and Adoption* (New York: Vintage Books, 2003).
- Maclean, Nancy, *Behind the Mask of Chivalry: The Making of the Second Ku Klux Kla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Moore, Leonard J., *Citizen Klansmen: The Ku Klux Klan in Indiana, 1921-1928*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1).
- Rice, Arnold S., *The Ku Klux Klan in American Politics* (New York: Haskell, 1972).
- Waldrep, Christopher, *African Americans Confront Lynching* (New York, 2009).

### 2. 논문

- 김인선, 「1920년대 여성쿠클릭스클랜의 활동과 KKK의 성정치」, 『여성과역사』, 37호(2022), 215~253쪽.
- 안윤모, 「1920년대 쿠클릭스클랜과 도덕개혁」, 『미국사연구』, 17호(2003), 77~98쪽.
- 황혜성, 「1920년대 KKK: 하얀 두건, 검은 속셈」, 『서양사론』, 122호(2014),

82~111쪽.

- Clarke, James W., "Without Fear or Shame: Lynching, Capital Punishment and the Subculture of Violence in the American South,"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2(1998), pp. 269-289.
- Easterling, Paul, "KKK Christology: A Brief on White Class Insecurity," in Stephen C. Finley, Biko Mandela Gray, Lofi Latrice Martin (eds.), *The Religion of White Rage: Religious Fervor, White Workers and the Myth of Black Racial Progres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20), pp. 125-134.
- Fryer Jr. Roland G., and Levitt, Steven D., "Hatred and Profits: Under the Hood of the Ku Klux Kla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7-4(2012), pp. 1883-1925.
- Hodes, Martha, "The Sexualization of Reconstruction Politics: White Women and Black Men in the South after the Civil War," *Journal of the History of Sexuality*, 3-3(1993), pp. 402-417.
- Lewis, Michael, and Serbu, Jacqueline, "Kommemorating the Ku Klux Klan," *The Sociological Quarterly*, 40-1(1999), pp. 139-158.
- Pascoe, Peggy, "Miscegenation Law, Court Cases, and Ideologies of Race " in twentieth-Century America," in Vicki L. Ruiz and Ellen Carol DuBois (eds.), *Unequal Sisters: A Multicultural Reader in U. S. Women's History* (New York: Routledge, 2000).
- Piacentino, Edward, "Hillary Jordan's Mudbound and the Neo-Segregation Narrative," *The Mississippi Quarterly*, 67-2(2014), pp. 267-290.
- McVeigh, Rory and Cunningham, David, "Enduring Consequences of Right-Wing Extremism: Klan Mobilization and Homicides in Southern Countries," *Social forces*, 90-3(2012), pp. 843-862.
- Messer-Kruse, Timothy, "Memories of the Ku Klux Klan Honorary Society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The Journal of Blacks in Higher Education*, 23-1(1999), pp. 83-93.
- Waldrep, Cristopher, "National Policing, Lynching, and Consitutional Change," *The Journal of Southern History*, 74-3(2008), pp. 589-626.

허락되지 않은 면죄부: 영화 <치욕의 대지(Mudbound)> 깊이 보기

Weeren, John S., “Shades of Ku Klux Klan: The Class of 1920’s “Fiery Fourth” ,” The Princeton University Library Chronicle, 71-1(2009), pp. 89-98.

### 3. 인터넷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4062700009> (검색일: 2023년 10월 11일).

<https://dictionary.cambridge.org/us/dictionary/english/hate-speech> (검색일: 2023년 11월 01일).

<https://www.justice.gov/hatecrimes/learn-about-hate-crimes/chart> (검색일: 2023년 11월 01일).

<http://realfolkblues.net/?p=177> (검색일: 2023년 10월 24일).

## 인종위기의 리듬: 아이스 큐브의 갱스터 랩 <Black Korea><sup>\*</sup>

이 찬 행

### I. 머리말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상점들, 특히 주류 판매점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저소득층 흑인으로부터 이윤을 착취한다는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반(反)이민 정서의 폭력적인 분출을 앞당기는 과정이기도 했다. 1991년 3월 16일 엠파이어 마켓에서 1.79달러짜리 오렌지 주스를 놓고 주인과 고객이 싸우다 벌어진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 살해 사건, 같은 해 6월 4일 존스 리커 스토 주인 박태삼에 의한 흑인 고객 리 아더 미첼 살해 사건은 그렇지 않아도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의해 격화되고 있던 반이민, 반(反)한인 정서를 더욱 증폭시켰다.<sup>1)</sup> 본 논문은 이러한 반한인 정서가 1991년 10월 발표된 갱스터 래퍼(gangster rapper) 아이스 큐브(Ice Cube)의 <Black Korea>라는 곡에 의해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한흑 커뮤니티 사이의 갈등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게 되는 과정을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힙합 그룹 퍼블릭 에너미(Public Enemy)는 백인 문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 존 웨인 등을 풍자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A8048880)

1) 이찬행, 「두순자-할린스 사건에 관한 연구」, 『미국사연구』, 39호(2014), 191~220쪽; 이찬행, 「Korean Americans' Responses to John's Liquor Store Boycott in Los Angeles, 1991」, 『역사와 담론』, 83호(2017), 137~164쪽.

함으로써 지배 권력에 대항했지만, 로스앤젤레스의 갱스터 힙합 그룹을 대표하던 아이스 큐브는 흑인 커뮤니티에서 주류 등을 판매하던 한인 상인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아이스 큐브의 랩은 음악적 관점에서 보자면, 완성도가 높은 곡으로서 힙합의 경쾌한 리듬감을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Black Korea>는 흑인 커뮤니티에서 대두하고 있었던 반한인 정서에 음악적인 목소리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갱스터 래퍼가 노래하던 인종주의 리듬을 듣고자 하며, 이와 동시에 <Black Korea>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초반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인종갈등의 역동적인 모습들이 보여주는 리듬과 박자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아이스 큐브를 비롯한 갱스터 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다. 본 논문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갱스터 랩이 지니고 있는 저항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두 번째는 갱스터 랩의 상업성과 섹슈얼리티의 과잉을 비판한다. 전자에 해당되는 연구자로는 트리샤 로즈와 로빈 켈리가 있다. 특히, 켈리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감춰진 트랜스크립트”(hidden transcript)를 랩 음악과 같은 “무대 밖 정치 담론”(offstage political discourse)에서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2)</sup> 후자에 속하는 연구자로는 마이크 데이비스와 폴

---

2) Tricia Rose, *Black Noise: Rap Music and Black Culture in Contemporary America* (Hanover, NH: Wesleyan University Press, 1994); Robin D. G. Kelley, “The Black Poor and the Politics of Opposition in a New South City, 1929-1970”, Michael Katz, ed., *Underclass Debate: Views from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p. 330-333. 백인성(whiteness)과 대중문화를 연구하고 있는 조지 립시츠가 로스앤젤레스 동부 지역의 치카노 로큰롤 가수들을 두고 커뮤니티 문화를 기록하는 “유기적인 지식인”이라고 치켜세웠듯이, 로즈와 켈리에게는 갱스터 래퍼들이야말로 피지배자들의 경험과 그들의 목소리를 아래로부터 생생하게 들려주는 길거리 저널리스트였다. George Lipsitz, “Cruising around the Historical Bloc: Postmodernism and Popular Music in East Los Angeles”, Simon Frith, ed., *Popular Music: Critical Concepts in Media and Cultural Studies*, Vol. 4 (New York: Routledge, 2004), p. 333. 갱스터 힙합 그룹 NWA(Niggaz With Attitude)의 멤버이자 1987년에 루스리스 레코드사(Ruthless Records)를 설립했던 이지-이(Eazy-E, 본명 Eric Wright)도 자신들은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실제 이야기”와 “진실”을 전하는 리포터

길로이를 꼽을 수 있다. 지배 체계모니에 순응하지 않는 몸짓을 갱스터 힙합 음악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데이비스는 로스앤젤레스 갱스터 래퍼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본원적인 재산의 축적”이라고 혹평하였다. 나아가 데이비스는 그들의 노래는 “폭력, 여성에 대한 성차별, 그리고 탐욕”에 대한 무비판적인 반영일 뿐이라면서, 갱스터 힙합과 할리우드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고 의심하였다.<sup>3)</sup> 길로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힙합 음악이 상업화, 탈정치화되면서 “급작스러운 보수주의, 여성에 대한 혐오, 틀에 박힌 과잉된 성적 이야기”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힙합이 심지어는 “가장 흑인다운 문화”로 거대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였다.<sup>4)</sup>

본 논문은 기존 해석과 달리 아이스 큐브의 갱스터 랩은 저항과 상업성, 인종적인 계몽과 인종주의적인 폭력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는 <Black Korea>가 수록되어 있는 그의 앨범 <<Death Certificate>>(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1991)에서 잘 드러난다. 필자는 본론에서 음악과 인간 경험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인류학적 음악학(ethnomusicology)의 시각에서 아이스 큐브의 곡들이 지향하는 서로 다른 성격의 정치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인의 대응도 분석할 것이다.<sup>5)</sup> 아울러 결론에서는 아이스 큐브의 <Black Korea>로 인한 사태가 일단락된 듯 보였던 1991년 11월 이후 한인과 흑인 두 커뮤니티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재차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

와 같은 존재라고 주장한 바 있다. Dennis Hunt, “The Rap Reality: Truth and Money: Compton’s N.W.A. Catches Fire with Stark Portraits of Ghetto Life”, *Los Angeles Times*, April 2, 1989.

3) Mike Davis, *City of Quartz: Excavating the Future in Los Angeles* (New York: Vintage Books, 1992), p. 87.

4) Paul Gilroy, *Against Race: Imagining Political Culture beyond the Color Line*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pp. 177-181.

5) 인류학적 음악학은 “세계음악을 그 각각의 문화적 배경 또는 상황(cultural context) 안에서 연구, 분석하여 이해하는 학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채현경, 「음악 인류학(Anthropology of Music)의 최근 연구 동향」, 『민족음악학』, 18호(1996), 31쪽.



## II. “동전 하나하나 세는 빌어먹을 동양인들”

아이스 큐브. 본명이 오세이 잭슨인 그는 단연코 최고의 힙합 뮤지션 가운데 한 명이다. “힙합은 곧 아이스 큐브이고 아이스 큐브는 곧 힙합”이라는 어느 한 문화 평론가의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이스 큐브 없는 힙합 음악이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는 그룹 NWA(Niggaz With Attitude)의 멤버로서 과격하고 폭력적인 가사를 마치 입에서 내쫓듯이 노래함으로써 훗날 갱스터 랩이라고 알려질 새로운 힙합 음악 장르를 개척하였다. 특히 NWA가 내놓은 첫 번째 앨범 <<Straight Outta Compton>>(루스리스/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1988)은 힙합 음악의 권력을 동부에서 서부로 옮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sup>6)</sup>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힙합이 그룹 퍼블릭 에너미의 흑인 민족주의와 부드럽고 시적인 라킴(Rakim)의 풍부한 경험으로 가득 찬 영적인(spiritual) 유희리즘을 특징으로 한다면, NWA는 이를 길거리로 끌어내려 로컬 상징과 거친 언어로 새롭게 코드화함으로써 청중을 사로잡았다.<sup>7)</sup> 역사가 켈리의 말처럼, 그들은 “모험, 억제할 수 없는 폭력, 그리고/또는 에로틱한 판타지, 서버브의 지루함에 대한 상상적 대안”을 향한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청중, 특히 백인 청중을 계토로 끌어들이기도 했다.<sup>8)</sup>

6) David J. Leonard, “Ice Cube”, Mickey Hess, ed., *Icons of Hip Hop: An Encyclopedia of the Movement, Music, and Culture*, Vol. 2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007), pp. 294, 300. NWA가 결성되기 전 힙합 음악 산업은 뉴욕의 래퍼들이 주도했다. 뉴욕의 힙합 뮤지션 중 KRS-One(본명 Lawrence Parker)은 1987년에 첫 번째 앨범 <<Criminal Minded>>(비-보이 레코드사)를 발표했다. 브루스에서 활동한 KRS-One은 레게(reggae)와 랩을 결합시켰으며, 폭력적인 가사 덕분에 갱스터 랩의 선구자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대중문화에서 힙합은 아직까지는 소외된 장르였기에 그의 앨범은 대중으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David A. Canton,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Tensions in Gangsta Rap”, *Reviews in American History*, 34-2(2006), p. 244.

7) Jeff Chang, *Can't Stop Won't Stop: A History of the Hip-Hop Generation* (New York: Picador, 2005), p. 321.

8) Robin D. G. Kelley, *Race Rebels: Culture, Politics, and the Black Working Class* (New York: Free Press, 1996), p. 191; Kelley, *Yo' Mama's Disfunktional! Fighting the Cultural Wars in Urban America* (Boston: Beacon Press, 1997), p. 39.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갱스터 랩은 지배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상상적인 전복을 시도하는 정치적 장으로 기능했다. NWA의 앨범 <<Straight Outta Compton>>에 실린 <Fuck Tha Police>가 대표적이다. 이 노래는 LAPD 경찰국장인 대릴 게이츠가 오퍼레이션 햄

아이스 큐브의 솔로 데뷔 앨범인 <<AmeriKKKa's Most Wanted>>(프라이 어리티 레코드사, 1990)는 그가 갱스터 랩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물론 음반의 지배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었다. 그러나 힙합 저널리스트인 앨런 고든이 주장하듯이, 애리조나에 있는 대학에서 건축 도면을 전공하기도 했던 흑인 갱스터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와 자신의 사회적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다. 흑인 민족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이스 큐브는 두 번째 솔로 앨범인 <<Death Certificate>>에서 이 같은 힙합 음악의 정치화를 더욱 철저하게 추구하기에 이른다.<sup>9)</sup> 음악적으로 <<Death Certificate>>는 아이스 큐브가 다른 래퍼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경쾌한 소리를 내다가 커다란 경적을 울리고, 뼈꺼거리지만 박자를 따라가면서 이를 되살리는 트럼펫처럼” 여느 래퍼들이 감히 시도할 수 없었던 능수능란한 래핑을 보여주었다.<sup>10)</sup> <<Death Certificate>>는 또한 주제별로 구성된 앨범이었다. 앨범은 죽음과 삶이라는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다. 전반부 오프닝 트랙에는 <The Funeral>이라는 제목의 곡이 배치되어 있고, 후반부는 <The Birth>라는 곡으로 시작한다. 아이스 큐브와 앤절라 데

---

머(Operation Hammer)라는 작전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를 저지른 1,500여 명의 흑인 청년들을 단순히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Fuck Tha Police>에서 NWA의 멤버 Dr. Dre(본명 André Romelle Young)는 판사로 등장한다. 피고인이 LAPD 소속 경관인 이들의 모의 법정에서 아이스 큐브는 검사의 역할을 맡았다. 1990년대 초 트리샤 로즈가 쓴 것처럼 힙합 음악은 “힘없는 자들의 연극”을 위한 “무대”였다. 그러나 14년 후 그녀가 고백하듯이, 힙합 음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윤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갱스터나 거리의 사기꾼 같은 인물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예술적, 정치적 중요성이 비정치적(apolitical)이고 단순하며 거의 희극적인 고정관념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른바 “하이퍼-갱스터화”(hyper-gangsta-ization)를 경험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힙합 음악은 S. 크레이그 왓킨스가 “힙합 자신의 파우스트적 거래”라고 불렀던 이러한 상업화로 말미암아 흑인들에 의해 공연된 청각적 민스트렐쇼(sonic minstrelsy)로 퇴보하고 말았다. Tricia Rose, *Black Noise*, p. 101; Rose, *The Hip Hop Wars* (New York: Basic Books, 2008), p. 2; S. Craig Watkins, *Hip Hop Matters: Politics, Pop Culture, and the Struggle for the Soul of a Movement* (Boston: Beacon Press, 2005), pp. 2, 119.

9) Allen Gordon, “Ice Cube: *Death Certificate*”, Oliver Wang, ed., *Classic Material: The Hip-Hop Album Guide* (Toronto: ECW Press, 2003), p. 87.

10) Brian Cross, *It's Not about a Salary...Rap, Race and Resistance in Los Angeles* (London: Verso, 1993), p. 63.

이비스 사이에 있었던 인터뷰에 따르면, 앨범의 이러한 구성은 매우 의도적이었다. 아이스 큐브는 죽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파트를 통해 흑인들의 정신적 사망을 이야기하고자 했으며, 삶을 뜻하는 다른 파트에서는 운명과 스스로에 대한 흑인들의 의식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이다.<sup>11)</sup>

음반이 발매되자마자 십만 장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진 <<Death Certificate>>에서 아이스 큐브는 흑인에게 본인들의 사망증서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계토의 언어로 쓰였지만, 아이스 큐브는 더는 길거리의 싸움꾼이 아니다. 그는 심지어 이제 사회정치적인 가스펠송을 부르는 흑인 민족주의자로 등장한다. 아이스 큐브는 <The Funeral>에서 “깜둥이”(niggas)가 “비상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면서, 앨범의 재킷 커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기 때문이다. “내가 깜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1991년에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있고, 그 결과는 깜둥이 멘탈리티다. 젊은 흑인 남성이나 여성에게 가장 좋은 장소는 이슬람 국가(Nation of Islam)이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people)으로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때 비로소 흑인이 될 수 있고 흑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

11) Ice Cube and Angela Y. Davis, “Nappy Happy”, *Transition*, 58(1992), p. 180.

12) Ice Cube, *Death Certificate* [CD] (Los Angeles: Priority Records, 1991). 이슬람 국가(Nation of Islam, 이하 NOI)는 1930년 디트로이트에서 만들어진 흑인 민족주의 단체이다. 창립자는 아랍계 이민자 윌러스 D. 파드(윌러스 파드 무함마드라고도 불림)이다. NOI는 1934년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일라이자 무함마드가 조직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말콤 X(본명 Malcolm Little)와 권투선수 무함마드 알리(본명 Cassius Marcellus Clay, Jr.) 등 수만 명 이상의 미국 흑인을 추종자로 끌어 들였고, 1970년대에는 종교 사원 숫자가 전국에 걸쳐 70여 곳에 달했다. 종교학자 에드워드 E. 커티스에 따르면, NOI의 핵심은 이슬람이 본래 흑인의 종교였으나 이것이 대서양 노예무역 시기에 백인에 의해 탈취당했다는 생각이다. 백인을 악마라고 규정하면서 완전한 인종분리를 추구했던 NOI는 기독교야말로 흑인의 육체적·영적 노예 상태를 가져온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와 결별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흑인에게 영어식 노예 이름을 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X”라는 이름을 사용하라고 강권했던 일라이자 무함마드를 이어 1970년대 후반 이후 NOI의 지배권을 장악한 인물은 루이스 파라칸이었다. 파라칸이 이끌었던 NOI는 실업과 마약 중독에 시달리고 정치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흑인사회의 무능함을 극복하고자 했던 수많은 청년들을 유인하는 데 성공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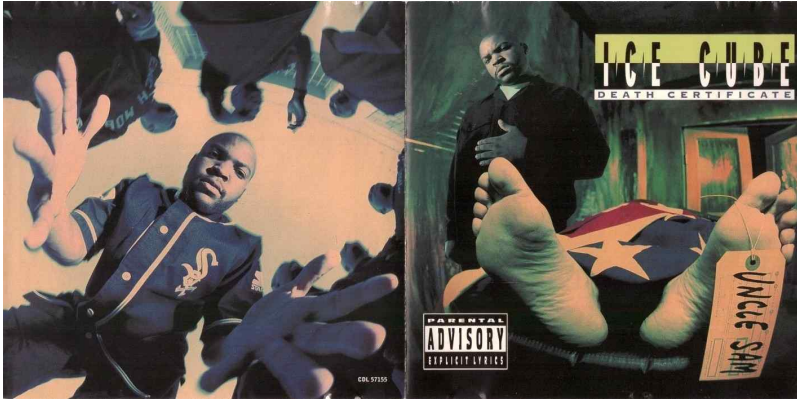
앨범 재킷 이미지는 아이스 큐브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는 당시 로스앤젤레스 갱단의 상징과도 같았던 헤어스타일인 제리 컬(jheri curl)을 짧게 잘랐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스 큐브는 갱 스타일 복장을 하고 무표정하게 서 있거나 여기저기 앉아 있는 십여 명의 흑인 남성들과 정장과 나비넥타이를 매고 세 줄로 도열한 아홉 명의 NOI 보안 요원들 사이에서 “단결 아니면 죽음”이라는 글귀를 1면 전체에 걸쳐 크게 게재한 흑인 민족주의 단체의 격주간 간행물 『파이널콜』(Final Call)을 읽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 장치들은 아이스 큐브가 민족주의자로 변모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흑인 민족주의에 비판적이었던 많은 로스앤젤레스 갱스터 래퍼들과 달리, 아이스 큐브는 다양한 이미지 전유를 통해 흑인의 민족주의적 자각과 부활을 촉구한 것이다.<sup>13)</sup>

다. 하지만 로빈 켈리가 비판하듯이, NOI의 정책은 자조, 흑인 비즈니스 창업, 남녀 사이의 전통적인 관계 유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혁명적 흑인 민족주의로 무장했던 블랙팬더와 달리 매우 보수적인 아젠다를 지지하고 있었다. NOI의 경제 조직인 파워(POWER: People Organized and Working for Economic Rebirth)와 공화당 흑인 보수주의자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양자 모두 실업 및 빈곤의 원인을 미국의 구조적인 인종 불평등에서 찾지 않고 흑인의 노동윤리 결핍에서 찾았다는 데 있다라는 비판은 NOI의 보수성을 잘 보여준다. NOI는 아이스 큐브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아이스 큐브는 동부로 갔을 때 멘토에 해당하는 래퍼들(Chuck D와 S1W 멤버들)로부터 NOI를 소개받은 바 있었다. 비록 그가 NOI에 공식 가입을 하지는 않았으나, 파라칸 스타일의 흑인 민족주의, 흑인 국가의 형성, 영적인 갱생, 커뮤니티 컨트롤 담론 등은 아이스 큐브에게 적지 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제프 창에 의하면, 아이스 큐브는 또한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왔을 때 NOI 계열의 래퍼 크레이그 밀러(Craig “Kam” Miller)와 활동가 칼리드 압둘 무함마드 등과 자주 어울렸는데, 이러한 만남은 그에게 일종의 은신처(refuge)를 제공하기도 했다. Edward E. Curtis, “The Nation of Islam”, Muhammad Afzal Upal and Carole M. Cusack, eds., *Handbook of Islamic Sects and Movements* (Leiden, Netherlands: Brill, 2021), p. 658; Kelley, *Yo’ Mama’s Disfunktional!*, p. 87; Chang, *Can’t Stop Won’t Stop*, p.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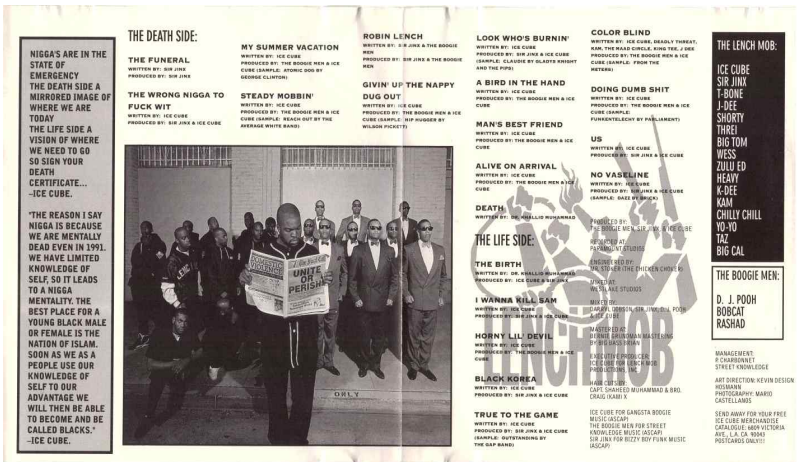
- 13)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의 갱스터 래퍼들은 아프리카에 초점을 둔 흑인 민족주의가 20세기 후반 미국의 “가난한 흑인들이 치러야 하는 매일마다의 전투”를 외면한다고 비난하였다. 아이스 큐브도 솔로 앨범인 <<AmeriKKKa’s Most Wanted>>에 수록된 곡 <The Nigga Ya Love to Hate>에서 “진정한 흑인이라고 지껄이는 개자식들 / 모두 바다 건너 멀리 [아프리카로] 보내버려 / 돌아오게 해달라고 애원할걸”이라고 노래하면서 흑인 민족주의의 아프리카중심주의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인종위기의 리듬: 아이스 큐브의 갱스터 랩 <Black Korea>

앨범 <<Death Certificate>>의 커버 앞면  
(원본 스캔)



앨범 <<Death Certificate>>의 커버 뒷면  
(원본 스캔)



하지만 제프 창이 지적했듯이 아이스 큐브의 흑인 민족주의 전유의 이면에는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그의 반감이 드러워져 있었다. 거기에는 또

바 있다. Kelley, *Race Rebels*, p. 212.

한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아시아계 상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불거진 흑인들의 “지워짐(erasure)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샤페이로 명명된 앨범의 후반부에 수록된 곡 <Us>에서 아이스 큐브는 이러한 두려움과 반감을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일본놈들(Japs)이 내 동네의 모든 공터를 사들여 가게를 짓고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지.”<sup>14)</sup>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아이스 큐브의 분노는 <Us>보다 앨범의 열다섯 번째 트랙인 <Black Korea>에서 더 격렬하게 폭발하였다. <Black Korea>는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 <<Do the Right Thing>>(40 Acres & A Mule Filmworks and Universal Pictures, 1989)의 한 대사로 시작한다. 영화에서 건장한 체격의 젊은 흑인 남성 라디오 라힘(Radio Raheem)은 항상 퍼블릭 에너미의 노래 <Fight the Power>가 크게 흘러나오는 붐박스를 들고 다닌다. 어느 날 붐박스에 사용할 D형 건전지 스무 개를 사기 위해 한인 이민자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다. 그는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결국 부부에게 폭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한인 부부의 남편은 라디오 라힘이 내뱉은 것과 같은 종류의 비속어를 반복하며 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응한다. “Mother fuck you.” 아이스 큐브의 <Black Korea>에는 바로 이 한인 상인의 욕설이 배경의 후렴구로 등장한다. 아이스 큐브는 또한 퍼블릭 에너미의 <Fight the Power>에서 “호른과 전자 기타의 날카로운 소리가 겹쳐진” 빠른 속도의 비트를 차용함으로써 곡의 경쾌함과 박진감을 높이는 데 있어 누구보다도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기도 했다.<sup>15)</sup>

“엘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웅이었지 / 하지만 그는 내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지 / 그 자식은 너무나도 명백한 인종차별주의자지 / 단순하고 분명하지 / 빌어먹을 그 녀석[엘비스]과 존 웨인 / 난 흑인이고 자랑스러우니까.”<sup>16)</sup> 퍼블릭 에너미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존 웨인 등 미국의 문

---

14) Jeff Chang, “Race, Class, Conflict and Empowerment: On Ice Cube’s ‘Black Korea’”, Edward T. Chang and Russell C. Leong, eds., *Los Angeles: Struggles toward Multiethnic Communit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4), p. 88; Chang, *Can’t Stop Won’t Stop*, p. 346.

15) Mina Yang, *California Polyphony: Ethnic Voices, Musical Crossroad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8), pp. 122-124.

화적 상징을 공격하며 백색 아메리카에 저항하는 노래를 불렀지만, <Black Korea>에서 아이스 큐브가 겨는 충구는 흑인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한인 상인을 향해 있었다.

Every time I wanna go get a fucking brew  
I gotta go down to the store with the two  
Oriental one penny counting mother fuckers  
They make a nigger mad enough to cause a little ruckus  
Thinking every brother in the world' s on the take  
So they watch every damn move that I make  
They hope I don' t pull out a gat and try to rob  
Their funky little store, but bitch, I got a job  
So don' t follow me up and down your market  
Or your little chop suey ass will be a target  
Of the nationwide boycott  
Juice with the people that' s what the boy got  
So pay respect to the Black fist  
Or we' ll burn your store, right down to a crisp  
And then we' ll see ya  
' Cause you can' t turn the ghetto into Black Korea

옛 같은 맥주를 사고 싶을 때마다  
두 인간이 있는 가게로 가야 해  
동전 하나하나 세는 빌어먹을 동양인들  
작은 소란이 일어날 정도로 감동이를 미치게 해  
세상의 모든 흑인들이 물건을 훔칠 거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 염병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내가 충을 꺼내 강도질을 하지 않길 바라지  
그 인간들의 냄새나는 쪼그만 가게, 하지만 이 년아, 난 직장이 있지  
그러니 가게에서 날 졸졸 따라다니지 마  
안 그러면 찻수이와 같은 너희 작은 동양놈들이 표적이 될 거야  
전국적인 보이콧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힘, 그게 바로 그 녀석이 가진 것이지  
그러니 흑인 주먹에 경의를 표해  
안 그러면 네 가게를 가루가 될 때까지 불태워버릴 테니  
그럼 이만 가봐

- 
- 16) 퍼블릭 에너미의 <Fight the Power> 가사는 다음 책에서 인용하였다.  
David Samuels, "The Rap on Rap: The 'Black Music' that Isn't  
Either", Murray Forman and Mark Anthony Neal, eds., *That' s the Joint!:  
The Hip-Hop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4), p. 150.

너희들이 이 계토를 블랙 코리아로 바꿀 순 없으니<sup>17)</sup>

<Black Korea>는 1980년대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지역 흑인들의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 노래는 무례하고 오로지 돈만 챙긴다고 알려진 한인 상인들에 대한 흑인 커뮤니티의 분노를 대변하였다. 아이스 큐브가 포착한 것은 작은 가게에서 흑인 고객의 움직임을 의심스럽게 결눈질해 보면서 범죄시했던 한인 상인들에 대한 적개심이었다. “난 직장이 있지” 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Black Korea>는 흑인 청년 실업자를 무시하는 한인 상인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곡이다. 나아가 흑인들의 외국인 혐오란 사실상 유색인종이 미국의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주인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Black Korea>는 이처럼 흑인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외국인 배척 정서에 목소리를 부여하기도 했다.<sup>18)</sup> <Black Korea>는 또한 한인 상인들에게 흑인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면서 폭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스 큐브는 한인 상인을 중국 음식 “참수이”에 비유하는 인종적 욕설을 퍼부었으며, 흑인 계토를 지키고자 외지 상인들을 인종주의적인 방화로 위협하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Black Korea>에 만약 들리지 않는 후렴구가 있다면, 그것은 25년 전 로스앤젤레스 왓츠 지역의 유대인 상점들을 불태웠던 시위대가 외친 “Burn, Baby, Burn” (모조리 훨훨 불살라 버려라)이라는 구호였을 것이다.

### III. “저는 한인들을 존중합니다”

아이스 큐브의 음반이 발표되자마자 한인 커뮤니티는 정치적 힘을 발휘하였다. 1991년 11월 4일, 한미연합회(Korean American Coalition)는 다른 한인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업체에 해당 앨범의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아이스 큐브의 노래가 한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계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종혐오와 폭력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미연합회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법률센터(Asian Pacific American Legal

---

17) Ice Cube, *Death Certificate*.

18) Regina Freer, “Black-Korean Conflict”, Mark Baldassare, ed., *The Los Angeles Riots: Lessons for the Urban Future* (Boulder: Westview Press, 1994), p. 191.



Center), 중국계 미국인 시민연합(Chinese American Citizens Alliance), 일본계 미국인 시민연맹(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 등 여러 단체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했다. 한미연합회는 라티노 단체인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교육펀드(Mexican American Legal Defence and Education Fund), 그리고 심지어 흑인 단체인 로스앤젤레스 어번 리그(Los Angeles Urban League), 남부 기독교 리더십 컨퍼런스(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등의 지원도 받아 냈다.<sup>19)</sup> 또한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은 아이스 큐브의 앨범이 매장에 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음반 유통회사인 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를 대상으로 한 항의 서한 보내기 캠페인을 촉구했으며, 톰 브래들리 로스앤젤레스 시장에게는 앨범 배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1월 4일에는 시장실의 김윤희 보좌관도 유통사에 “현재 매장에 진열된 모든 앨범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브래들리 시장에게 조언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무려 한 달 넘게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를 받아들여 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브라이언 터너 회장에게 “기업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냈다.<sup>20)</sup>

한인 커뮤니티는 아이스 큐브의 앨범을 격렬하게 규탄했던 로스앤젤레스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동맹을 발견했다. 아이스 큐브의 매니저였던 유대인 제리 헬러의 살해를 부추긴 마지막 트랙 <No Vaseline>은 로스앤젤레스 유대인 인권단체 사이먼 비젠탈 센터(Simon Wiesenthal Center)의 부주임 사제 랍비 에이브러햄 쿠퍼가 전국 4대 음반 유통회사인 뮤직랜드, 타워 레코드, 웨어하우스 레코드, 뮤직 플러스에 앨범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사태를 초래했는데, 이는 분명 한인들의 캠페인에 우호적인 환

---

19) Korean American Alliance, “Press Release: Rap Album Denounced for Promoting Racial Violence”, November 4, 1991; Korean American Alliance, “Press Release: KAC Releases Statement on Ice Cube Album”, November 13, 1991, folder 9, box 4248,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Department of Special Collec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20) *Korea Times*, November 11, 1991; “A Letter Sent to Mayor Bradley by Korean Restaurant Own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November 15, 1991; Yoon Hee Kim, “Rap Group Ice Cube’s New Album Entitled ‘Death Certificate’ (Latest Incident of Current B/K and Race Relations Issues)”, November 4, 1991; “A Letter Sent to Bryan Turner by Mayor Bradley”, December 12, 1991, folder 9, box 4248,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경을 조성하였다.<sup>21)</sup> 그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는 음악 산업 전문지 『빌보드』(*Billboard*)로부터 외곽 지원을 받기도 했다. 『빌보드』는 <<Death Certificate>> 앨범이야말로 “가장 악취가 나는 인종주의와 증오심”을 유발했다는 혹독한 비판을 했으며, 소매업체와 음반사에 아이스 큐브가 표출한 증오심에 항의할 것을 촉구하였기 때문이다.<sup>22)</sup> <Black Korea>가 촉발한 한인들의 집단적인 대응은 이러한 지원을 무기로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11월 초까지 앨범의 선주문은 이미 100만 장 이상 쏟아지고 있었다. 혹평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혹평 때문에 아이스 큐브의 앨범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코리아타운의 어느 한 대형 쇼핑센터 벽에 붙어 있던 자필 포스터에 따르면, 몇몇 한인 상인들은 매출 손실이 사업에 타격을 줄 정도로 클 것이라는 이유로 앨범 발매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다.<sup>23)</sup> 전국 4대 음반 유통회사도 계속해서 앨범을 판매했다. 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의 브라이언 터너는 아이스 큐브의 수사가 “일종의 마초적인 욕지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를 옹호하였다.<sup>24)</sup> 미 서부 지역 힙합 역사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했던 이 음반 유통사는 『빌보드』 전체 역사상 공식적인 비난의 표적이 된 앨범은 <<Death Certificate>>가 유일하다고 항변하면서, 이 앨범은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래퍼의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5)</sup>

한인 커뮤니티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비록 아이스 큐브의 앨범 유통을 막지는 못했지만, 한인들은 이제 맥주회사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McKenzie River Corporation)을 상대로 경제적 힘을 발휘해 아이스 큐브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이 주류회사는

---

21) *Los Angeles Times*, November 2, 1991. 사이먼 비첸탈 센터는 이전에 건즈 앤 로지스(Guns N' Roses), 퍼블릭 에너미, 마돈나의 노래에 반(反)유대주의가 담겨 있다고 항의한 적은 있지만, 이들의 노래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한편, 로스앤젤레스의 모든 유대인이 사이먼 비첸탈 센터의 주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록 음악 매니저이자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남가주 지부 회장인 대니 골드버그는 사이먼 비첸탈 센터가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Korea Times*, November 25, 1991.

22) *Billboard*, November 23, 1991.

23) 『한국일보』, 1991년 11월 9일.

24) *Los Angeles Times*, November 2, 1991; *Korea Times*, November 25, 1991.

25) *Billboard*, December 14, 1991.

40온스 병으로 판매되는 몰트 리커 맥주(malt liquor beer) 세인트 아이즈(St. Ides)를 제조하고 각종 광고에 아이스 큐브를 등장시켰다. 미국 평균 맥주의 알콜 도수가 3.5%이던 19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콜트 45(Colt 45)처럼 알콜 함량이 높았던 몰트 리커 맥주는 주로 흑인 노년층이 선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몰트 리커 맥주 선전에는 R&B/소울 뮤지션이 등장하곤 했다. 1986년 세인트 아이즈를 출시했던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도 소울 그룹인 포 탑스(Four Tops)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새롭게 대두한 힙합 음악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Run DMC, NWA와 같은 래퍼들이 자신들의 노래에서 Olde English 800 등 몰트 리커 맥주의 실명을 언급(name check)하는 관행이 확산되자, 몰트 리커 시장은 1980년대 후반에 크게 확장되었다. 급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은 포 탑스를 광고 모델로 더 이상 기용하지 않고 급성장하고 있던 서부 갱스터 래퍼들을 광고에 등장시켜 세인트 아이즈에 “게토 중심적”(ghetto-centric) 이미지를 새겨넣음으로써 새로운 소비자,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젊은 흑인 소비자들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덕분에 세인트 아이즈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고 1991년에는 몰트 리커 맥주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다.<sup>26)</sup>

세인트 아이즈라고 하는 몰트 리커 맥주의 브랜드 이미지 변화를 이끌었던 아이스 큐브. 그가 부른 <Black Korea>에 항의하기 위해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 식료품점 상인들은 자신들의 구매력을 총동원하였다. 11월 초, 이들은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이 광고에 아이스 큐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인트 아이즈 판매와 주문을 중단하고 배달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은 롱비치, 파코이마, 샌퍼난도밸리,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수많은 한인 식료품점으로 확산되었다.<sup>27)</sup> 한인 식품상협회(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지는 않았지만, 맥켄지 리버가 아이스 큐브와의 관계를 끊기를 원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한인식품상협회가 불매 운동을 발 벗고 조직한다면,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199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협회는 총 매출 규모가 16억 달러에 달하는 3천여 개의 한인 식료품 및 주류 소매업체들을 대표하고 있었다. 이처럼 커

26) Eithne Quinn, *Nuthin' but a "G" Thang: The Culture and Commerce of Gangsta Rap*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pp. 1-3.

27) 『한국일보』, 1991년 11월 8일.

다란 매출액 가운데 맥주를 포함한 주류가 무려 26%를 차지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북미 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해보면, 총 1만 5천여 개의 한인 식품상점들이 연간 1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었다.<sup>28)</sup>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에 화들짝 놀란 맥켄지 리버의 사장 마이노트 웨싱어(Minott Wessinger)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급히 로스앤젤레스로 날아와 한인식품상협회 이사들과 회의를 가졌다. 오리건주의 유명한 독일계 양조업자 헨리 와인하드(1830~1904년)의 후손인 웨싱어는 아이스 큐브가 갈등을 조장하는 앨범을 제작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아이스 큐브의 모습이 담긴 홍보물을 주류 판매점에서 철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웨싱어는 아이스 큐브가 등장하는 모든 광고를 중단하고 그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확답을 망설였다. 또한 11월 12일자 『한국일보』에 실린 대형 광고에서 그는 맥켄지 리버는 아이스 큐브에 힘을 쓸 수 없는 작은 기업이라고 변명하였다.<sup>29)</sup> 사태가 결국 이 지경에 이르자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전국한인식품상협회(National 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는 여러 지역에 있는 협회 지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맥켄지 리버가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짧은 시간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시애틀, 타코마, 포틀랜드,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리치몬드, 워싱턴 DC 등에 있는 약 5~6천 개의 한인 상점들이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에 동참했고, 이로 말미암아 맥켄지 리버는 700만 달러의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sup>30)</sup>

11월 20일,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은 한인식품상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스 큐브가 등장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홍보물 유포를 중단하고 더 이상 그를 광고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sup>31)</sup> 맥켄지 리버는

---

28) National Korean-American Grocers Association, "Organization Profile", *National KAGRO Journal*, 1-1(1991), pp. 30-31, folder 24, box 4245,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29) 『한국일보』, 1991년 11월 9일; 『한국일보』, 1991년 11월 12일; *Korea Times*, November 18, 1991.

30) Jeff Chang, "Race, Class, Conflict and Empowerment", p. 97; Pyong Gap Min, *Caught in the Middle: Korean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p. 147.

또한 아이스 큐브에게 연락해 <Black Korea>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입장을 알려줬다고 약속했다.<sup>32)</sup> 나아가 맥켄지 리버는 아이스 큐브가 한인 식품상협회의 임원인 김양일과 데이비드 김 등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식품상협회의 간부에 따르면, 1992년 2월 3일에 열린 이 회동에서 아이스 큐브는 자기 음악의 특징을 흑인들의 “과도한 표현”(excessive expressiveness)으로 설명하면서, 결코 한흑갈등에 기름을 부을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였다. 아이스 큐브는 회동 5일 후 김양일 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의도가 한인들을 불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한인들을 존중한다고 강조하였다.

저는 앨범 <<Death Certificate>>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거나 어떤 종류의 폭력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한국계 미국인이나 모든 한국계 미국인 상인들을 겨냥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인들을 존중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실제 문제를 겪었던 몇몇 가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커뮤니티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 과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국을 순회할 때 저는 팬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상점주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당부할 것입니다.<sup>33)</sup>

#### IV. 맺음말: 91년 겨울

아이스 큐브의 <Black Korea>로 한인과 흑인 두 커뮤니티는 갈등을 경험하였으나, 양자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1991년 11월 14일, 한인식품상협회는 로스앤젤레스 중남부 지역에서 청소

31) 『한국일보』, 1991년 11월 22일. 한편, 『빌보드』에 따르면 웨싱어는 이러한 조치를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그는 <Black Korea>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면 아이스 큐브와 계속 작업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Billboard*, December 14, 1991.

32) 『한국일보』, 1991년 11월 22일.

33) “A Facsimile Message Sent to Yoon Hee Kim by Annie E. Cho,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March 6, 1992, folder 24, box 4245,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아이스 큐브의 편지는 애니 E. 조가 보낸 팩스 메시지에 첨부되어 있다.

년을 위한 일자리 1백 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sup>34)</sup> 다음 달, 브래들리 시장과 로스앤젤레스시 인간관계위원회(Los Angeles City Human Relations Commission)는 한인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상대로 파트너십을 맺고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하기”라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신규 이민자 상인들을 “책임감 있는 사업가”로 양성하고자 했다.<sup>35)</sup> 이듬해 1월 식품상협회는 또한 한인 상인과 흑인 고객 사이에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열 가지 “좋은 비즈니스 관행” 원칙이라는 것을 제정하기도 했다.<sup>36)</sup>

두순자-할린스 사건 재판은 흑인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를 화해시키려는 이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91년 3월 16일 라타샤 할린스라는 흑인 청소년을 도둑으로 오인해 총으로 살해한 한인 여성 상인에게 같은 해 11월 15일 집행 유예, 보호 관찰, 4백 시간 커뮤니티 봉사, 5백 달러 벌금을 선고한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조이스 A. 칼린 판사의 결정을 대부분의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공정한 용기의 표현이라고 환영하였다.<sup>37)</sup> 『한국일보』 사설은 이 판결이 미국에도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극찬했다.<sup>38)</sup> 칼린 판사의 판결에 대해 한인들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는 어려웠다. 판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의 거친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한인청소년센터(Korean Youth Center)의 김봉환 소장이 일부 흑인 활동가들과 힘을 합쳐 판사의 양형 재량권을 줄이고 판결에 대한 커뮤니티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몇몇 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인종주의적인 욕설로 대응하였다. “도대

---

34) Office of Mayor, “News: Bradley Announces Major Jobs Program to Be Sponsored by 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 for South Central Residents”, November 14, 1991, folder 8, box 0187,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35) Los Angeles City Human Relations Commission, *Doing Business in South Central Los Angeles: A Training Design for Newcomer Merchants*, December, 1991, file HR/00 P037e-002, box D-1295, Los Angeles City Records Center and Archives.

36) 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 “The 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 (KAGRO) Statement of ‘Good Business Practice’ Principles”, January 24, 1992, folder 8, box 0187,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37) 재판을 둘러싼 담론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찬행, 「두순자-할린스 사건에 관한 연구」.

38) 『한국일보』, 1991년 11월 22일.

체 김봉환이란 자가 누구냐? 한국인이냐, 캄둥이냐?” 39)

두말할 나위도 없이 흑인 커뮤니티는 두순자에 대한 칼린 판사의 관대한 판결에 분노했다. 살해된 소녀의 삼촌인 리처드 할린스는 “그녀는 죽게 될 거야... 내 조카를 죽였어. 그녀는 대가를 치를 거야” 라고 말하며 조카의 죽음에 대해 복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sup>40)</sup> 할린스 가족만이 불타는 분노를 표출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한 독자는 『로스엔젤레스센티넬』(*Los Angeles Sentinel*)에 보낸 편지에서 “외국인이 ‘미국 태생’의 시민을 죽였는데도 그 외국인은 처벌받지 않았다” 고 항의하면서 두순자 판결에 대한 불만을 흑인 토착주의 언어로 표현하였다.<sup>41)</sup> 두순자가 귀화한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은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아닌 듯하였다. 흑인 커뮤니티의 반한(反韓) 정서를 선동하고 있었던 대니 베이크웰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sup>42)</sup> 『로스엔젤레스타임스』(*Los Angeles Times*) 정치부 기자 빌 보야르스키에 따르면, 베이크웰은 과거 미국 남부의 보안관들이 “Negro”의 첫 번째 모음을 길게 발음하여 흑인을 비웃었던 것처럼 “Koreans”라는 단어의 중간 음절을 길게 늘임(“Kor-EE-ans”)으로써 사우스 센트럴 로스엔젤레스 주민들의 격한 반한 감정에 휘발유를 끼얹었다.<sup>43)</sup> 그는 나아가 월터 터커 캄턴 시장과 함께 한인 소유 상점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sup>44)</sup>

반한 감정은 로스엔젤레스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혐오사건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통계에 의하면, 1990년 3월부터 1991년 3월까지 흑인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 사이의 증오범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할린스 총격 사망 사건 다음 달부터 두 커뮤니티 사이에 증오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그 수치가 1991년 겨울~1992년 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sup>45)</sup> 예를 들어, 12월 4일 캄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태

---

39) Elaine H. Kim, “Between Black and White: An Interview with Bong Hwan Kim”, Karin Aguilar-San Juan, ed., *The State of Asian America: Activism and Resistance in the 1990s* (Boston: South End Press, 1994), p. 86.

40) *Los Angeles Sentinel*, November 21, 1991.

41) *Los Angeles Sentinel*, December 12, 1991.

42) 베이크웰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찬행, 「한흑갈등, 베이크웰, 그리고 로스엔젤레스 로컬 정부」, 『인문과학』, 66호(2017), 5~37쪽.

43) *Los Angeles Times*, November 20, 1991.

44) 『한국일보』, 1991년 12월 14일.

국민 여성이 한인으로 오인되어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흑인 갱단 조직원 두 명에게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여성을 차에서 끌어내 야구 방망이로 차 유리창을 부순 후 할린스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흉기로 그녀를 폭행했다.<sup>46)</sup> 열흘 후, 한인 상인 박용태는 라틴계가 주로 거주하는 피코와 페도라 애비뉴에 있는 자신의 주류 판매점에서 흑인 강도 두 명이 쓴 총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은 이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인종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박용태 살해 사건으로 인해 많은 한인 상인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소송, 감시 카메라, 방탄 유리창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sup>47)</sup> 1992년 1월에는 중식당과 한인 주류 판매점이 기물 파손범의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그들은 가게의 벽에 “Latasha Harlins RIP” 라는 문구를 커다랗게 써놓고 달아났다.<sup>48)</sup> 로스앤젤레스 흑인과 한인 사이의 적대감은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흑인 커뮤니티의 소환 운동에 직면한 칼린 판사를 지지하기 위해 편지 쓰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1992년 4월에는 로스앤젤레스 대한노인회가 칼린 판사에게 재정적 지원까지 하였는데, 그 결과 흑인 커뮤니티의 반감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sup>49)</sup>

91년의 추운 겨울과 이듬해 봄은 이처럼 아이스 큐브가 마치 예언가라도 된 듯 한쪽갈등이 뜨거운 연기를 뿜으면서 격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그 누가 알았으랴. 이러한 상황이 머지않아 로스앤젤레스를 불태우는 대폭발의 서곡이었음을.

---

45) Nadine Koch and H. Eric Schockman, “Riot, Rebellion or Civil Unrest? The Korean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Business Communities in Los Angeles”, George O. Totten III and H. Eric Schockman, eds., *Community in Crisi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fter the Los Angeles Civil Unrest of April 1992* (Los Angeles: Center for Multiethnic and Trans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94), pp. 67-70, pp. 74-76.

46) Los Angeles City Human Relations Commission, “Recent Incidents of Anti-Asian Sentiment”, file HR/00 O037e-0009, box D-1295, Los Angeles City Records Center and Archives; *Korea Times*, December 30, 1991; 『한국일보』, 1991년 12월 20일.

47) *Korea Times*, December 23, 1991; *Korea Times*, December 30, 1991; 『한국일보』, 1991년 12월 17일.

48) *Korea Times*, January 20, 1992.

49) 『한국일보』, 1992년 1월 25일; 『한국일보』, 1992년 4월 16일.



인종위기의 리듬: 아이스 큐브의 갱스터 랩 <Black Korea>

충북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histchlee@chungbuk.ac.kr

주제어(Key Words)

아이스 큐브(Ice Cube), 갱스터 랩(gangster rap), 블랙 코리아(<Black Korea>), 미주 한인(Korean American), 한흑갈등(Black Korean Conflict),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투고일: 2023.10.10. 심사일: 2023.10.17. 게재확정일: 2023.11.23.

<국문초록>

인종위기의 리듬:  
아이스 큐브의 갱스터 랩 <Black Korea>

이 찬 행

본 논문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한 갱스터 래퍼 아이스 큐브가 1991년 10월에 발표한 곡 <Black Korea>에 의해 로스앤젤레스의 한흑관계가 악화되었던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본 논문은 아이스 큐브의 노래에 분노한 한인들의 집단적 대응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음악적으로 보면, <Black Korea>가 실려 있는 아이스 큐브의 앨범 <<Death Certificate>>는 그가 동료 래퍼들보다 높은 수준의 랩 실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Black Korea>의 가사는 노골적으로 한인 이민자 상인들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짧고 논란이 많았던 이 노래에 대응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한인 커뮤니티는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대립과는 별개로 흑인과 한인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두순자 사건 재판은 두 커뮤니티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으려는 모든 노력을 무너뜨렸다. 그 결과 1991년 겨울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혐오 관련 사건은 급격히 증가하고 말았다.

<Abstract>

**Rhythm of Racial Crisis:  
Ice Cube' s Gangster Rap "Black Korea"**

Lee, Chanhaeng

This essay examines the processes through which the release of "Black Korea" in October, 1991 by Los Angeles-based gangster rapper Ice Cube exacerbated black-Korean relations in Los Angeles. It also presents an overview of collective actions of Korean Americans against the song. Musically speaking, Ice Cube' s album *Death Certificate* which included a track titled "Black Korea" showed that he had reached a higher level of rapping skill than his peers. However, the lyrics of "Black Korea" explicitly threatened Korean immigrant merchants. To respond to this short and highly controversial song,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Los Angeles sought to exert political muscle. Apart from such confrontations, there were also efforts to improve the relations between blacks and Koreans. But, the case of Soon Ja Du undermined every effort to construct a bridge between the two communities. As a result, the winter of 1991-1992 witnessed a sharp increase in violent, hate-related incidents against Korean immigrants in Los Angeles.

## 참 고 문 헌

### 1. 아카이브

Los Angeles City Records Center and Archives  
Tom Bradley Administrative Papers, Department of Special Collec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2. 신문 및 잡지

*Billboard*

*Korea Times*

*Los Angeles Sentinel*

*Los Angeles Times*

『한국일보』 로스앤젤레스관

### 3. 음반

Ice Cube, *Death Certificate* [CD] (Los Angeles: Priority Records, 1991).

-----, *AmeriKKKa' s Most Wanted* [CD] (Los Angeles: Priority Records, 1990).

NWA, *Straight Outta Compton* [CD] (Los Angeles: Ruthless/Priority Records, 1988).

### 4. 단행본

Chang, Jeff, *Can' t Stop Won' t Stop: A History of the Hip-Hop Generation* (New York: Picador, 2005).

-----, "Race, Class, Conflict and Empowerment: On Ice Cube' s 'Black Korea' ", Edward T. Chang and Russell C. Leong, eds., *Los Angeles: Struggles toward Multiethnic Communit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4).

Cross, Brian, *It' s Not about a Salary...Rap, Race and Resistance in Los Angeles* (London: Verso, 1993).

Curtis, Edward E., "The Nation of Islam" , Muhammad Afzal Upal and Carole M. Cusack, eds., *Handbook of Islamic Sects and Movements* (Leiden, Netherlands: Brill, 2021).

Davis, Mike, *City of Quartz: Excavating the Future in Los Angeles* (New

- York: Vintage Books, 1992).
- Freer, Regina, “Black-Korean Conflict” , Mark Baldassare, ed., *The Los Angeles Riots: Lessons for the Urban Future* (Boulder: Westview Press, 1994).
- Gilroy, Paul, *Against Race: Imagining Political Culture beyond the Color Line*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 Gordon, Allen, “Ice Cube: *Death Certificate*” , Oliver Wang, ed., *Classic Material: The Hip-Hop Album Guide* (Toronto: ECW Press, 2003).
- Kelley, Robin D. G., *Yo’ Mama’ s Disfunktional! Fighting the Cultural Wars in Urban America* (Boston: Beacon Press, 1997).
- , *Race Rebels: Culture, Politics, and the Black Working Class* (New York: Free Press, 1996).
- , “The Black Poor and the Politics of Opposition in a New South City, 1929-1970” , Michael Katz, ed., *Underclass Debate: Views from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Kim, Elaine H., “Between Black and White: An Interview with Bong Hwan Kim” , Karin Aguilar-San Juan, ed., *The State of Asian America: Activism and Resistance in the 1990s* (Boston: South End Press, 1994).
- Koch, Nadine and H. Eric Schockman, “Riot, Rebellion or Civil Unrest? The Korean American and African American Business Communities in Los Angeles” , George O. Totten III and H. Eric Schockman, eds., *Community in Crisi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fter the Los Angeles Civil Unrest of April 1992* (Los Angeles: Center for Multiethnic and Trans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94).
- Leonard, David J., “Ice Cube” , Mickey Hess, ed., *Icons of Hip Hop: An Encyclopedia of the Movement, Music, and Culture*, Vol. 2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007).
- Lipsitz, George, “Cruising around the Historical Bloc: Postmodernism and Popular Music in East Los Angeles” , Simon Frith, ed., *Popular Music: Critical Concepts in Media and Cultural Studies*, Vol. 4 (New York: Routledge, 2004).

- Min, Pyong Gap, *Caught in the Middle: Korean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 Quinn, Eithne, *Nuthin' but a "G" Thang: The Culture and Commerce of Gangsta Rap*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 Rose, Tricia, *The Hip Hop Wars* (New York: Basic Books, 2008).
- , *Black Noise: Rap Music and Black Culture in Contemporary America* (Hanover, NH: Wesleyan University Press, 1994).
- Samuels, David, "The Rap on Rap: The 'Black Music' that Isn't Either", Murray Forman and Mark Anthony Neal, eds., *That's the Joint!: The Hip-Hop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2004).
- Watkins, S. Craig, *Hip Hop Matters: Politics, Pop Culture, and the Struggle for the Soul of a Movement* (Boston: Beacon Press, 2005).
- Yang, Mina, *California Polyphony: Ethnic Voices, Musical Crossroad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8).

## 5. 논문

- 이찬행, 「Korean Americans' Responses to John's Liquor Store Boycott in Los Angeles, 1991」, 『역사와 담론』, 83호(2017), 137~164쪽.
- , 「한흑갈등, 베이크웰,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로컬 정부」, 『인문과학』, 66호(2017), 5~37쪽.
- , 「두순자-할린스 사건에 관한 연구」, 『미국사연구』, 39호(2014), 191~220쪽.
- 채현경, 「음악 인류학(Anthropology of Music)의 최근 연구 동향」, 『민족음악학』, 18호(1996), 31~62쪽.
- Canton, David A.,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Tensions in Gangsta Rap," *Reviews in American History*, 34-2(2006), pp. 244-257.
- Ice Cube and Angela Y. Davis, "Nappy Happy," *Transition*, 58(1992), pp. 174-192.

## 흑인법(code noir)의 식민지성: ‘호모 사케르’ 만들기

문 중 현

### 1. 들어가며

이탈리아 정치철학자인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고대 로마법에 등장하는 “호모 사케르”(homo sacer)를 벌거벗은 생명(nuda vita), 즉 “살해할 수 있지만,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는 생명”<sup>1)</sup>으로 정의했다. 희생물로 바칠 수 없는 생명은 정상적인 법질서에서 배제된 생명이기애 이러한 생명을 살해한 자라도 법의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의 근본 범주를 주권과 벌거벗은 생명의 구분에서 찾는 아감벤의 이론은 서양 정치의 근본적 범주는 동지와 적의 구별이 아니라 벌거벗은 생명/정치적 존재, 조예/비오스, 배제/포함이라는 범주쌍이라 주장한다. 배제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생명은 언제나 주권 권력에 포섭되어 있는데, 호모 사케르는 법질서의 내부에 있으면서 외부에 있는 이중적, 모순적 위상을 동시에 보유한 생명으로 정의된다. 아감벤은 자연적 생명인 조예(zōē)와 법적, 시민적 지위를 보유한 생명 비오스(bíos)로 구분한다. 호모 사케르는 비오스에서 배제당하고 조예에 머무르며,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벌거벗은 생명’이다. 이들은 외부의 존재라는 낙인을 받은 채, 체제 안에서 존재하고 지배당하는 존재이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그리스 로마시대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유대인 수용소, 안락사에 이르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던 호모 사케르들을 제시하면서 주권 권력을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모 사케르들 중 흑인과 식민지인은 공백으로 남겼다. 유럽에서는 영토국가(état territorial)에서 인구국가(état de population)로 전환되며 근대적 주권국가가 수립되고 있을 때, 식민지에서는 흑인을 주권자에서 배제하는 법률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흑인 노예를 유럽 식민자들이 만들어

1)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서울: 새물결, 2008), 177쪽.

낸 호모 사케르로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령 식민지 노예제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흑인법(Code noire)은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다. 법이 아닌 왕령(Edit 또는 Ordonnance)이며, 이름도 의미가 불명확해 검은 법, 흑인 법, 노예 법 등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848년 흑인법 폐지는 올바른 것이 실현되어 마침내 나쁜 것은 영원히 사라졌다는 역사 인식을 낳았고, 부끄러운 식민지 노예제도의 역사를 망각할 수 있었다.<sup>2)</sup>

잊혔던 흑인법이 주목받게 된 계기는 기억법들(lois mémorielles)이 연이어 제정되던 2004년 5월 21일 일명 토비라법(loi Taubira)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서부터였고, 특히 루이 살라-몰랭(Louis Sala-Molins) 1987년 출간한 『흑인법 혹은 가나안의 고난』(Le Code Noire ou le calvaire de Canaan)이 재간행되어 정치적, 역사적 쟁점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었다. 국제 흑인 위원회(Comité international des peuples noirs: CIPN), 마르티니크 배상을 위한 국제 운동(Mouvement international pour les réparations Martinique: MIR), 98년 행진 위원회(Comité Marche 98) 등 노예의 후손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에서 흑인법은 노예제와 식민주의 압제의 역사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노예제 역사와 기억을 위한 위원회(Comite pour la memoire et l'histoire de l'esclavage: CPMHE)가 노예제를 반인륜범죄로 규정한 '2001년 5월 10일 법'을 근거로 설치되면서 노예제의 역사는 공론장에 등장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치인도 흑인법의 역사에 개입하였다.<sup>3)</sup> 시라크(Chirac) 대통령은 2006년 1월 엘리제 대통령 궁을 방문한 고등학생들과 함께 5월 10일 노예제 폐지 기념의 날 제정을 축하하는 행사에서 노예무역과 흑인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술을 역사 교과서에 포함할 것을 약속했고, 다음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 역시 2008년 5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노예제의 역사를 다룰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

2) Laurent Dubois, "Histoires d'esclavage en France et aux États-Unis", *Esprit*, 2(2007). pp. 70-73.

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문중현, 「탈식민시대 프랑스의 노예제 기억과 역사 - '노예무역, 노예제, 노예제폐지 기념의 날' (Journée nationale des mémoires de la traite, de l'esclavage et de leurs abolitions)을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48호(2023).



프랑스 대혁명이 진행되던 중 발생한 아이티 혁명의 결과 1794년 2월 법령에 의해 폐지된 프랑스의 노예제는 1802년 나폴레옹에 의해 부활하였다가 최종적으로 1848년에 4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 노예제 폐지는 1803년 덴마크, 1823년 칠레, 1829년 멕시코, 1833년 영국 등 다른 유럽과 식민지에 비교해도 늦게 완성된 셈이다. 물론 프랑스에서 흑인법 이전에도 흑인법과 유사한 노예제를 지탱하는 법률로 폭력과 전쟁, 약탈과 포획, 매매 등을 통해 만들어진 노예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였다. 노예노동은 아테네 민주정의 경제적 기반이었고 라티퐁디움은 로마의 경제적 기반이었다. 기독교인을 노예화할 수 없다는 기독교 윤리의 전파와 함께 노예제는 중세 이래 그 경제적 중요성이 사라졌지만, 지중해를 중심으로 비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노예무역은 사라지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가사노예(Esclave domestique)는 1300년 이후, 점차 사라져 적지만 보상을 받는 하인(classe de serviteurs)들로 대체되어갔다. 16세기 몽펠리에와 루실롱(Roussillon)에서 노예해방에 관한 공증문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노예는 프랑스 땅에서 사라졌고, 18세기 작성된 관습법전은 프랑스 땅에서 노예를 소유한다는 완전히 금지했는데 프랑스 땅은 이제 ‘자유’와 동의어가 되었다.<sup>4)</sup> 17세기 프랑스 왕국의 모든 신민이 자유민이며, 점차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요구하면서 자유를 확대해 나아가던 메트로폴리스에서의 상황과는 달리 유럽인들이 정복한 식민지에서 노예제는 식민지 경제를 성장시키는 핵심 생산관계로 정립됐다. 이러한 식민지 노예제는 기본적으로는 유럽의 중세 노예제와 무슬림 세계의 노예제 그리고 아프리카의 노예제들에 기원하는 다양한 성격의 제도가 변주되면서 자리 잡았다.<sup>5)</sup>

이 논문에서는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에 기대어 흑인이자 노예였던 아프리카 이주민에게 사회적 지위와 의무, 노예의 주인이자 지배자가 지닌 권리 등을 규정한 1685년 루이 14세 치하 프랑스에서 제정된 흑인법을 살펴볼 것이다.<sup>6)</sup> 흑인법은 메트로폴리스인 프랑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에 적용된 새로운 법률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흑인법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흑인=노예라는 등식을 성립시킨 법률이

4) Christian Delacampagne, *Histoire de l'esclavage* (Paris: Le Livre de poche), 2002, p. 109.

5) 염운옥, 『낙인찍힌 몸-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 된 몸의 역사』 (서울: 돌베개, 2019), 104~112쪽.

6) 흑인법은 여러 차례 왕명으로 공포되어 다양한 판본이 존재한다.

다. 이 법률은 흑인노예에 대한 배제적 포함을 전제하고 있는데, 흑인 노예는 왕국의 신민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주체도 아닌 오로지 법률의 대상일 뿐이었다. 흑인법에 나타나는 흑인노예를 역사적인 ‘호모 사케르’ (법외자)로 위치시키며, 프랑스 본국에는 인정되지 않던 노예제를 법률로 정당화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인 흑인법의 식민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왕령으로 공포된 이 법률은 생물학적 인종주의를 제도화한 최초의 근대적 인종법이라 평가된다. 반인륜적, 비인간적인 노예법의 시초로 혐오스럽고, 난폭한 폭력에 불과했다는 윤리적, 정치적 평가를 우선시하기보다는 흑인법이 제정되던 당시, 노예의 지위를 둘러싼 메트로폴리스의 왕권과 식민지 노예소유주의 갈등 속에서 노예의 지위를 다면적인 역사성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양심을 옹호하던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흑인법과 흑인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몽테스키외를 중심으로 흑인법과 흑인에 대한 시선을 검토해 볼 것이다.

## 2. 흑인법 제정: 루이 14세와 흑인법

대항의 시대 포르투갈인들에게 항해의 욕망을 불러일으킨 것은 황금을 찾고, 보리를 경작할 수 있는 토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랍의 정복자들로부터 8세기에 스페인으로 9세기에 포르투갈로 소개된 설탕이었다. 십자군 전쟁 시기에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사탕수수는 점차 서쪽으로 재배지를 확대해 나아갔다. 사탕수수 재배에 적당한 키프로스, 시칠리아, 남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기후는 설탕 산업을 촉진 시켜 나아갔다. 대항의 시대 포르투갈인은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카나리아, 마데리아 군도에서 사탕수수 농업을 일구었다. 사탕수수 재배 노동은 다른 농업노동에 비해 육체적으로 너무 고되었기 때문에 자영농은 기피했고, 항상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안고 있었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노예노동이 실행되고 있었던 시칠리아에서의 사탕수수 농장은 식민지 농장주에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신세계 개척에 필요한 노동력을 아프리카로부터 직접 공급하는 것이 시도되었다.<sup>7)</sup> 이러한 해결책은 15세기에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로마제국 이래 중세에도 노예제는 미미하게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로마법을 상속한 중세 법체계에서 노예제는 법적

7) 보다 자세히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마르크 페로, 고선일 역, 「노예무역과 노예제에 관하여」, 『식민주의 역사: 16~21세기 말살에서 참회로』 (서울: 소나무, 2008).

근거를 지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반대하지 않았다. 포르투갈인들은 더욱 커진 설탕에 대한 욕망과 함께 노예를 찾아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땅으로 진출했다. 15세기 후반 이미 포르투갈인은 1년에 3천 명 정도의 노예들을 알가르브(Algarve)와 리스본항으로 수입하여 대서양 섬들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이주시켰다. 이 시기 노예무역에서 무슬림 상인들과 아프리카 부족장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정복자의 권리라는 보편적 관습법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아프리카에서의 노예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포로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노동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하층 농민의 지위와 유사했기 때문에 이른바 신대륙에서 행해진 노예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존재했다. 노예주에 소속된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로마법과는 사물로 취급되는 것과는 달리, 아프리카의 전통적 관습법에 따라 노예는 여전히 인간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 단, 법적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었을 뿐이다.<sup>8)</sup>

포르투갈인이 주도한 노예무역은 1492년 ‘신대륙 발견’ 이후 본격적으로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무역의 경로도 확장되어갔다. 16세기 중반까지 노예무역은 주로 생 투메 섬의 플랜테이션과 유럽 시장 사이에서 나타났으나, 스페인의 아메리카 부왕령 설치(1524) 이후 본격적으로 신대륙 개발과 함께 최종 경로를 변경하였다. 1550년 리스본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던 노예들은 광산, 정원사, 농업노동, 선박 건조, 가사 노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고 스페인에서는 각 가정에 1명의 노예를 보유했을 정도로 노예는 이베리아반도 곳곳에 존재하였다. 하지만 유럽에 정착한 노예들은 ‘신세계’의 노예들과는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흑인 노예들의 자녀는 세례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해방노예나 몰라토들도 사회적 역할을 자유롭게 수행할 정도로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아프리카계 이주자들은 세대를 거치면서 통합되었다. 이 시기 포르투갈과 스페인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를 통해 남부지방에서 노예가 매매 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노예는 왕국 내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신세계’에서의 노예제는 유럽과는 전혀 달랐다. 스페인 본토에서는 인정되던 노예의 혼인권이 식민지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sup>9)</sup>

8) Alain Testart, “L’ esclavage comme institution”, *L’ Homme*, 145(1998), p. 63.

15세기 중반 이후, 신대륙의 개발과 노예무역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이 커짐에 따라서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1530년 후추와 황금을 찾아서 세네갈과 잠비아에 도착했지만, 종교전쟁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혼란 때문에 일시적으로 식민지 건설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7세기 초반 앙리 4세(Henri IV)가 가져다준 평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아메리카대륙으로 진출해서 캐나다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카리브해의 여러 섬에까지 식민지를 확장하였다. 1627년 리슐리외(Richelieu)는 몇몇 노르망디 인들을 생 크리스토프 섬(île saint christophe)과 과들루프(Guadeloupe)로 보내어 식민지 개척을 실험했을 즈음 프랑스 밀수업자들은 중간 기착지로 기안(Guyane)을 점령하였다. 리슐리외는 1635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모방한 ‘아메리카제도 회사’(Compagnie des Iles d’Amérique)를 창립하면서 해외 식민지 경영에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리슐리외의 초기 식민지 개척 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은 계약노동자(‘Engagé’ 혹은 ‘trente-six mois’) 신분의 농업 이주민들이었다. 계약노동자 17세기 광범위하게 확산한 제도로서 왕의 명령에 따라 선박의 선장에게 지원자를 이송하게 하고 지원한 농민들은 36개월간 강제적으로 노동을 수행한 이후에야 자유민이 될 수 있게 하는 제도였다.<sup>10)</sup>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주자들은 토지를 사서 안착해 지대 납부자(censitaire), 즉 온전한 시민으로 자유를 회복해 정착하거나, 프랑스 본토로 귀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식민지 개발 초기 계약노동자로는 식민지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은 온전히 확보할 수 없게 되자 프랑스는 곧 노예무역으로 관심을 돌렸다.

설탕이 유럽에서 일상적인 식품으로 자리 잡힌 17세기 후반 노예무역도 마찬가지로 더욱 성행하였다. 설탕과 노예라는 두 개의 교역망은 식민지와 메트로폴리스의 의존적 관계 역시 발전시켰다. 설탕만을 생산하는 식민지는 모든 소비재를 식민모국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식민모국은 자신의 식민지에서 독점적인 공급자였다. 루이 14세의 재상인 콜베르(Colbert)는 이러한 보호무역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면서 모든 프랑스 식민지는 운송에 필요한 선박을 프랑스 선박만을 이용해야 했을 뿐 아니라,

9) Marc Cheb Sun ed., *L'histoire de l'esclavage et de la traite négrière: 10 nouvelles approches* (Paris: J' ai lu, 2021), pp. 12-14.

10) 주경철, 『대항해 시대: 해상 팽창과 근대세계의 형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8), 340~342쪽.

프랑스 본토와만 교역하도록 강제했다. 콜베르는 더 공격적으로 프랑스 본토와 아프리카, 아메리카 사이의 무역에 독점적 지위를 보유한 서인도 회사(Compagnie des Indes occidentales, 1664), 세네갈 회사(Compagnie du Senegal, 1674), 기네회사(Compagnie de Guinée, 1683)를 창립하였다. 큰 규모의 식민지회사를 창립하기 위해 프랑스의 절대왕정은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큰 투자가 큰 수익을 낳던 상황에서 프랑스는 식민지회사를 통해 식민지 플랜테이션 생산에도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밀수를 금지하기 위해 항구는 통제되어야 했고, 더욱 정확한 생산, 소비의 관리 기술은 동반되어 발전했다. 근대국가는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통치하고 경영하는 능력을 스스로 빠르게 습득해야만 했다. 이러한 가운데 17세기 후반 프랑스의 서인도 제도 식민지 인구에서 흑인 노예의 비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680년대 초에 대략 25,000명에 다다른 흑인 노예 수는 프랑스 본토에서 이주한 인구를 초과하기 시작하였다.<sup>11)</sup>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프랑스 본토와 분리된 식민지였지만 서인도 제도의 플랜테이션 회사들은 프랑스의 일부였다. 양시앵 레짐 기간 서인도 제도를 지방으로 간주했지만, 입법 및 행정 관행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프랑스는 식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고 불확실한 결과를 낳을지라도 강경한 군사작전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세기 초까지 카리브해는 프랑스가 관여한 모든 주요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영토이자 전쟁터였다. 설탕이 프랑스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수출품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서인도 제도의 상황은 프랑스 왕국의 불안을 낳았다. 늘어난 흑인 인구수를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던바, 1685년 흑인법은 콜베르의 주도로 제정, 공포되었다. 이것은 노예의 지위를 근대적 사법체계 속에서 규정한 최초의 시도이다. 동등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죽일 수 있는 자”, “희생물로 바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노예는 주권의 외부에 있는 호모 사케르였다. 노예주가 노예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호하고 노예주가 행사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대적 법률이었다. 흑인법은 왕령으로 식민

---

11) Florence Gauthier, “L’ esclavage en héritage”, in Claude Liauzu ed., *Violence et colonisation* (Paris: Syllepse, 2003), p. 69.

지 모두에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1687년 앤틸러스 제도, 1704년 기안, 1723년 레위니옹, 1724년 루이지애나로 적용이 확대되어 갔다. 동시에 식민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농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군사화(militarisation)는 진전되어 앤틸러스 제도의 섬들은 거대한 수용소(geoprison)로 변해갔다. 식민지의 행정관은 주로 군인이 임명되었고 식민자들로 구성된 자경단은 도망 노예를 찾거나 노예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감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sup>12)</sup>

뤼시앙 페이트로(Lucien Peytraud)가 1897년 출간한 『1789년 이전 서인도 제도의 노예제』(*L' Esclavage aux Antilles françaises avant 1789*)에서 1685년 콜베르가 흑인법을 만들었다고 서술한 이래 오랫동안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sup>13)</sup> 하지만, 마르티니크, 생 크리스토프, 파달루프에서는 흑인법 공포 이전인 1668년 이미 식민지 총독이 흑인법에 해당하는 칙령을 실행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해군성, 식민성 장관이자 재무 감사관 콜베르는 1681년 4월 30일 루이 14세의 이름으로 파톨레(Patoulet) 지사에게 전달하는 명령서에서 지방법 차원에서 노예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왕국의 법 공포를 위한 보고서를 요구했다. 1682년 5월 20일 지방법 차원에서 농장에서 경작하는 노예의 압류금지, 주인의 허가증이 있어야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제한 법 등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1683년 파톨레의 후임자인 베공(Bégon)은 보다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콜베르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식민지 총독이 작성한 보고서가 흑인법의 초안이 되어 왕령의 바탕을 제공하였다. 콜베르가 1683년 9월 초 사망한 이후 그의 아들인 장 밥티스트 앙트완 콜베르(Jean-Baptiste Antoine Colbert)는 식민지 총독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왕령을 완성했다. 흑인법이 포함된 문서에 서명된 콜베르는 아버지가 아닌 아들이었고, 이것이 후대에 혼란을 가져와 흑인법의 작성자가 콜베르로 알려지게 되었다.

에릭 윌리엄스(Eric Williams)는 『카리브 제도의 역사』(*L' Histoire des Caraïbes, 1492-1969*)에서 “17세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제도적인 노예법은 1685년 3월 공포된 흑인법”이라 서술했다.<sup>14)</sup> 하지만 실제 오늘날

12) *ibid.*, p. 73.

13) Lucien Peytraud, *L' Esclavage aux Antilles françaises avant 1789* (Paris: Libraire Hachette et Cie, 1897), p. 150, online: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5470713x> (검색일: 2023년 10월 11일).

14) Eric Willans, *L' Histoire des Caraïbes, 1492-1969* (Paris: Editions

우리가 흑인법이라 부르는 것은 1718년에 제작되어 유포된 판본일 뿐이다. 1685년 왕령의 이름이 공식적으로는 흑인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속적으로 식민지에서 노예에게 적용되는 행정적, 사법적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흑인법이라는 별칭을 가지게 됐다.

한데, 왜 왕의 칙령이 법(code)로 불리게 되었을까? 루이 14세는 수많은 사법적 포고문 공표하였다, 1667년 민법에 관련된 명령은 루이 법(Code Louis), 1670년 형사 절차를 규정한 형사법(Code criminel), 1673년 육상에서의 상업에 대한 명령을 상법(Code marchand)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 왕령을 모은 하나의 법률적 체계를 의미했기 때문에 법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루이 14세가 선포한 왕령을 법으로 부르는 관습으로 인해 흑인법은 법으로 불리게 됐다.<sup>15)</sup>

또한, 왕령의 수식어에 흑인(Noir)이 붙여진 것은 18세기 초부터 프랑스에서 흑인과 노예라는 각각의 단어에서 의미의 혼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흑인법에서 모든 흑인은 노예, 혹은 모든 노예는 흑인이라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물론, 흑인이 노예라는 노예에 대한 인종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흑인법의 2조와 7조는 구체적으로 노예를 구매물(achat), 매매 흑인(marché des nègres)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흑인법이라는 이름은 다른 왕령들을 부르는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다. 1685년 왕령이 아닌 마스카렌 제도(iles Mascareignes)에서 공표된 ‘1723년 12월 왕령’ 과 루이지애나(Louisiane)에 공표된 ‘1724년 3월 왕령’도 흑인법으로 불렸다. 이러한 왕령들이 흑인법이라 불린 이유는 노예제도와 피부색에 따른 사법적 차별제도를 수립하고, 인종간 결혼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칙령들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흑인법은 1685년 왕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노예제도에 대한 사법적 질서를 총괄적으로 부르는 이름이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흑인법의 원판본으로 알고 있는 1743년 출간된 흑인법은 여러 왕령의 모음집(recueil)이다. 흑인법이라는 제목 발행된 모음집은 이후에도 1742년, 1767

---

Présence Africaine, 2000), p. 192.

15) Jean-François Nirot, *Le Code Noir: idées reçues sur un texte symbolique* (Paris: Le Cavalier Bleu, 2015), pp. 23-26.

년, 1788년 계속 출간되었다. 따라서 흑인법으로 불린 여러 왕령들의 공표는 식민지가 인종적 차별에 기초한 노예제 유지를 위해 계속 흑인법을 발전시켜 나아갔다는 것과 흑인을 배제하려 지속해서 법적 기초를 정비했음을 보여준다.<sup>16)</sup> 흑인법은 한 번에 완결된 법률체계가 아니라 여러 차례 공표된 노예에 관련된 왕령의 총합이었다.

게다가 흑인법은 노예에게만 해당하는 법률이 아니었다. 6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통칭 흑인법은 노예에 대한 사법적 정의, 재판권 등을 포함하는 노예법으로만 정의할 수 없다. 먼저 가톨릭교회와 로마 교황청이 규율하는 식민지에서의 종교적 재판권(police religieuse)을 왕령으로 규정하였다. 흑인법의 최우선 목표는 식민지에서 프랑스의 영토와 자유민이건 노예이건 프랑스인에 대한 권한을 프랑스 왕이 행사한다는 데 있다. 앙리 4세가 프랑스 왕국 내 가톨릭이 아닌 위그노의 종교적 자유를 관용한 낭트 칙령은 1685년 10월 루이 14세가 폰텐블로 칙령(édit de Fontainebleau)을 공표함으로써 폐지됐다. 흑인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왕국 내 종교적 단일성을 확보하고, 해외 식민지가 프랑스 왕국의 일부이며 국왕의 주권 지배하는 땅임을 천명하는 왕령이었다.

흑인법의 1조는 1615년 4월 23일 유대인을 아메리카의 섬에서 추방하도록 한 왕령에서부터 시작됐다. 유대인은 기독교의 적(ennemis déclarés du nom chrétien)으로 선포되었고, 3개월 이내 자유민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유대인이면 식민지에서 부동산과 재산을 몰수, 추방하라고 왕령은 명시하고 있다. 중상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교적 관용을 표방하였던 콜베르가 사망한 직후인 1683년 9월 왕령으로 다시 확인하였는데 이미 왕령은 효력을 낳아 실행되고 있었다. 특히, 1683년 왕령은 1667년 예수회의 요청에 따라 바아스(Baas) 총독은 마티니크의 유대인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다시 공표된 것이었다. 한데, 실제로 당시 마티니크에 이주해온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브라질에서 망명해온 네덜란드계 개신교도들이었다. 총독은 유대교 안식일을 고수해 일요일에 노예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유대인 농장주들을 고발했다. 유대인 농장주들은 현

16) 인터넷에서 code noir를 검색하면 출간된 여러 판본의 흑인법 표지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는 Le “Code Noir” selon les éditions Saugrain(1718); Le “Code Noir” selon les éditions Libraires associés; “Code Noir” selon les éditions Prault(1742) 등이 대표적이다.



지 지방 법률을 존중해 주일에는 노동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난받았다.

흑인법은 2조는 노예에 대한 세례와 기독교인으로 교화시키는 것에 관련된 조항이다. 3조는 가톨릭 종교 활동 이외의 모든 공적 활동을 노예에게 금지했고, 4조에서 노예는 오직 가톨릭 농장주에게만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6조에서는 노예를 포함한 모든 식민지 신민들이 어떠한 조건에 놓여있던 가톨릭 축제와 주일 휴식을 준수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조항은 위그노와 관련된 6조이다. 앤틸러스 섬으로의 이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개신교도들에게 가톨릭 신앙 활동을 자신들뿐 아니라 노예라고 할지라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제하고 있다. 1638년 7월 아메리카 식민지회사의 규정에 따라 식민화 초기부터 개신교도들의 이주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콜베르의 목인으로 다수의 위그노가 식민지에 정착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흑인법은 오로지 노예를 통치하기 위한 법률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하나의 왕, 하나의 신앙, 하나의 법(un roi, une foi, une loi)이라는 프랑스 왕의 주권을 식민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법령으로서 의미가 칙령의 원칙이자 목표였다.

### 3. 흑인법을 통한 호모 사케르 만들기

2005년 ‘노예제 폐지 기념을 날’ 제정을 준비하던 위원회는 총리에게 “노예가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지위가 박탈된다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는 흑인법으로 노예의 비인간적 조건을 본질로 만들었다” 라고 보고했다.<sup>17)</sup>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흑인법이 노예를 사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결론내린 것처럼 프랑스에서 흑인법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는 노예의 인간성을 모두 박탈하고 흑인을 사물이나 동물로 전락시킨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법률을 대표한다. 이러한 흑인법에 대한 이미지는 신문, TV 등의 대중매체에서부터 개인의

---

17) France, “Mémoire de la traite nègre, de l’ esclavage et de leurs abolitions”, *Rapport du Comité pour la mémoire de l’ esclavage au Premier ministres* (2005), pp. 11, 19.

인터넷 콘텐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유포되며 재현되고 있다. 2005년 토비라 법이 제정되고 첫 노예제 폐지 기념일이 시작되는 2006년 1월 시라크 대통령은 흑인법은 노예를 의자처럼 다루었다고 확인했다.

이와 같은 흑인법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는 1987년 살라-몰랭이 출간한 『노예법 혹은 가나안의 고난』이 가장 크게 이바지했다. 그는 책에서 흑인법을 “근대가 낳은 가장 괴물 같은 법률 내용”이라 주장했고, “각각 그리고 모든 흑인법의 조항은 참을 수 없는 추잡한 언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살라-몰랭의 흑인법을 분석하면서 두 결론에 다다랐다. 첫째, 그는 흑인법을 통해 사법적인 잔학성(monstruosité juridique)을 드러내고자 했고, 둘째, 노예를 동산의 한 종류, 혹은 사물로 정의한 흑인법 44조가 보여주듯이 흑인은 피부색을 통해 비인간화되어 도구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sup>18)</sup> 살라-몰랭을 흑인법 연구의 선구자로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흑인법 내용을 17세기 역사적 상황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 기초해 이해하지는 못하고 인간주의적, 도덕적, 반역사적 결론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비록, 흑인법은 노예를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노예에 대한 기독교 세례, 결혼, 해방 같은 내용도 전체 왕령이 포함하고 있어 각 조항의 모순성, 불일치성, 비일관성 등을 보이기 때문이다.

흑인법은 노예를 지배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기독교의 선교를 정당화했던 17세기에 제정된 문서로 오늘날 같은 근대적 법률관, 인간관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윤리적, 철학적인 가치에 기반한 평가는 정치적, 문화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이주당한 흑인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는 오히려 선부른 결론이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sup>19)</sup>

17세기 프랑스 본토에서 노예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왕국의 땅에서, 기독교도의 영토에서 노예는 인정될 수 없었다.<sup>20)</sup> 1681년 콜베르는

---

18) Louis Sala-Molins, *Le Code Noir ou le calvaire de Canaan* (Paris: PUF, 1987), pp. 30-35.

1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Françoise Vergès, “Mémoires et patrimoines vivants de la traite négrière et l’ esclavage”, *In Situ: Revue des patrimoines*, 20(2013).

20) 전근대 프랑스에서 노예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밝힌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Sue Peabody, *There Are No Slaves in France: The*

노예, 노예무역에 대한 어떠한 왕령과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식민지에서의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는 완전히 새롭고, 만들어지는 중 인 법령이었다. 프랑스 왕은 왕국은 새로운 법령을 비준해 왕국의 권리를 식민지에서 만들어야만 했다. 식민지에서만 적용되는 예외적 법령을 통해 프랑스는 노예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었고, 1685년 흑인법은 식민지법의 기초와 원리를 제공했다.

흑인법에서 노예는 부동산, 사물에 불과한 재산이었지만, 동시에 인간 노예로서의 법적 인정을 받는 대상이었다. 모순적이고 정합적이지 못하지만, 사물화(chosification) 한 인간, 노예화한 인간이었다. 오늘날 근대적 인권 개념에는 이러한 지위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지만, 노예로서의 인간은 비자유민이고 노예의 신분에 놓여있지만, 인간(personne)이 아닌 존재는 아니었다. 인간을 사물과 동등하게 대할 수는 있지만, 인간이 사물이 아닌 것처럼 인간을 동물과 같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허상(fiction)에 지나지 않았다.<sup>21)</sup>

흑인법에서 노예는 인간이자 신민이 아닌 존재로서의 모순이 나타난다. 노예는 이성적인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존재이다. 흑인법 19조와 29조는 노예가 기른 동물이나 제작한 물건을 시장, 행상 등에게 판매하거나 밀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노예의 이성적 활동과 노동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조항들은 노예가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행위들로 주인에 대한 의무, 복종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데, 노예는 주인이 지배하고 있는 인간이지 동물이 아니다.<sup>22)</sup>

물론, 노예가 매매되는 주인의 사유재산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노예의 권리를 주인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왕의 칙령인 노예법의 적용을 노예주는 거부할 수 없었는데, 노예주는 이익을 위해 노예에게 경제적 활동을 장려하거나, 기술을 익히게 하는 등 노예를 잘 부릴 방법을 찾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부여된 의무였다. 노예주에게 노예를 유기

---

*Political Culture of Race and Slavery in the Ancien Regim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21) C. Meillassoux, *Anthropologie de l'esclavage* (Paris: PUF, 1986), pp. 9-10.

22) Jean-François Nirot, *Le Code Noir: idées reçues sur un texte symbolique*, p. 56.

(abandonner)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노예주는 노예에게 식량과 의복, 안식처와 보살핌을 제공해야 했다. 왕국의 법령이 정한 바대로 노예를 처벌해야 했기에 처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안정적인 플랜테이션 농장 운용을 위해 이론적으로는 노예를 보호했던 메트로폴리스의 왕령은 때때로 식민자들의 불만을 낳았다.

로마법에서도 노예는 사물(res)이었지만, 모든 인간성을 박탈하지는 않았다. 흑인법은 로마법에서 좀 더 나아가, 노예의 권리를 완전히 부정하던 노예 소유주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 노예의 영적, 종교적 생활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였다. 노예는 동물이나 사물이 아니었기에 노예의 결혼은 흑인법 9조, 10조, 13조에서 정당하게 요구될 수 있었다. 하물며, 법적 문구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노예 남성과 자유민 여성 사이의 결혼도 허용되었다. 당연히 이러한 결혼은 실제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44개 조항이 포함된 흑인법은 노예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하는 노예 소유주의 절대적 법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노예 소유주의 처벌 권한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행사하는 권리인 반면, 폭행, 절도, 도주 등에 대한 형벌은 공적인 왕령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었다. 노예 소유주의 이익과 식민지의 공적 질서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했던 것은 아니다.

흑인법이 1685년에 공포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같은 해에 루이 14세는 낭트칙령을 폐지하는 칙령을 내렸다. 앙리 4세 이래 개신교도가 보유했던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다. 반종교개혁 시기 프랑스 가톨릭의 급진화는 흑인법의 1조~5조가 잘 보여준다.<sup>23)</sup> 흑인법 1조는 유대인을 식민지에

---

23) 1조. 우리가 숭배하는 지배자이자 아버지시며 고인이 된 뒤에도 길이 영광 속에 기억되는 국왕께서 1615년 4월 23일에 내리신 칙령을 우리 섬에서 집행하고자 한다. 고로 우리의 모든 관리들에게 우리 섬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섬 밖으로 쫓아낼 것을 명령하는 바이니, 기독교의 이름으로써 적으로 선고된 자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이 공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세 달 안에 여기서 나갈 것을 명령하며, 이 기한을 넘길 시에는 즉시 신체와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2조. 우리 섬에 오는 모든 노예들은 사도전승의 로마 가톨릭교의 영세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섬에 갓 도착한 새 흑인을 구매하는 주민들은 늦어도 8일 안에 그 사실을 섬으로 통칭되는 이곳의 총독과 지방 장관들에게 신고

서 추방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며 2조에서는 노예에 대한 가톨릭 세례를 의무화하고 있다. 3조는 공공장소에서 가톨릭 이외의 모든 종교행위를 금지하고 4조는 노예 소유주의 신앙이 다를지라도 노예를 통제하는 노예 감독관(contremaître)은 가톨릭 신자여야 함을 노예 소유주에게 강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조에서는 개신교 노예 소유주의 경우 그들의 노예들에게 가톨릭 신앙 이외의 종교적 활동을 권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흑인법 1조에서 5조를 살펴보면 흑인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즉 노예는 프랑스 왕의 신민(sujet)인가? 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왕령이 식민지 노예소유주와 행정관들에게 노예를 가톨릭화 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노예 역시 프랑스 왕의 신민임을 의미한다. 흑인법 내에서 노예는 교회를 통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며, 유럽계 식민자와 동등한 ‘인간’이라는 형식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왜 노예가 되었는가?, 누가 노예가 되는가? 등에 대한 언급은 범조항의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흑인법의 다른 조항(55개)들에서는 노예에게 어떠한 인간적 지위와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노예주의 동의 없이 노예는 결혼할 수 없으며(11조) “노예 간에 결혼에서 태어나는 자식들은 노예가 될 것이며, 남편 노예와 아내 노인의 주인이 다르다면 자식들은 남편 노예의 주인이 아닌 아내 노예의 주인에게 속한다” 라고(12조) 규정하고 있다.<sup>24)</sup> 노예가 무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고(15조)<sup>25)</sup> 노예소유주가 다른 노예들간의 만남을 불법으로 규정(16조)한다.<sup>26)</sup> 또한, 사적인 사탕수수 판매(18조), 노예의 사적인

---

할 것을 명령하며, 그것을 어길 시에는 임의로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또한 총독과 지방 장관들은 적정 기간 안에 그 흑인들을 교육하고 영세를 줄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지시들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24) 13조. 남편 노예가 자유인 여자와 결혼했다면 그 자식들은 남자든 여자든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며 아버지의 노예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처럼 자유인임을 인정한다. 아버지가 자유인이고 어머니가 노예라면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노예임을 인정한다.

14조. 주인들은 영세 받은 노예들을 자신들의 몫으로 예정된 묘지 내의 신성한 땅에 매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영세 받지 않고 죽은 노예들의 경우에는 죽은 장소 근처의 들판에다 밤에 매장한다.

25) 15조. 노예들은 어떠한 공격 무기도 몸에 지닐 수 없으며 큰 몽둥이 역시 갖고 다닐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태형을 가하고 무기를 압류해서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한다. 단, 주인이 사냥을 보낸 노예와 증명서나 잘 알려진 표지들을 소지한 노예는 예외다.

소유물(28조)을 금지하고 있다.

노예는 사법적 보호를 자유민과 같이 받을 수 없다. 재판에서 증언할 수도 없고(30조, 31조) 노예가 노예주를 폭행하였을 경우 노예와 노예의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사형에 처해져야 했다.<sup>27)</sup> 단순 절도의 경우에도 노예는 사형을 당할 수 있었고(35조), 밭에서 채소를 훔쳤을 경우 채찍질을 당하거나 낙인을 찍혔다(36조). 노예의 도주는 가장 무거운 형벌로 다스렸는데 도망을 시도한 노예는 처음에는 귀를 자르고, 또다시 도주를 실행한 경우 잡히면 오금을 자르고 세 번째는 사형을 당했다(38조). 식민지 노예주에게 노예의 사형은 재산의 손실을 의미했기 때문에 국가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었고, 동산(biens meubles)으로 취급당했기 때문에 노예주의 사망 시 상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교회에서 결혼한 노예가 가정을 이루었을 경우 부모와 자식의 분리 매매는 노예주에게 금지되었다(44조).

노예해방을 다루고 있는 55조에서 59조에서는 부분적으로 노예주의 의지에 따라 노예에게 자유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흑인법에서 혼혈과 노예해방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노예의 해방에 대한 흑인법의 규정들은 흑인노예에게 부여된 ‘배제적 포함’ (자유민/노예, 인간/재산)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어 준다. 흑인법에서 노예에게 언젠가 주어질 수 있는 ‘획득된 자유’ (liberté acquise)는 원칙적으로 ‘자연적 자유’ (liberté naturelle)의 수호자인 프랑스 왕에 의해 신민들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노예해방 정책은 왕국에서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 해방 노예의 경우 옛 주인에 대해 혹은 그 가족에 대한 사소한 실수라도 범했을 경우, 즉시 다시 노예로 전락할 수 있었고(58조) 직업과 의복, 가족생활의 자유는 제한당했다. 흑인 해방노예는 ‘흑인’ 일 뿐 결코 프랑스 왕국 내의 백인 신민들과 동등할 수 없는

---

26) 16조. 각기 다른 주인에게 속한 노예들이 결혼이나 다른 일을 핑계로 주인 중 한 사람의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밤이나 낮에 만나는 것은 금지하며, 대로나 외진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더더욱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태형이나 백합 낙인 이하의 신체적 처벌을 가한다. 또한 같은 죄를 빈번하게 범하거나 더 심각한 경우에는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것은 판사의 중재를 따른다. 우리의 모든 국민들에게 명령하는바, 비록 관리도 아니고 체포령을 소지하지 않았다 해도 위의 지시를 위반한 노예를 보면 쫓아가서 체포한 뒤에 교도소까지 데려가도록 한다.

27) 33조. 주인이나 여주인 혹은 여주인의 남편이나 그들의 자녀를 때려서 타박상을 입히거나 피를 흘리게 하는 노예는 사형에 처한다.

것이다. 피부색에 따른 사회적 신분구별은 식민지에서 백인 지배를 지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방노예에 대한 차별은 근대 생물학적 인종주의가 프랑스 식민지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톨릭교회에서 행해지는 노예에 대한 세례는 어떠한 자유도 보증하지 못했고, 왕은 위협을 무릅쓰고 세례를 위협하게 남용하지 말 것을 교회에 권고하였다. 세례는 구원에 대한 약속일뿐 자유에 대한 약속은 아니었다.

흑인법에서 가장 흥미로운 요소는 세세하게 흑인노예의 일상생활마저 규정하는 1685년 흑인법이 식민지에 적용되는 법률일 뿐, 메트로폴리스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노예제는 금지였고 자유를 약속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백인 주인을 따라 프랑스에 도착한 흑인노예는 자유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었다. 프랑스 영토는 곧 자유의 입구였다. 식민모국의 법률은 노예주가 노예(사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마치 법원에 의한 일시적인 권리박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권한을 잠정적으로 식민모국 영토 내에서 지위질(oublier)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노예소유주의 권리에 제한을 가했다. 따라서 노예소유주가 노예의 식민지에서의 출발과 식민모국에서의 입국에 대한 등록이 부재할 경우, 노예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주인의 허락을 받고 결혼한 경우, 마지막으로 노예주가 식민지로 영구히 귀환하지 않을 경우, 이상의 세 가지 경우에 노예는 자유를 획득할 수 있었다. 18세기 프랑스에 거주한 유색인 해방노예는 1000명에서 5000명 사이로 추정된다.<sup>28)</sup> 이러한 식민모국에서 자유를 회복할 기회도 1777년 유색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프랑스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간주해 모든 식민지 유색인의 식민모국 입국을 금지하는 칙령이 반포된 이후 사라졌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흑인법은 기본적으로 식민지에서 두 개의 사회적 신분구분(자유민/노예)을 법률로써 규정하면서 ‘배제’(exclusion)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노예에게 ‘법외자’의 지위를 부여하였다. 초기 흑인법이 노예에 대한 폭력적 지배방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피부색 구분에 따른 인종주의적 차별을 제도화하는 법률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1685년 흑인법에서 해방노예의 후손들(manumis)은 자유민들과 동일한 사법적 지위를 인정받았고, 인종간의 혼혈은 가능했다. 혼혈로 태어난 생명에 자유인(ingénus)의 지위가 인정된 것에서 볼 때 흑인법이 혼혈을

28) Sala-Molins, *Le Code Noir ou le calvaire de Canaan*, p. 220.

허용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사실 이는 17세기 프랑스에서 이주해온 대부분의 식민자들이 미혼 남성이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들이 아프리카계 여성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식민지 개척의 초창기 이민 2세대의 경우 혼혈로 인해 태어난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17세기 흑인법의 인종주의적 성격은 실질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흑인노예와 혼혈 자유민의 인구수가 백인 인구를 압도적으로 우세해 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인종적 구분은 강화되었다. 1724년 새로운 흑인법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혼혈을 금지하고 노예의 해방에도 더 많은 제한을 두는 법률조항들로 개정되었다.

#### 4. 노예제도와 계몽주의

1700년을 전후하여 노예무역의 규모는 그 절정에 달했다. 강제로 이주해온 아프리카인들은 사탕수수, 커피, 목화, 인디고 등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일했다. 운이 좋은 노예는 주인의 가사 노예로 일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노예는 힘든 플랜테이션 노동에 배치되었다.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노예의 경우 농장과 사탕수수 가공소(moulin)에서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백인 감독관(commandeur)의 감시와 통제를 받으며 세 그룹(성인, 여성, 아동)으로 나뉘어 가혹한 노동을 수행했다. 농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른 노예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예의 저항 역시 빈번해지자 식민지는 잔혹한 형벌과 감시를 통한 ‘공포’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하였다. 노예주와 식민지 행정부의 노예반란에 강박증은 노예에 대한 폭력적 지배방식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식민지에서의 이러한 상황과는 반대로 메트로폴리스에서는 노예무역과 교역을 통한 부의 획득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열기가 뜨거웠다. 프랑스에서 노예와 설탕의 교역항이었던 낭트(Nantes), 보르도(Bordeaux), 라로셴(La Rochelle), 썬-말로(Saint-Malo)에서는 수많은 수의 선박이 출입했다. 낭트의 유력 가문인 몽토도앵(Montaudoin)가는 1694년에서 1791년 사이에 357척의 교역선을 아프리카와 앤티리스 제도로 보냈다.<sup>29)</sup> 이러한 부의 증대는 화려함(luxe)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 교역항의 거리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사치스러운 물품이 넘쳐났다.

29) Delacampagne, *Histoire de l'esclavage*, p. 178.



급속히 증대한 사회적 부는 유럽이 근대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 시기에 등장한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새롭게 세계를 해석해 나아갔다. 몽테스키외를 비롯한 계몽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식민지의 효용과 식민지배에 대한 다양한 견해도 불구하고 노예제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0)</sup> 대다수 프랑스인에게 노예는 보이지도,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였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가진 전통적 기독교 관념에 의하면 노예일지라도 기독교도라면 자유로운 이교도에 비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 17세기 프랑스인은 이교도를 증오했고, 이단을 혐오하였으며, 자연적으로 열등한 야만인에 대해서는 공포를 쉽게 표출했다. 대다수 사람들은 흑인노예를 알지 못하는 먼 곳에서 온 ‘이방인’으로 취급하면서 이들이 가진 문화, 소속된 국가, 문명 등에 대하여 완전히 무관심했고 무시했다.

유럽인들에게 아프리카는 그리스-로마 시대 이래로 항상 무지와 환상의 대상이었다. 때로는 낙원으로 때로는 지옥으로 묘사되었다. 식민지 백인들은 성경 창세기 나오는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의 후손들은 영원히 노예(serviteur)로 봉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저주에 근거하여 흑인노예의 존재를 정당화했다.<sup>31)</sup> 성경에 노아의 후손들이 가진 피부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의 왕국 거주민들이 가나안의 후손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아프리카인은 흑인이자 저주받은 노예가 되었다. 흑인노예는 사회적으로는 사물이나 동물에 불과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의 피조물이자 세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 한편, 반종교적인 성향의 계몽주의자들은 인류다기원론에 근거하여 흑인의 노예화와 인종적 차별을 정당화했다. 박물학, 의학, 생물학, 광물학 등 신생과학에서 자연은 새로운 목록 속에서 분류되고, 식별되고, 정의되고, 이름 지워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인종에 따른 인간의 분류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식민지에서는 인구집단 전체를 가능한 한 엄격하게 계층화해야 했기에 피부색이라는 타고난 특성에 기준을 두고 새로운 인종집단들을 분류하고 이름을 개발했다.

30) Jean Meyer, *Esclaves et Négriers* (Paris: Gallimard, 1986), p. 132.

31) Sala-Molins, *Le Code Noir ou le calvaire de Canaan*, pp. 35-39.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몽테스키외(1689~1755)는 1748년 출간된 대표 저작인 『법의 정신』(L' Esprit des lois) 15권 「노예제의 법칙과 자연적 기후의 관계」(Comment les lois de l'esclavage civil ont du rapport avec la nature du climat)에서 노예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8세기 대다수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의 노예제에 대한 서술은 파편적이거나 미미하고 분석적이지 못한 것에 비하면, 몽테스키외가 많은 흔적을 남긴 것은 분명하지만, 이 글에서 그는 다른 계몽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노예제의 법적 기반인 흑인법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는다. 식민지에서 행해지고 있던 노예제에 대한 현실적 분석은 간략한 분량의 5장 ‘흑인노예에 대하여’ (De l'esclavage des nègres) 뿐이다.<sup>32)</sup> 『법의 정신』 15권은 전체적으로 중국, 아랍, 독일, 동유럽 등 세계 각국에 존재했던 노예제 일

---

32) 5조 ‘흑인노예에 대하여’ 는 다음과 같다.

Si j'avais à soutenir le droit que nous avons eu de rendre les nègres esclaves, voici ce que je dirais :

Les peuples d'Europe ayant exterminé ceux de l'Amérique, ils ont dû mettre en esclavage ceux de l'Afrique, pour s'en servir à défricher tant de terres.

Le sucre serait trop cher, si l'on ne faisait travailler la plante qui le produit par des esclaves.

Ceux dont il s'agit sont noirs depuis les pieds jusqu'à la tête; et ils ont le nez si écrasé qu'il est presque impossible de les plaindre.

On ne peut se mettre dans l'esprit que Dieu, qui est un être très sage, ait mis une âme, surtout une âme bonne, dans un corps tout noir.

Il est si naturel de penser que c'est la couleur qui constitue l'essence de l'humanité, que les peuples d'Asie, qui font des eunuques, privent toujours les noirs du rapport qu'ils ont avec nous d'une façon plus marquée.

On peut juger de la couleur de la peau par celle des cheveux, qui, chez les Egyptiens, les meilleurs philosophes du monde, étaient d'une si grande conséquence, qu'ils faisaient mourir tous les hommes roux qui leur tombaient entre les mains.

Une preuve que les nègres n'ont pas le sens commun, c'est qu'ils font plus de cas d'un collier de verre que de l'or, qui, chez des nations policées, est d'une si grande conséquence.

Il est impossible que nous supposions que ces gens-là soient des hommes; parce que, si nous les supposions des hommes, on commencerait à croire que nous ne sommes pas nous-mêmes chrétiens.

De petits esprits exagèrent trop l'injustice que l'on fait aux Africains. Car, si elle était telle qu'ils le disent, ne serait-il pas venu dans la tête des princes d'Europe, qui font entre eux tant de conventions inutiles, d'en faire une générale en faveur de la miséricorde et de la pitié ?

반의 역사에 대해 논하고 있을 뿐 노예제도 그 자체가 인간의 권리와 사회적 정의를 훼손하는 것임은 말하지 않는다. 그는 식민지 노예소유주의 폭력에 대해서는 흑인의 저항권은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적 긍휼(miséricorde)과 연민(pitié)의 의무만을 소유주에게 요구하였다. ‘만일 노예에 의해 설탕이 생산되지 않으면 설탕 가격은 비싸질 것이다’라고 서술한 점에서 몽테스키외는 식민지의 경제적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sup>33)</sup> 노예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유용하고 효율적인 도구였다. 더불어 그는 노예의 도구화를 인종주의적 담론으로 정당화한다. 피부색이 인간 본성의 본질을 구성하고 흑인노예를 인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기독교도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흑인의 피부색에 대한 기독교적 편견과 기후에 따라 인간의 본성이 다르다는 환경결정론을 동시에 이용해 인종적 구분과 차별을 합리화한 것이다. 또한, 흑인노예에 대한 남용(abus)과 위험(danger)을 다른 장에서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남용은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험은 흑인 노예의 수가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스파르타를 인용하면서 헤일로타이(Hilotas)는 자연에 반하는 질서라고 인정하면서도, 노예 반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몽테스키외에게 흑인 노예제에 대한 비판은 발견할 수 없다. 그에게 노예란 주인에게 예측된 영혼이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로 이러한 동물과 같은 개체의 숫자가 사회에 많아지는 현상을 자연에 반하는 질서이자 전제정(despotisme) 사회의 특징으로 생각하였다.<sup>34)</sup>

개인의 자유와 관용을 주장한 볼테르 역시 흑인법에 대해 무관심했다. 그는 인류다원론자인 동시에 인종주의자, 반유대주의자 이었다. 그는 백인과 흑인이 “완전히 다른 인종”이라는 사실이나 흑인은 원숭이와 결합해서 괴물 같은 존재를 낳을 수 있는 “동물”이라고 『여러 나라의 풍습과 정신에 관한 시론』(Essai sur les mœurs et l’esprit des nations)에서 쓰고 있다. 볼테르의 반종교적 성향은 교회와 유대인을 공격하는 동기가 된 한편 대자본가였던 그가 가진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망은 인종주의적 인류다원론 통해 노예제를 옹호했던 배경이 되었다.

33) Laurent Estève, *Montesquieu, Rousseau, Diderot: du genre humain au bois d'ébène: Les silences du droit naturel* (Unesco, 2002), pp. 25-27.

34) Malick W. Ghachem, “Montesquieu in the Caribbean: The Colonial Enlightenment between “Code Noir” and “Code Civil”, *Historical Reflections*, 25-2(1999), pp. 183-210.

## 5. 결론

살라-물랭의 『노예법 혹은 가나안의 고난』 이후 연구가 본격화된 흑인법은 전문역사자들에게도 많은 역사적 쟁점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공론장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노예법은 콜베르가 칙령을 작성하고 입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는 왕령이 공포되기 2년 전인 1683년 사망한 관계로 단지 흑인법을 주창한 한 인물에 불과했다. 오히려 그가 사망한 이후 아들이 오로지 식민지에서만 지역적으로 흑인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법률안 발전시킨 최종안을 작성했다. 흑인법의 제정과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아있다. 1685년에 공포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더 늦은 시기에 제정됐다는 의심이 제기될 정도로 법안의 제정과 적용 과정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또한, 1685년 최종적으로 완성된 칙령이 오늘날 알려진 흑인법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왜냐하면 여러 판본의 흑인법이 발견되고, 각 판본에 포함된 법령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시대별로도 다른 조항들이 법령을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온 흔적이 나타난다. 흑인법이 과연 노예에게만 적용되는 칙령이었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흑인법은 식민지에서 치안을 위한 경찰 활동에 관계되는 법률로 종교적인 이단을 규제하는 법적, 정치적 수단이었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역사 속에 존재한 여러 형태의 호모 사케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법과 주권의 한계를 서술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논의에서 주로 유럽사 내부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적 대상 역시 유대인 수용소를 제외하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식민통치를 위해 제정된 흑인법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속의 범외자들은 메트로폴리스의 역사 보다는 식민지에서 그 뚜렷한 흔적이 발견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절대왕정 시기 프랑스 흑인법에서 흑인노예는 오로지 법의 통제와 형벌의 부과 대상이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 재산이었다. 기독교와 인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프랑스 국왕의 신민이라는 지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아프리카 강제이주자들은 흑인과 노예라는 이중적 억압기제 속에서 끊임없이 배제되고, 포섭되는 대상이었다. 흑인법의 반인간성, 반인륜성, 반기독교성 등 인간주의적 노예제도에 대한 해석은 노예법에 대한 공분을 불러

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노예무역, 노예제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간주의적 해석은 윤리적, 철학적으로는 의미가 무거울지라도, 지배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방해한다. 흑인노예를 호모 사케르로 만든 흑인법은 근대 주권권력이 식민지에서 생물을 죽음의 권력에 종속시키고 내버려짐의 관계속에 노출 시켰다. “오랫동안 주권 권력의 특징적인 특권 중 하나는 바로 생사를 결정하는 권리였다”<sup>35)</sup>라는 푸코의 명제는 식민지 흑인노예를 대상으로 적용된 흑인법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식민지에서 흑인, 원주민은 배제/포함, 외부/내부, 비오스/조예의 경계에 놓여있는 호모 사케르였고, 식민모국의 주권은 이들을 배제적으로 포섭했다.

근대적 자유주의의 기원을 만들어낸 계몽주의자들은 인권을 위협하는 종교와 절대왕정에 대해 투쟁하면서도 식민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강제이주자들의 비극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관심했다. 결국 노예제의 발달과 계몽주의자들이 발견한 인간의 권리는 역사의 우연이라기보다는 조건이 아닐까? 식민지에서 메트로폴리스에 대항하는 백인 이주자들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자유를 옹호하는 사상을 발전시킨 원인이었다면 이러한 원인의 조건은 비인간으로 취급되었던 아프리카 강제이주자들의 희생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통해 다시 ‘인간’ 혹은 ‘주권자’란 무엇인지를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 칼리지 초빙교수, mentend@gmail.com

주제어(Key Words):

호모 사케르(Homo sacer), 흑인법(Code noir), 식민주의(Colonialism), 노예제(Slavery)

투고일: 2023.10.26. 심사일: 2023.11.20. 게재확정일: 2023.11.23.

---

35) Michel Foucault, *Histoire de la sexualité: La Volonté de savoir* (Paris: Gallimard, 1994), p. 119.

<국문초록>

흑인법(code noir)의 식민지성: 호모 사케르 만들기

문 중 현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역사 속에 존재한 여러 형태의 호모 사케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법과 주권의 한계를 서술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논의에서 주로 유럽사 내부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적 대상 역시 유대인 수용소를 제외하면 명확하게 가시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식민통치를 위해 제정된 흑인법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속의 범외자들은 메트로폴리스의 역사 보다는 식민지에서 그 뚜렷한 흔적이 발견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절대왕정 시기 프랑스 흑인법에서 흑인노예는 오로지 법의 통제와 형벌의 부과 대상이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 재산이었다. 기독교와 인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프랑스 국왕의 신민이라는 지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아프리카 강제이주자들은 흑인과 노예라는 이중적 억압기제 속에서 끊임없이 배제적 포섭의 대상이었다. 흑인법의 반인간성, 반인륜성, 반기독교성 등 인간주의적 노예제도에 대한 해석은 노예법에 대한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노예무역, 노예제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간주의적 해석은 윤리적, 철학적으로는 의미가 무거울지라도, 지배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방해한다. 흑인노예를 호모 사케르로 만든 흑인법은 근대 주권권력이 식민지에서 생물을 죽음의 권력에 종속시키고 내버려짐의 관계속에 노출 시켰다. “오랫동안 주권 권력의 특징적인 특권 중 하나는 바로 생사를 결정하는 권리였다” 라는 푸코의 명제는 식민지 흑인노예를 대상으로 적용된 흑인법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따라서 식민지에서 흑인, 원주민은 배제/포함, 외부/내부, 비오스/조예의 경계에 놓여있는 호모 사케르였고, 식민모국의 주권은 이들을 필요로 했다.

근대적 자유주의의 기원을 만들어낸 계몽주의자들은 인권을 위협하는 종교와 절대왕정에 대해 투쟁하면서도 식민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강제이주자들의 비극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관심했다. 결국 노예제의 발달과 계몽주의자들이 발견한 인간의 권리는 역사의 우연이라기보다는 조건이 아닐까? 식민지에서 메트로폴리스에 대항하는 백인 이주자들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자유를 옹호하는 사상을 발전시킨 원인이었다면 이러한 원인의 조건은 비인간으로 취급되었던 아프리카 강제이주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통해 다시 ‘인간’ 혹은 ‘주권자’란 무엇인지를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Abstract>

## The Coloniality of Code noir: Making Homo sacer

MOON Jong-Hyun

In *Homo sacer*, Agamben describes the limits of law and sovereignty within which the various forms of homo sapiens that have existed in history were bound to occur. His discussion is largely confined to European history, and the tangible objects are not clearly visible, except for the Jewish concentration camps. However, as the black laws enacted for colonial rule demonstrate, those outside of history cannot deny that they have a distinct trace in the colonies rather than in the history of the metropolis. In the French black codes of the ancien régime, black slaves were exclusively subjects of the law and the imposition of penalties, a means of providing labour, and property. Despite their status as subjects of the French king, defenders of Christianity and people's freedom, African forced migrants were constantly subject to exclusionary inclusion in a double system of oppression: blackness and slavery. Humanist interpretations of slavery, such as the anti-humanity, anti-relationship, and anti-Christianity of the Black Codes, are enough to provoke outrage against slavery. However, humanist interpretations of the history of the slave trade and slavery, while ethically and philosophically meaningful, prevent a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domination. The Black Codes, which turned black slaves into homo sapiens, exposed modern sovereign power in the colonised world to a relationship of subordination and abandonment to the power of death. "One of the characteristic prerogatives of sovereign power has long been the right to determine life and death," Foucault's proposition is nowhere more evident than in the black laws applied to colonial black slaves. Thus, in the colonies, blacks and indigenous peoples were homo sapiens on the edge of exclusion/inclusion, outside/inside, bios/zoos, and the sovereignty of the colonial motherland needed them.

The Enlightenment, which produced the origins of modern liberalism, struggled against religion and absolute monarchies that threatened human rights, while remaining largely indifferent to the tragedy of African forced migrants in the colonies. In the end, the development of slavery and the Enlightenment's discovery of human rights were conditions rather than accidents of history: if the will to freedom of white migrants in the colonies against the metropolis was the cause of the development of pro-freedom ideas, then the condition of this cause was the sacrifice of African forced migrants who were treated as non-humans. And above all, it was through them that we began to think again about what it means to be a 'human being' or a 'sovereign'.



참고문헌

1. 사료

*Code noir, ou Recueil d'édits, déclarations et arrêts concernant les esclaves nègres de l'Amérique, avec un recueil de réglemens concernant la police des isles françoises de l'Amérique et les engagés* (Paris: chez les libraires associez, 1743), online: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86086055.r=code%20noir?rk=21459;2#> (검색일: 2023년 7월 10일).

2. 단행본

마르크 페로, 고선일 역, 「노예무역과 노예제에 관하여」, 『식민주의 역사:16~21세기 말살에서 참회로』 (서울: 소나무, 2008).

염운옥, 『낙인찍힌 몸-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 된 몸의 역사』 (서울: 돌베개, 2019).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서울: 새물결, 2008).

주경철, 『대항해 시대: 해상 팽창과 근대세계의 형성』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8).

Boulle, P. H., *Race et esclavage dans la France de l' Ancien Régime* (Perrin, 2007).

Delacampagne, Christian, *Histoire de l' esclavage* (Paris: Le Livre de poche, 2002).

Foucault, Michel, *Histoire de la sexualité: La Volonté de savoir* (Paris: Gallimard, 1994).

France, “Mémoire de la traite négrière, de l' esclavage et de leurs abolitions” , *Rapport du Comité pour la mémoire de l' esclavage au Premier ministres* (2005).

Gauthier, Florence, “L' esclavage en héritage” , in Claude Liauzu ed., *Violence et colonisation* (Paris: Syllepse, 2003).

Jaubert, P. “Le Code noir et le droit romain” in *Histoire du droit social*, Mélanges J. Imbert (Paris: PUF, 1989).

Meillassoux, Claude, *Anthopologie de l' esclavage* (Paris: PUF, 1986).

- Meyer, Jean, *Esclaves et Négriers* (Paris: Gallimard, 1986).
- Nirot, Jean-François, *Le Code Noir: idées reçues sur un texte symbolique* (Paris: Le Cavalier Bleu, 2015).
- Peabody, Sue, *There Are No Slaves in France: The Political Culture of Race and Slavery in the Ancien Regim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Peytraud, Luicien, *L' Esclavage aux Antilles françaises avant 1789* (Paris: Libraire Hachette et Cie, 1897), online: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5470713x> (검색일: 2023년 10월 11일).
- Sala-Molins, Louis, *Le Code Noir ou le calvaire de Canaan* (Paris: PUF, 1987).
- Sun, Marc Cheb, ed., *L' histoire de l' esclavage et de la traite négrière: 10 nouvelles approches* (Paris: J' ai lu, 2021).
- Willans, Eric, *L' Histoire des Caraïbes, 1492-1969* (Paris: Editions Présence Africaine, 2000).

### 3. 논문

- 문중현, 「탈식민시대 프랑스의 노예제 기억과 역사 - ‘노예무역, 노예제, 노예제폐지 기념의 날’ (Journée nationale des mémoires de la traite, de l' esclavage et de leurs abolitions)을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48호(2023).
- Dubois, Laurent, “Histoires d'esclavage en France et aux États-Unis”, *Esprit*, 2(2007).
- Ghachem, Malick W., “Montesquieu in the Caribbean: The Colonial Enlightenment between “Code Noir” and “Code Civil”, *Historical Reflections*, 25-2(1999).
- Testart, Alain, “L' esclavage comme institution”, *L' Homme*, 145(1998).
- Verges, Françoise, “Mémoires et patrimoines vivants de la traite négrière et l' esclavage”, *In Situ: Revue des patrimoines*, 20(2013).

## 6세기 전반 近江毛野臣의 한반도 행적 검토\*

박민경

- I. 머리말
- II.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近江毛野臣의 도해배경
- III. 近江毛野臣의 한반도 행적 검토
  - 1. 毛野臣의 역할
  - 2. 야마토 정권의 毛野臣 파견목적과 추방
- IV. 맺음말

### I. 머리말

『일본서기』 「계체기」(이하 「계체기」로 서술) 23~24년조에는 近江毛野臣(이하 ‘毛野臣’으로 서술)이라는 倭使가 약 2년간 임나에서 행한 행적이 서술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웅천과 안라에서 회의에 참가하였고, 신라의 伊叱夫禮智와는 알력 끝에 多多羅 등 4촌의 초락을 초래하였다고 한다. 그 후에는 임나의 阿利斯等과 갈등을 빚어 귀국을 종용당하였고, 결국 아리사등이 毛野臣을 축출하기 위해 백제와 신라의 군사를 불러들이고 야마토 조정도 귀국을 명하자 귀국 도중에 對馬島에서 병사하였다고 한다.

毛野臣 사료는 「흙명기」에 나오는 출신지나 도해시점, 귀국시점 등이 불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47741).

분명한 왜계관료와 달리 도해부터 축출까지의 행적이 안라와 임나의 아리 사등과 관련되어 남아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이 사료를 통해 6세기 전반의 한반도 남부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일본서기』는 고대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번국관념 하에 편찬되어 한반도 관련 사료에 많은 윤색과 과장 및 왜곡이 행해져 있는데, 毛野臣 사료 역시 그 측면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체기』의 한반도 관련 사료가 『삼국사기』 등의 기록과 비교해 볼 때 3년의 차가 발생하는데다 毛野臣과 관련된 사료도 是月條, 是歲條 등으로 표기해 연대 및 활동시점을 정확하게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흙명기」에 보이는 이른바 ‘임나일본부’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극적 해석을 어렵게 한다.

이는 毛野臣과 관련된 한일학계의 연구성과에서도 드러나는데, 毛野臣의 存否여부 문제부터 도해시점, 목적, 활동 등의 규명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sup>1)</sup> 먼저 毛野臣의 存否여부를 보면 『일본서기』 찬자가 고대 일본의 천황주의 사관을 구체화하기 위해 假像하여 날조된 인물이라는 견해와<sup>2)</sup> 실제 한반도 남부에서 활약한 인물로 보는 견해로 대별된다. 후자도 양국학계가 상이한 의견을 보인다. 먼저 일본학계의 경우 왜의 ‘加羅經營’을 위한 파견관으로 본 후<sup>3)</sup> 이를 정치화하여 이른바 ‘임나일본부’의 시초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현재 일본학계의 견해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sup>4)</sup> 한국학계는 백제가 파견한 사신의 활동을 『일본서기』 찬자가 毛野臣의 활동으로 개변했다고 보는 입장<sup>5)</sup>과 안라와 왜국 간 정치적 교섭

- 
- 1) 나행주, 「6세기 한일관계의 연구사적 검토」, 『임나문제와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17쪽.
  - 2) 백승충, 「‘임나부흥회의’의 전개와 그 성격」, 『釜大史學』, 17(1993); 백승욱, 「‘安羅高堂會議’의 성격과 安羅國의 위상」, 『지역과 역사』, 14(2004).
  - 3)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東京: 吉川弘文館, 1956); 三品彰英, 「‘繼體紀’의 諸問題-特に 近江毛野臣의 所傳を中心として」, 『日本書紀研究』, 2(1966).
  - 4) 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東京: 吉川弘文館, 1999); 鈴木英夫,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東京: 青木書店, 1997); 大橋信彌, 『古代の地域支配と渡來人』 (東京: 吉川弘文館, 2019).
  - 5) 김현구, 『任那日本府研究』 (서울: 일조각, 1993); 서보경, 「6세기 한반도에서 활동한 倭人の 역할-近江毛野臣의 활동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임나문제와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의 결과로 도해하고 안라의 정치적 질서 하에서 행동하였다고 본 입장으로 나뉜다.<sup>6)</sup>

이상과 같이 한 인물의 행적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그 존부조차도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료가 전하는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것이다. 그럼에도 후술하듯이 毛野臣의 행적에서 毛野臣이 임나의 아리사등과 안라국주 그리고 백제와 신라와도 관계한 양상이 나타나고, 「흠명기」 2년조의 ‘中佐平 麻鹵와 城方甲背 昧奴 등을 보내 가라에 가서 임나일본부에 모여 서로 맹세를 하게 하였다’<sup>7)</sup>는 성왕의 회고 역시 毛野臣의 존재를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의 한반도에서의 활동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련된 사료에서 왜곡 및 윤색된 부분을 걸러내어 역사적 사실을 추출한다면, 6세기 전반 가야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毛野臣의 한반도에서의 행적은 임나의 아리사등과 안라, 그리고 야마토 정권 간 외교전략이 합치된 정치적 결과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sup>8)</sup> 이렇게 이해할 때 6세기 전반 백제와 신라의 군사적 압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 임나의 아리사등과 안라의 구체적 대응양상과 야마토 정권이 毛野臣 파견을 통해 얻고자 하였던 목적 등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II장에서는 안라와 임나의 아리사등과 야마토 정권 간에 毛野臣의 도해를 요청하게 된 배경과 그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를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毛野臣의 한반도 행적을 통해 그의 역할 및 목적 그리고 추방되는 과정을 통해 그의 도해가

6) 김태식, 『加耶聯盟史』(서울: 일조각, 1993);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서울: 해안, 1998); 이연심, 「近江毛野臣의 任那派遣에 대한 검토」, 『釜大史學』, 30(2006); 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 검토」, 『지역과 역사』, 47(2020).

7) 『일본서기』권19 「흠명기」2년 4월조.

8) 본고는 6세기 초 야마토(구체적으로는 아스카(飛鳥)지역)에 기반을 두고 성립된 계체신왕조에 대해 일본 최초의 세습왕권으로 평가한 이재석의 견해(이재석, 「6세기 초 繼體 新王朝의 성립과 그 의의」, 『한성사학』, 27(2012), 65-66쪽)을 받아들여 한반도 제국과 교류한 일본 열도의 주도적 세력을 야마토(大和) 정권으로 보고자 한다.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도 고찰해본다.

## II.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近江毛野臣의 도해배경

후술하는 毛野臣의 한반도 행적은 임나의 아리사등과 안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그의 도해는 임나의 아리사등과 안라 그리고 야마토 정권 간 정치적 실리가 합치된 결과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임나의 아리사등과 안라가 야마토 정권에게 毛野臣의 파견을 요청하게 된 배경과 야마토 정권이 이를 수락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백제는 475년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피살되는 등 국가적 위기에 처하자 웅진 천도를 단행하였다.<sup>9)</sup> 천도 이후 백제의 국가적 과제는 북방에서의 고구려 방어책과 남방에서의 새로운 농업생산지에 대한 확보였고,<sup>10)</sup> 무령왕대에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무령왕은 즉위 후 고구려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압박의 수위를 올리는 한편,<sup>11)</sup> 남방 지역에 대한 영역화를 추진하여 가야제국을 압박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3~4대 이전에 가야지역으로 이탈해 간 백제인들에 대한 파악은 그 신호탄이었다.<sup>12)</sup>

이어 임나의 4현을 장악한 후 기문 및 대사지역의 장악을 시도하였다. 513년에는 기문장악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가야연맹체의 수장인 반파와 협의를 추진하였는데, 그 협의의 장에는 신라와 안라 그리고 야마토 정권까지 참여시켜 공식적, 공개적인 지지를 얻고자 하였고,<sup>13)</sup> 516년 기문에서 物部連을 맞이하여 입국시킴으로서 장악을 완료하였다.<sup>14)</sup> 이 회합에서 주

9) 『삼국사기』권26 「백제본기」4 문주왕 원년 10월조.

10)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서울: 일조각, 1988), 164쪽; 연민수, 『고대한일 관계사』, 169쪽.

11) 『삼국사기』권26 「백제본기」4 무령왕 즉위년조 및 6년조, 7년조, 12년조.

12) 『일본서기』권17 「계체기」3년 2월조.

13) 『일본서기』권17 「계체기」7년 6월조.

14) 田中俊明,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東京: 吉川弘文館, 1992), 133~134쪽; 박민경, 『6~7世紀 百濟의 對倭關係 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목되는 점은 가야제국 중 안라만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안라의 참여는 정황상 백제의 기문장악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결과적으로 안라는 이 회합에서 반파의 외교능력이나 지도력 등 그 한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어 백제는 늦어도 522년에는 대사지역까지 장악하여,<sup>15)</sup> 남해안을 통한 대외 교통로의 장악뿐만 아니라 진주·함안으로 진출하는 군사 전략상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sup>16)</sup>

한편 반파 즉 가라는 백제의 기문 및 대사지역 장악을 막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여<sup>17)</sup> 가야제국 내에서의 정치적 위상에 큰 타격을 입자, ‘우륵 12곡’의 제작을 통해 ‘가라연맹’의 결속을 도모하고<sup>18)</sup> 신라와의 결당 즉 통혼을 추진하였다.

A-1. 법흥왕 9년(522) 봄 3월 가야국왕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였다.

왕이 伊滄 比助夫의 누이를 그에게 보내주었다.<sup>19)</sup>

2. 법흥왕 11년(524) 가을 9월 왕이 남쪽 국경으로 순행을 나가 지경을

(2014), 54~56쪽.

한편 사료에는 회합의 주체가 야마토 정권이요 여기에 한반도 제국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지배사관’의 전제 하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라 볼 수 없다. 이 회합의 주체는 기문지역을 영역화하려고 한 백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 검토」, 44쪽)

- 15) 백제의 대사장악 시기에 대해서는 516년설(위가야, 「백제의 己汶·帶沙 진출과정에 대한 재검토」, 『사림』, 58(2016), 198쪽), 늦어도 522년 이전설(田中俊明, 같은 책, 133~135쪽; 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 검토」, 41~43쪽), 529년설(이영식, 「百濟의 加耶進出過程」, 『韓國古代史論叢』, 7(1995), 218~219쪽) 등이 있다. 516년설의 경우 物部連을 기문에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다사진에서 기문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안전이 확보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516년에 반파는 다사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 늦어도 522년설로 보는 경우는 대사함락이 가야와 신라가 결당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통혼이 이루어지는 522년으로 본 것이다. 529년 설은 529년에 통혼이 결렬되면서 가야와 신라가 전쟁을 치루자, 방어가 허술해진 틈을 타 백제가 대사진출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16)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184쪽.

17) 『일본서기』권17 「계체기」8년 3월조.

18) 백승충, 「加羅國과 于勒十二曲」, 『釜大史學』, 19(1995), 74~78쪽.

19)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법흥왕 9년 3월조.

개척하니 가야국왕이 와서 만났다.<sup>20)</sup>

3. 계체 23년(529), …이로 말미암아 가라는 신라와 우호를 맺고 일본을 원망하였다. 가라왕은 신라의 왕녀를 맞이하여 드디어 자식을 낳았다. 신라가 처음 왕녀를 시집보낼 때 아울러 100명을 시종으로 보냈다. 이들을 받아들여 여러 현에 나누어 두고 신라의 의관을 채용하게 했다. 阿利斯等은 그들이 變服한 것에 분개하여 사자를 보내 그들을 모두 모아 돌려보냈다. 이에 신라가 크게 부끄러워하고 왕녀를 불러오고자 하여 “전에 그대의 청혼을 받아들여 내가 혼인을 허락하였으나, 이제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왕녀를 돌려보내 줄 것을 청한다.” 고 하였다. 가라의 己富利知伽가 “부부로 맺어진 것이니 어찌 다시 헤어질 수가 있는가. 또한 자식이 있는데 어찌 버리고 갈 수 있겠는가.” 라고 답하였다. 마침내 지나가는 길에 있는 刀伽·古跛·布那牟羅 3성을 함락시켰으며, 또한 북쪽 변경에 있는 5성을 빼앗았다.<sup>21)</sup>

사료 A-3에는 529년에 통혼에서 결렬이 한 해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통혼은 522년에 이루어졌고(A-1) 529년에 결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522년에 성립된 통혼이 이후 어느 시점에 아리사등이 변복을 이유로 신라의 종자를 돌려보내자,<sup>22)</sup> 529년에 3성 및 北境 5성의 함락으로 이어져 결국 통혼은 실패한 것이다. 반파의 백제의 기문 및 대사장악 저지실패 및 신라와의 통혼실패는 가야제국 내에서 가라가 지니는 위상 및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통혼의 실패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A-2의 가야국왕의 來會와 A-3의 아

20)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범흥왕 11년 9월조.

필자는 이전 논문에서 이 부분을 ‘왕이 나가 남경의 칙지를 순행하니 가야국왕이 내회하였다’로 해석하였으나, 가야왕의 來會에 주목하여 단순히 순행만을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한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 견해를 따른다(이재민, 「신라의 금관국 복속과정 연구」,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2017), 14쪽 주51).

21) 『일본서기』권17 계체기 23년 3월조.

22) 변복에 대해서는 가야 북에서 신라 북으로 변복했다는 설(武田幸男, 「新羅法興王の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東京: 龍溪書舎, 1974), 99~100쪽)과 반대로 신라 북에서 가야 북으로 변복했다는 설(末松保和, 『任那興亡史』, 232쪽; 이영식, 「대가야와 신라, 혼인동맹의 전개와 성격」, 『역사와 세계』, 44(2013) 51쪽)이 있다.



리사등의 변복에 대한 반발이다. 먼저 내회한 가야국왕을 금관국왕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sup>23)</sup> ‘南境拓地’가 신라의 영역확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내회한 가야국왕은 신라와 통혼을 맺어 가야제국 내에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했던 반파 즉 가라왕으로 생각된다.<sup>24)</sup> 가라왕 입장에서는 통혼한 신라가 ‘남경척지’라는 군사행동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가라왕의 선택지는 신라의 군사행동에 맞대응하거나 신라의 행위를 현실로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의 방식은 이미 백제와의 분쟁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가라왕은 후자 이미 상황이 종료된 신라의 영역확장을 현실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사료 B-3 己富利知伽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 기부리지가에 대해 기부리=大邑, 지가=君長의 의미로 기부리지가를 가라의 대응장으로 본 견해를 따른다면,<sup>25)</sup> 가라왕과 가라의 기부리지가는 동일인물로 생각된다. 출전을 달리했기 때문에 異表記가 나온 것이다. 기부리지가(=가라왕)는 ‘신라와 맺은 부부의 연과 자식의 존재’를 강조하며 신라와의 통혼을 포기할 의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면서 신라의 군사행동에 대해 현실적으로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가라왕의 내회는 그의 의지였다기보다 양국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 신라 측의 강요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는 가야 연맹체의 수장인 가라왕을 拓地한 곳에 입회시킴으로서 신라의 남부 지역에 대한 영역화를 가라국왕의 승인과 함께 백제를 비롯한 가야제국 간에도 공식화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23) 후보돈, 「加耶滅亡問題에 관한 一考察」, 『慶北史學』, 4(1992), 191쪽;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199~200쪽. 금관국의 신라 병합이 532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신라의 군사, 외교적인 침투공작의 결과로 보고 금관국에 대한 병합의 1단계 행동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24) 필자는 이전의 논문(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 검토」, 47쪽)에서 이때의 가야국왕을 금관국으로 파악하였으나, 대가야왕으로 수정한다. 한편 내회한 가야국왕을 반파 즉 고령의 대가야왕으로 보는 견해는 鬼頭清明(『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東京: 校倉書房, 1976), 202쪽), 김태식(『加耶聯盟史』, 187~188쪽). 위가야(「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의’」, 『역사와 현실』, 115(2020), 293쪽) 등이 있다.

25) 三品彰英, 「‘繼體紀’의 諸問題-特に近江毛野臣의 所傳を中心として」, 40쪽.

신라가 ‘남경척지’ 한 곳은 탁기탄으로 추정된다.<sup>26)</sup> 탁기탄의 위치를 영산과 밀양 일대로 보는 견해를 따른다면,<sup>27)</sup> 이 위치는 사료에서 말하는 가라와 신라의 경계이자 신라의 남경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성왕은 탁기탄 멸망에 대해 ‘가라와 신라의 경계에 있어서 여러 해 동안 공격을 받았다’<sup>28)</sup>라고 회고하고 있는데, 수차례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면 524년은 신라가 탁기탄을 공격한 시점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sup>29)</sup> 이에 아리사등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한 가라왕에게 강하게 반발하였고 마침 변복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신라의 종자를 추방하였던 것이다. 아리사등은 가라왕과 대척점에 선 인물이자 신라의 종자를 추방시킬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라왕에 버금가는 가야제국 내 유력 수장층일 가능성이 높다.<sup>30)</sup> 그의 반발은 3성 및 북경 5성의 함락을 초래하였다. 사료에서 함락의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주체에 대한 이설이 있으나,<sup>31)</sup> 문맥의 흐름으로 본다면 통훈이 결렬된 후 신라가 함락시

26) 백승충, 「가라·신라 ‘결혼동맹’의 결렬과 그 추이」, 『釜大史學』, 20(1996), 16~18쪽; 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의’」, 292~293쪽.

27) 김태식, 『加耶聯盟史』, 187~188쪽.

28) 『일본서기』권19 「흥명기」2년 하4월조.

29) 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의’」, 293쪽.

30) 아리사등 사료는 『일본서기』에 4곳 나오는데 본고와 관련된 사료는 「계체기」 23년 3월조와 23년 4월조, 24년 9월조이다. 본고는 23년 3월조에서 己能末多干岐를 아리사등으로 본 분주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능말다는 인명이며 간기가 위호임을 볼 때, 기능말다는 간기라는 위호를 가진 가야제국의 수장이다. 기능말다가 인명이라면 분주에 나오는 아리사등은 간기 즉 위호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24년 9월조에는 기능말다라는 인명 대신 아리사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능말다≠아리사등처럼 인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능말다가 야마토 정권에 신라의 침략에 대한 구조를 요청하였고 아리사등 역시 반신라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능말다=아리사등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연민수는 「敏達紀」12년조에 나오는 達率 日羅의 父인 ‘아리사등’의 예처럼 인명으로 쓰인 경우도 있어 한반도에서 위호로 사용되다가 인명으로 전화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193~194쪽).

31) 가야로 보는 견해는 山尾幸久, 「任那に關する一試論」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下(東京: 吉川弘文館, 1978), 209쪽; 平野邦雄, 「繼體・欽明紀の對外關係記事」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下, (東京: 吉川弘文館, 1978), 130쪽 등이고, 신라로 보는 견해는 三品彰英(「『繼體紀』의 諸問題-特に 近江毛野臣의 所傳

킨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다만 변복에서 3성 등의 함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신라가 침공의 구실을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변복은 어느 옷으로 바꾸던간에 쉽게 드러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라가 공략한 3성 및 북경 5성은 지역은 아마도 아리사등이 수장으로 있는 지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3장에서 후술)

한편 백제는 가라와 신라의 통혼이 이루어지자 525년에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sup>32)</sup> 그 목적은 가라와 신라가 통혼을 맺은 후에 신라가 ‘남경척지’ 한 곳에 가라왕이 직접 내회할 정도로 신라가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자 이에 대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sup>33)</sup> 529년에 신라가 3성 및 북경 5성을 장악하여 가야제국에 대한 영역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 백제는 대사지역 장악 이후 9년여 만에 군사활동을 재개하여 531년에 안라국 주변으로 진출하여 걸탁성을 축성하였다.<sup>34)</sup> 이는 안라국으로 진출하여 군사 전략상의 최전선으로 삼아 신라의 남부지역 진출에 대비하고자 한 백제의 의도였다.

아리사등은 가라와 신라의 통혼책이 파기된 후 3성 및 북경 5성 함락, 532년 금관가야 병합 등 신라의 서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자 신라의 그 다음 목표는 자신이 아수장으로 있는 지역임을 간파하였고, 그 대책을 수

---

を中心として」, 40쪽), 주보돈(「加耶滅亡問題에 관한 一考察」, 169쪽), 김태식(『加耶聯盟史』, 195쪽) 등이다.

32) 『삼국사기』권26 「백제본기」4 성왕 3년조.

33) 이 시기 백제의 사신 파견에 대해, 고구려 침공에 대비한 관계개선으로 보거나(박윤선, 『5세기 중반~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숙명여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2007), 52쪽) 신라의 군사적 원조 촉구와 신라의 가야방면 진출에 대한 경고(정운용, 「고구려·신라·가야와의 관계」, 『백제의 대외관계』,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9, (공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120쪽)로 보는 견해가 있다. 524년 신라의 ‘남경척지’를 탁기탄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이 사건의 정황파악과 신라와 양나라 간 교섭중개 과정에서 백제에 대한 불만이 쌓이자 관계의 균열을 봉합하기 위해 파견한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 제회의’」, 292~296쪽).

34) 『일본서기』권17 「계제기」25년 12월조 제주.

립하였다. 안라 역시 531년 백제가 진출해오자 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그 대비책은 백제의 513년 기문지역 장악 시 추진했던 방식인 회합을 이용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 공개적으로 안위를 보장받는 방식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군사력 측면에서 열세였던 가야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을 것이다. 이에 아리사등과 안라국은 야마토 정권에 毛野臣의 파견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한편 6세기 들어와 일본 열도에서는 야마토 지역을 기반으로 계체신왕조가 등장하였다. 계체가 등장하는 5세기 말~ 6세기 초는 고분문화가 중기에서 후기로 변화하는 분기점에 해당하는 시기이자, 구왕조의 기반이었던 河內平野에서 권력과 대규모 노동력의 집적을 상징하는 고대고분이 급속도로 그 규모를 축소하는 등 河內王朝라 칭할 수 있는 권력이 하나의 지방정권으로 쇠퇴하던 시기였다.<sup>35)</sup>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계체는 구왕조의 쇠퇴에 편승해 大和로 들어가 구왕조의 여성인 手白香皇女와 결혼해 ‘계체신왕조’를 일으켰다는 이해가 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sup>36)</sup> 그러나 「계체기」의 내용이 계체가 越前, 近江에서 성장하여 河內에서 즉위하는 과정과 천도 과정, 盤井의 난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반도 관련기사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계체신왕조가 성립되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정치적 입지가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천도과정, 河內的 樟葉宮에서 즉위하였지만 이후 筒城, 弟國을 거쳐 20년 만에 大和에 입성하여 磐余의 玉穗에 도읍을 정할 수 있었다<sup>37)</sup>는 점은 이를 방증할 것이다. 게다가 九州에서 발생한 磐井의 반란은 야마토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전하는 계체신왕조의 입지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었다.

35) 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68쪽.

36) 水野祐에 의해 계체신왕조론이 제기된 후(水野祐, 『増補 日本古代王朝論序説』(東京: 小宮山書店, 1954), 直木孝次郎, 『日本古代國家の構造』(東京: 青木書店, 1958)과 岡田精司(『繼體天皇の出自とその背景』, 『日本史研究』, 128(1972) 등이 이를 보완하였다. 한편 계체의 출자에 대한 사료를 비판 검토하여 지방호족의 성격보다는 야마토와의 관련성을 강조한 연구도 제기되고 있다(山尾幸久,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東京: 岩波書店, 1983); 平野邦雄, 『大化前代政治過程の研究』(東京: 吉川弘文館, 1985).

37) 『일본서기』권17 「계체기」원년 정월조 및 5년 10월조, 12년 3월조, 20년 9월조.

- B-1. 계체천황대에 筑紫君 石井이 천황의 명을 따르지 않고 무례함이 많았다, 이에 物部荒甲之大連과 大伴之金村連 두 사람에게 명하여 石井을 죽이게 하였다.<sup>38)</sup>
2. 계체 21년(527) 6월, 近江毛野臣은 무리 6만을 이끌고 임나에 가서 신라에게 멸망당한 남가라와 탁기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임나에 합치고자 하였다. 이때 축자의 국조 磐井이 은밀히 반역을 도모한 지 몇 년이 지났다. 신라가 이를 알고 몰래 뇌물을 磐井에게 보내어 毛野臣의 군사를 막아주기를 권유하였다.…이에 毛野臣은 방해를 받아 중도에서 머무르게 되었다.<sup>39)</sup>
3. 磐余玉穗朝(계체천황) 때에 石井의 종자인 신라해변인을 토벌한 天津水凝의 후에 上毛布直의 造<sup>40)</sup>

사료 B는 磐井의 난을 보여주는 사료군으로, B-2와 3의 신라가 磐井의 난에 개입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磐井은 수년 전부터 반란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毛野臣이 6만의 군대로 도해하여 신라에게 멸망당한 남가라와 탁기탄을 부흥시키려 하자 신라는 이를 막기 위해 磐井에게 뇌물을 주어 난을 일으키게 했고, (B-2) 風前國 上膳縣의 토착호족이었던 上毛는 石井(= 磐井)의 종자인 신라해변인을 친 공로로 伊吉 섬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것이다.<sup>41)</sup>(B-3) 신라가 주었다는 뇌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최근 ‘石井의 종자’에 대해 앞서 본 가라와 신라의 통혼 시 왕녀가 거느린 100명의 종자를 ‘침략부대’ ‘외교공작원’으로 본 견해를 참고하여 석정의 종자 역시 신라가 파견한 ‘군사적 지원부대’로 파악한 견해

38) 『고사기』 繼體天皇段 ‘此之御世 筑紫君石井 不從天皇之命而 多無禮 故物部荒甲之大連 大伴之金村連二人而 殺石井也’.

39)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21년 6월조.

40) 『國朝本紀』 권10 伊吉嶋造條 ‘磐余玉穗朝 伐石井從者新羅海邊人 天津水凝後上毛布直’

이 사료는 鎌田純一, 『先代舊事本紀の研究 : 技本の部』 (東京: 吉川弘文館, 1960)에 수록된 『國朝本紀』 권10 伊吉嶋造條의 교감을 참고하였다. 『國史大辭典』 5 (東京: 吉川弘文館, 1998)에 의하면 『先代舊事本紀』는 9세기 후반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며, 그 중 「天神本紀」(권3), 「天孫本紀」(권5), 「國朝本紀」(권10)는 오랜 사료를 바탕으로 편찬되어 사료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한다.

41) 山尾幸久, 『筑紫君磐井の戰爭』 (東京: 新日本出版社, 1999), 47쪽.

가 있다.<sup>42)</sup>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신라의 뇌물이란 바로 ‘신라해변인’으로 표현된 군사적 지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sup>43)</sup> 그렇다면 風前國의 토착호족이었던 上毛는 단순히 신라인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신라가 파견한 지원부대를 진압하였고 그 공으로 伊吉의 國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난은 1년여 만에 진압되었는데, 그의 아들인 筑紫君葛子は 부친에 연좌되어 죽는 것이 두려워 精屋 둔창을 바치고 속죄할 정도였고,<sup>44)</sup> 앞서 언급한 대로 토착호족은 신라군 진압의 공으로 國造가 될 정도로 난은 대규모적이었고, 신라 측의 개입 또한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계체신왕조가 야마토 지역에 입성하지 못하고 주변을 전전하면서도 집중한 것은 한반도 제국과의 외교관계였다. 「계체기」가 거의 한반도 관련 기사로 이루어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계체신왕조가 처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자 동시에 이를 극복하는 한 방안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특히 야마토 정권과 백제와의 관계는 선진문물 공여에 따른 야마토 정권의 군사력 제공이라는 용병관계로 규정될 정도로,<sup>45)</sup> 주로 백제와 활발한 물적, 인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지배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야마토 정권은 가야제국의 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야제국이 일찍부터 자국의 철 자원의 공급지였기 때문일 것이다.<sup>46)</sup>

한편 신라의 동향에 대해서는 야마토 정권은 백제나 가야제국을 통한 간접적인 정보 외에는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sup>47)</sup> 진압은 되었지만, ‘영

42) 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 검토」, 58~59쪽.

43) 이재석은 신라의 뇌물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편자의 작문으로 보고 있으나, ‘신라해변인’으로 묘사된 사람들은 盤井과 신라 간 유대관계의 매개체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6세기 초 筑紫國 이와이[磐井]의 난과 신라」 『新羅史學報』 25(2012), 63쪽).

44) 『일본서기』권17 「계체기」22년 12월조.

45) 金顯求,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東京: 吉川弘文館, 1985).

46) 『삼국지』 「위서」30 동이전 한전.

47) 「신라본기」에는 소지마립간 22년(500) 3월 왜와의 기사를 마지막으로 문무왕 10년인 670년까지 관계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김은숙은 이에 대해 『삼국사기』 편찬 시의 월전의 잔존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김은숙, 「6세기 후반 신라와 왜국의 국교 성립과정」, 『신라문

토통일전쟁'의 성격을 지닌 일본 고대 최대의 내전<sup>48)</sup>이라고도 평가되는 반정의 거병에 신라가 개입하였다는 것은 계체신왕조의 대외정책이 일정 부분에서는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반정 등 九州 세력이 야마토 정권과는 별개로 한반도 제국과 독자적인 외교를 추진하였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야마토 정권이 일본 열도 내에서 아직은 통일권력으로서 군림하지 못하는 지도력의 미성숙이 드러난 것이었고, 이를 통해 瀬戸内海 연안 및 九州의 제호족 간의 한반도 제국과의 독자적 외교를 제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다.<sup>49)</sup> 바로 이즈음에 임나의 아리사등과 안라가 야마토 정권에게 한반도에서 열리는 회합에 참여를 요청해왔고, 야마토 정권은 이를 수락하여 毛野臣을 파견하였다. 그렇다면 毛野臣의 도해는 아리사등과 안라에게는 자국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고, 야마토 정권으로서는 선진문물의 공여처인 한반도 남부를 둘러싼 정세, 그 중에서도 九州와 결탁하였던 신라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파생된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물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近江毛野臣의 한반도 행적 검토

#### 1. 毛野臣의 역할

毛野臣은 久斯牟羅에서 2년간 체류하였다. 그의 역할을 고찰하기에 앞서 그가 도해한 시기부터 살펴본다.

---

화제학술발표논문집』, 15(1994), 179~180쪽). 「계체기」에도 신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사는 거의 없으며, 이후 6세기 중~후반대에 들어가서야 야마토 정권이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 및 신라와도 외교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흙명기」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8) 吉田晶, 「古代國家の形成」, 『岩波講座 日本歴史』卷2, (東京: 岩波書店, 1975), 49~51쪽.

49) 大山誠一은 5세기 중국 남조와 야마토 정권 간 조공외교가 단절된 후 서일본 제호족과 한반도 제국 간 민간외교가 부상하자 야마토 정권이 이를 개입하는 과정이 임나일본부를 포함하는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다(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80~81쪽).

- C-1. 계체 21년(527) 6월, 近江毛野臣은 무리 6만을 이끌고 임나에 가서 신라에게 멸망당한 남가라와 탁기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임나에 합치고자 하였다. 이때 축자의 국조 磐井이 은밀히 반역을 도모한 지 몇년이 지났다. 신라가 이를 알고 몰래 뇌물을 磐井에게 보내어 毛野臣의 군사를 막아주기를 권유하였다.…이에 毛野臣은 방해를 받아 중도에서 머무르게 되었다.<sup>50)</sup>
2. 계체 23년 봄 3월에 … 이 달에 近江毛野臣을 안라에 사신으로 보냈다. 신라에 칙으로 南加羅와 喙己呑을 재건하도록 권하였다… (중략)<sup>51)</sup>

위 사료에 의하면 毛野臣은 계체 21년인 527년에 도해하려다가 반정의 난으로 중단되었고,(C-1) 진압 후인 529년에 도해하였다고 한다(C-2). 반정의 난 이유가 ‘남가라와 탁기탄의 재건을 위한 毛野臣의 도해’를 막고자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삼국사기』가 전하는 금관국의 멸망은 532년이기 때문에 그가 도해하려 했다는 527년과는 5년의 차가 발생한다. 반정의 난과 毛野臣의 도해에 인과관계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참고한다면,<sup>52)</sup> 527년에 도해하려했다는 것은 『일본서기』 편자의 윤색일 가능성이 높다. C-2의 529년설 역시 안라가 주최한 회의의 의제인 이른바 ‘남가라 등의 재건’을 통해 그 시점을 추정한다면 금관국이 병합된 532년 이후에야 할 것이다.<sup>53)</sup> 이러한 3년의 기년문제가 발생한 것은 계체의 사망과 관

50) 『일본서기』권17 「계체기」21년 6월조.

51) 『일본서기』권17 「계체기」23년 3월 시월조.

52) 三品彰英, 「『繼體紀』の諸問題-特に近江毛野臣の所傳を中心として」, 25~27쪽.

53) 毛野臣의 도해를 인정하는 연구자 간에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532년 이후로 도해를 파악하는 견해는 三品彰英(같은 논문, 1966, 42쪽), 大山誠一(『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52~55쪽), 이재석(『日本書紀』를 통해 본 안라국과 주변제국, 188~191쪽), 연민수(『고대한일관계사』, 197쪽), 이영식, 「6世紀 安羅國史 研究」, 『國史館論叢』, 61(1995), 103~104쪽)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529년에 도해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위가야와 이연심이다. 먼저 위가야는 모야신의 도해를 529년 4월로 상정하였다. 23년 이달(是月) 기사가 부자연스럽다고 보고 국제회의의 시점을 재정리하여 23년(529) 4월의 웅천회의가 안라회의보다 먼저 열린 것으로 파악하였다. 안라회의가 수개월 동안 진행되었다면, 바로 4월에 열렸다는 웅천회의에는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웅천회의를 안라회의 앞에 배치하여 아리사등이 주최한 웅천회의에 모야신이 중재자로 참여하였다는 것이다.(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



런된 저본(531년설과 532년설)이 최소한 두 종류 이상이었고<sup>54)</sup> 이 중 「계체기」 25년(531) 기사에 인용된 「百濟本記」의 기록에 신빙성을 두었기 때문에 남가라 멸망을 전하는 기사가 3년씩 앞당겨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sup>55)</sup> 따라서 毛野臣 관련 한반도 기사 역시 3년 내려야 하며<sup>56)</sup> 그렇다면 그의 도해는 532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毛野臣의 역할이다. 2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毛野臣의 도해는 아리사등과 안라 그리고 야마토 정권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합치된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그의 도해에는 아리사등과 안라가 기대하는 역할과 야마토 정권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각각 있었을 것이다.

D-1. 계체 23년 봄 3월에 … 이 달에 近江毛野臣을 안라에 사신으로 보냈다. 신라에 칙으로 南加羅와 喙己呑을 재건하도록 권하였다. 백제는 將軍 君尹貴·麻那甲背·麻鹵 등을 보내어 안라에 가서 조칙을 듣게 하였다. 신라는 蕃國의 관가를 깨트린 것을 두려워하여 大人을 보내지 않고, 夫智奈麻禮·奚奈麻禮 등을 안라에 보내어 조칙을 듣게 하였다. …백제의 사자 將軍 君 등은 당 아래에 있었다. 여러 달 동안 당 위에서 계책을 도모하였다. 將軍 君 등은 그 뜰에 있는 것을 분하게 여겼다.<sup>57)</sup>

2. 계체 23년 여름 4월에 … 임나왕 己能末多干岐가 내조하였다〔己能末多라 함은 阿利斯等일 것이다〕. “… 지금 신라가 원래 주어진 영토를 무시하고 빈번하게 국경을 넘어 침략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天皇에게 아뢰어 신의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알렸다.<sup>58)</sup>

---

의’」, 297~301쪽) 이연심은 남가라가 524~53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멸망했다고 보고 『일본서기』의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527년 6월에 1차로 도해를 하고자 하였으나 반정에 의해 차단되었고, 이후 1년 6개월만인 529년에 안라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연심, 「近江毛野臣의 任那派遣에 대한 검토」, 『釜大史學』, 30(2006), 16~21쪽).

54) 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 검토」, 51쪽.

55) 三品彰英, 「‘繼體紀’의 諸問題-特に近江毛野臣의 所傳を中心として-」, 15~24쪽; 김태식, 『加耶聯盟史』, 211쪽; 정효운, 「‘繼體紀’ 사료에 관한 기초적 고찰」, 『일어일문학』, 33(2007), 334쪽.

56) 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36쪽.

57) 『일본서기』권17 「계체기」23년 3월 시월조.

58) 『일본서기』권17 「계체기」23년 하4월조.

3. 계체 23년〔여름 4월〕이달(是月)에 사신을 파견하여 己能末多干岐를 보냈다. 아울러 임나에 있는 近江毛野臣에게 “보고된 바를 조사하여 서로 의심되는 바를 화해시켜라.”고 명하였다. 이에 毛野臣이 熊川에 머물면서〔어떤 책에서는 임나의 久斯牟羅에 머물렀다고 한다〕신라·백제 2국의 왕을 소집하였다. 신라왕 佐利遲는 久遲布禮〔어떤 책은 久禮爾師知于奈師磨利라고 한다〕를 보내고 백제는 은술 彌騰利를 보내 모야시이 있는 곳에 가게 하였고, 왕이 직접 오지 않았다. 毛野臣은 대노하였다.…이로 인해 신라는 다시 上臣 伊叱夫禮智干岐를 파견하여〔신라는 大臣을 上臣이라 한다.…毛野臣은 멀리서 무장을 갖춘 병사 수천 명을 보고, 웅천에서 임나의 己叱己利城으로 들어갔다.…상신이 “4촌을 약탈하고〔金官·背伐·安多·委陀의 4촌이다. 어떤 책에서는 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의 4촌을 일컫는다〕사람들을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어떤 사람은 “다다라 등 4촌이 약탈당한 것은 毛野臣의 잘못이다”라고 하였다.<sup>59)</sup>
4. 계체 24년(530) 가을 9월에 임나가 사자를 보내 “毛野臣이 久斯牟羅에 집을 짓고 머무른 지 2년인데〔어떤 책에는 3년이라 하였는데, 가고 오고 간 횟수를 합한 것이다〕정사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항상 인민을 괴롭히고, 끝내 화해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아뢰었다.…이때 阿利斯 등은 그가 사소한 것에만 집착하고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자 자주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모든 행적을 알고 등을 돌릴 생각을 가졌다.…<sup>60)</sup>
5. 계체 24년(530) 가을 10월에 調吉士가 임나에서 돌아와 “毛野臣은 사람됨이 교만하고 사나우며 정사에 익숙하지도 못합니다. 끝내 화해를 시키지도 못하고 가라를 擾亂케 하였습니다.…<sup>61)</sup>

사료 D는 毛野臣의 한반도 행적에 관한 것으로, 그는 주로 웅천 즉 구사모라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1과 4) 이로 보아 그의 도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임나의 아리사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아리사등이 신라의 종자를 돌려보내고 가라왕과 대척점에 설 정도 가야제국 내에서 유력한 수장층임을 살펴보았다. D-2에서 임나왕 기능말다간기는 아리사등이라고 분주를 달고 있는데, 이 분주를 참고한다면

59) 『일본서기』권17 「계체기」23년 (하4월조) 이달(是月)조.

60) 『일본서기』권17 「계체기」24년 9월조.

61) 『일본서기』권17 「계체기」24년 10월조.

통혼이 결렬되고 그 결과 신라의 군사적 행동까지 초래한 인물은 아리사등 즉 기능말다간기였던 것이다.

임나왕 기능말다간기 즉 아리사등은 가야제국 내 어느 곳의 수장이었을까. 541년 백제의 1차 ‘任那復建會議’ 개최 시 남가라, 탁기탄, 탁순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는데,<sup>62)</sup> 이로 보아 532년 남가라가 신라에 병합된 후 탁기탄과 탁순도 신라에 의해 순차적으로 병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안라회의의 의제가 이른바 ‘남가라 및 탁기탄의 재건’ 이라는 명분이었다면 국제회의가 열리는 시점인 532년에는 탁기탄도 병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라의 가야 3국의 병합 중 532년 안라회의 개최 당시까지 병합되지 않은 국가는 탁순이다. 즉 임나왕 기능말다간기는 탁순국의 수장일 가능성이 높다.<sup>63)</sup> 탁순은 현재 창원 일대로 비정되는데<sup>64)</sup> 毛野臣의 주된 체류지였던 구사모라 역시 지금의 창원으로 비정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탁순의 수장이었던 아리사등은 통혼을 파탄낸 이후 신라의 군사적 압박이 자국을 향해 오자 毛野臣의 도해를 추진한 것이다.

위 사료를 보면 안라회의가 먼저 개최되었고 그 회의는 수개월간 지속되었다고(D-1) 하여 4월에 열렸다고 하는 웅천회의는 동일사건에 대한 중복 기사로 파악하거나,<sup>65)</sup> 毛野臣의 활동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회의를 각색, 가필한 것으로 보아 웅천회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sup>66)</sup> 한편 기사의 시기를 해체하여 웅천회의는 아리사등이 신라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529년 4월에 개최되었고, 안라회의는 탁순에 대한 백제와 신라의 재침을 막기 위해 530년 10월 이후에 개최되었다고 보기도 한다.<sup>67)</sup>

62) 『일본서기』권19 「흠명기」2년 4월조.

63) 백승중, 「6세기 전반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백제연구』, 31(2000), 73쪽; 이영식, 「六世紀 安羅國史 研究」, 『國史館論叢』, 62(1995), 108~110쪽; 김태식, 『加耶聯盟史』, 208쪽.

64) 김태식, 같은 책, 173~186쪽.

65) 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37~38쪽.

66)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196~197쪽.

67) 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의」, 296~309쪽. 이 견해는 두 회의가 각각 열렸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탁순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웅천회의와 안라회의에 대해 『일본서기』 찬자의 윤색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열린 장소, 회의 참가자, 목적,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기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제는 기간 및 시기로, 3월에 열린 안라회의가 수개월 간 진행되었다면 4월의 웅천회의는 열릴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수개월 간 진행되었는데 백제는 뜰에 있는 것을 분하게 여겼다’ (D-1)의 의미가 실제 기간이 아니라 안라의 ‘안전보장’을 백제가 좀처럼 동의 내지 보장해주지 않자, 안라로부터 백제가 상당한 견제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본다면 수개월 간 진행되었다는 문구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532년 3월에 안라회의가 개최된 후 이어 4월에 웅천회의가 열린 것으로 보고자 한다.

먼저 D-1은 안라회의에 대한 내용이다. 가라의 백제 및 신라의 남부지역에 대한 영역화 저지 전략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자 안라는 독자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료에는 毛野臣의 역할이 천황의 칙으로 ‘남가라 및 탁기탄의 재건’을 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 가야제국을 야마토 정권이 지배했다는 8세기의 한반도 번국사관이 투영된 것으로 『일본서기』 찬자의 윤색으로 봐야 한다. 안라가 회의를 개최한 궁극적인 목적은 안라국 주변까지 진출하여 걸탁성을 축성한 백제와 탁기탄 및 금관국을 복속하고 낙동강 이서로의 진출을 공식화 한 신라를 외교력을 동원하여 한 자리에 모이게 한 후 두 강대국의 군사적 압박을 공개하여 자국의 안위를 공식적으로 보장받는 것에 있었을 것이다.<sup>68)</sup>

그리고 안라가 야마토 정권을 대표하는 毛野臣에게 요구하였던 역할은 야마토 백제가 기문지역에 대한 공개적 추인을 얻었던 513년의 회의처럼, 안라의 자국안전 보장에 대한 공개적 지지 및 지원을 요구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6세기 전반에 선진문물 공여와 군수물자 제공을 통해 형성된 백

68) 한편 백승옥은 안라의 국제회의 목적을 백제의 가야지역 잠식 의도를 견제할 새로운 배후 후원자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신라를 포함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백승옥, 「‘安羅高堂會議’의 성격과 安羅國의 위상」, 28쪽) 위가야는 ‘국제회의’의 개최목적은 탁순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 대상은 안라이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의 재침으로부터 탁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본다(위가야, 같은 논문, 310~313쪽).

제와 야마토 정권 간 친연관계를 고려한 안라 측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다만 毛野臣의 역할을 두고 백제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유추해 본다면 일단 백제는 신라가 외교 등을 담당하는 나마를 파견한 것과 달리 장군직을 파견함으로써 안라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함과 동시에 신라의 군사행동에 대한 견제 및 동향 파악이 그 목적이었을 것이다.<sup>69)</sup> 또한 야마토 정권이 기존의 친백제 정책과 별개로 안라국의 자존책을 지지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 또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는 후술하는 毛野臣의 축출과정에서 백제가 毛野臣을 내놓으라고 아리사등을 압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야마토 정권의 대외전략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毛野臣은 D-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리사등이 주최한 웅천회의에도 참가하였다. 이 회의에는 신라왕 佐利遲가 久遲布禮를 백제는 은솔 彌騰利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으나, (D-3) 신라의 경우 사자의 이름이 분주로 확인되는데 비해 백제는 파견주체가 나라로 되어 있는 등 신빙하기 어렵다.<sup>70)</sup> 따라서 이 회의에 백제는 참가하지 않았고 신라의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였던 아리사등이 毛野臣을 매개로 하여 신라와 웅천에서 회합을 주최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리사등이 회합을 연 목적은 ‘和解相疑’<sup>71)</sup> 즉, 신라와 임나 간에 서로 의심되는 바에 대한 화해였을 것이다. 여기서 ‘상의’란 탁순에 대한 신라의 군사적 진출에 대한 의심일 것이며 ‘화해’란 그로 인해 빚어진 탁순과 신라 간의 의심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毛野臣의 역할은 탁순과 신라가 서로 의심나는 부분을 화해시키는 것 즉 외교적으로 중재하는 것이었다.<sup>72)</sup> 이는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 (D-4), ‘마침내 화해를 시키지도 못했다’ (D-5)라고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 毛野臣은 ‘약속한 것’ 즉 화해를 추진하는 중재를 못했다는 비난(D-4)과 함께 귀국을 종용받았던 것이다.

69) 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 검토」, 60쪽.

70) 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의’」, 301쪽.

71) 池内宏은 ‘和解相疑’를 일본에 대한 의혹을 풀고 전처럼 가야를 일본에 속하게 하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池内宏, 『日本上代史の一研究』(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1970), 151쪽).

72) 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 검토」, 53-54쪽.

그렇다면 탁순의 아리사등은 왜 야마토 정권에게 중재 역할을 요청하였을까. 당시의 정황에서 추론한다면 가라국은 이미 백제와 신라의 군사적 행동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였고, 안라 역시 자국의 안위를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탁순의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경을 접하지 않는 야마토 정권이 중재자로서 가장 적합하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야마토 정권을 참여시킴으로써 신라에게 야마토 정권이 탁순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것을 인지시킬 수 있는 정치적 효과도 얻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탁순의 전략은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성왕의 언급대로 탁순은 상하가 분열되어 있고 왕 스스로 귀부하고자 신라에 내응했다고 하여,<sup>73)</sup> 毛野臣의 중재가 실패하자 탁순왕 스스로 항복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탁순의 毛野臣 중재를 통한 자국의 안위보전 전략은 실패한 것이다.

한편 D-4에는 신라의 상신 伊叱夫禮智干岐가 행한 다다라 등 4촌 함락이 웅천회의의 결렬로 발생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이 4촌은 남가라 즉 김해의 금관국이 멸망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74)</sup> 그렇다면 毛野臣의 웅천회의의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된다. 웅천회의의 결과에 이어 신라의 4촌 함락을 서술한 것은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고 있었으나 毛野臣의 실정 때문에 신라에게 병합되었다는 『일본서기』 찬자의 ‘임나지배’ 사관에 기초하여 윤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야마토 정권의 毛野臣 파견목적과 추방

야마토 정권의 사신인 毛野臣은 탁순의 ‘화해상의’에 대한 외교적 중재, 그리고 안라의 안위보전에 대한 공식적·공개적 지지라는 역할 수행

73) 『일본서기』권19 「흙명기」2년 4월조.

74) 김태식, 『加耶聯盟史』, 201~211쪽. 반면 위가야는 529년 신라가 금관국을 약탈하기 위해 이루어진 공격으로 보고, 이때 심대한 타격을 받은 금관국이 532년에 항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의’」, 302쪽).

과 함께 야마토 정권의 실질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러나 목적과 역할과의 사이에서 괴리가 생길 때 그 관계는 와해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1년 후인 533년에 추방으로 이어졌다. 먼저 毛野臣이 파견된 목적이다.

- E-1. ①계체 24년(530) 가을 9월, 임나가 奏上하길 “毛野臣이 久斯牟羅에 집을 짓고 머무른 지 2년[一本에는 3년이라 하는데, 왕복하는데 걸린 해수를 합친 것이다.]이 되었으나 정사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② 일본인과 임나인 사이에 자주 아이가 생겨나는 것은 소송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처음부터 판단할 도리가 없습니다. 毛野臣은 즐겨 誓湯을 두어 ‘진실한 자는 데지 않고, 거짓을 말한 자는 반드시 데일 것이다’ 라며 끓은 물 속에 던져 넣으니 죽는 자가 많습니다. ③ 또 吉備韓子那多利斯布利를 죽이고[大日本人이 蕃國女를 얻어 낳은 것을 韓子라 한다.], 항상 백성을 괴롭히고, 끝내 화해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다. ④ 이에 천황은 그 행상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불러 들었다. 그런데도 오지 않았다. … 사람을 보낸 후에 다시 스스로 생각하여 “調吉士는 조정의 사신이다. 만일 나보다 먼저 돌아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나의 죄는 반드시 무거울 것이다” 라고 했다. 곧 調吉士를 보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伊斯柵牟羅城을 지키게 하였다. ⑤ 이에 아리사등은 그가 사소한 일에만 집착하고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는 것을 알고 자주 귀국할 것을 권했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⑥ 이에 행적을 알고 등을 돌릴 마음을 품었다. 이에 久禮斯己母를 신라에 보내어 군사를 청하였고, 奴須久利를 백제에 보내어 군사를 청하였다. 毛野臣은 백제의 군사가 온다는 것을 듣고, 背評에서 마중하여 싸웠다. [배평은 지명이다. 다른 이름은 能備己富利라고 한다.] 사상자가 반이었다. 백제는 노수구리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목에 큰칼을 썬우고 신라와 함께 성을 포위하였다. 아리사등을 꾸짖어 “毛野臣을 내놓아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毛野臣이 성을 굳게 지켜 대세가 그를 생포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양국이 적당한 땅을 찾아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성을 쌓고 돌아갔다. 久禮牟羅城이다. 돌아가는 길에 騰利牟羅·布那牟羅·牟雌牟羅·阿夫羅·久知波多柵 등 5성을 빼앗았다.<sup>75)</sup>

2. 계체 24년(530) 가을 10월에 調吉士가 임나에서 돌아와 “毛野臣은 사

75) 『일본서기』권17 「계체기」24년 9월조.

람됨이 교만하고 사나우며 정사에 익숙하지도 못합니다. 마침내 화해를 시키지도 못하고 가라를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멋대로하며 환란을 막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이해, 毛野臣은 소환되어 대마도에 이르러 병들어 죽었다. 장사지낼 때는 강을 따라 近江에 왔다.…76)

E 사료는 毛野臣과 아리사등의 갈등, 아리사등의 백제와 신라에 毛野臣 축출요청, 그로 인한 백제와 신라의 군사활동, 그 결과 귀국하다가 대마도에서 사망한 것을 보여준다. 주목되는 것은 아리사등과 毛野臣 간의 갈등과 그의 축출을 위해 백제와 신라를 불러들였다는 점이다. 갈등이란 E-1 ⑤의 ‘사소한 일에만 집착하고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았다’ 는 아리사등의 비난으로 보아, 화해중재가 결국은 실패한 것을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리사등이 ‘사소한 일’ 이라고 치부한 그 사소한 일이란 무엇이었을까. 이는 毛野臣의 실질적 목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목적은 첫째 반정과 결탁한 신라의 동향 및 의도 파악이었을 것이다. 계체는 즉위한 지 20년 만에 야마토 지역인 磐余玉穗에 입성할 정도로 신왕조의 성립이 순탄하지 않았는데, 입성한 다음 해에는 신라와 결탁한 반정이 난을 일으켰다.(C-1) 이는 계체왕조뿐만 아니라 畿内세력에게도 큰 위기감이었을 것이고 계체왕조가 추진한 친백제 일변도의 외교정책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계체왕조는 한반도에서 직접 신라의 의도와 동향 및 한반도 남부의 정세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것이고 바로 이 무렵에 탁순과 안라에서 회합의 중재 및 참가를 요청해 오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둘째는 야마토 조정과 별개로 존재하고 있던 기내 호족세력의 사적인 외교교섭에 대한 통제 및 정리에 있었을 것이다.<sup>77)</sup> 이는 사료 E-1②와 ③에

76) 『일본서기』권17 「계체기」24년 10월조.

77) 이근우는 일본 열도 각지의 호족들과 연결되어 있는 왜인 혹은 왜인과 혈연적 관계가 있는 인물(韓子)을 통제, 정리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근우,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1994), 198쪽).



서 일본인과 임나인이 자식을 두고 소송을 제기할 때 誓湯을 이용하였다거나 吉備韓子那多利·斯布利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다. 서당은 盟神探湯으로 신에게 맹세한 후 손을 열탕에 넣어 테인 자를 죄인으로 파악하는 고대 神判의 일종이다.<sup>78)</sup> 실제 毛野臣이 이 방법으로 韓子를 구분했는지 알 수 없으나, 전승되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자의 존재가 많았으며 이른바 ‘서당’이라는 방법을 통해 통제 및 제거해야 할 정도로 열도 내 각 지역의 호족들이 별도의 루트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제세력과 교역, 혼인 등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sup>79)</sup> 吉備韓子那多利·斯布利 역시 吉備지역의 호족과 한반도 인과의 혼인으로 태어난 인물이라는 정보 밖에는 없으나, 毛野臣이 살해할 정도라면 이들도 吉備의 세력과 별도의 교역체계를 갖추고 선진문물 등의 교역을 담당할 세력들이 아니었을까 한다. 따라서 아리사등이 毛野臣이 ‘사소한 것에만 집착한다’는 것은 신라와의 화해를 위한 중재보다는 아마토 정권으로의 외교권 귀속을 위한 한자의 통제 및 제거, 그리고 신라를 비롯한 한반도 제국의 동향파악에 집중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毛野臣의 행적에 대해 아리사등이 크게 반발하자 외교문제로 비화될 것을 염려한 야마토 조정은 그의 소환을 결정하였다. 그러자 毛野臣은 ‘헛되이 빈손으로 돌아가면 나의 죄과는 반드시 무거울 것’ (E-1④)임을 알고 소환을 거부하고 伊斯积牟羅城에서 농성을 벌였다. ‘나의 죄과’란 결국은 아리사등이 사소한 것이라 치부해버린 毛野臣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실패를 말하는 것으로 그 스스로가 본인의 죄과 즉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毛野臣의 자진 귀국을 바랐던 아리사등은 그가 농성에 돌입하자 결국은 군사를 동원하여 그를 추방하고자 하였다. E-1⑥은 그 과정이다. 다만 그

78) 小島憲之外校注·譯, 『日本書紀』①, (東京: 小學館, 1996), 476쪽 頭註 9.

79) 大山誠一은 야마토 조정의 뜻을 받아 가야제국의 정치를 리드하고 가야제국을 규합하는 합의체의 형성을 위해 일본에 충실하고 가야의 사정에도 밝은 인물이 필요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당이라는 하나의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58쪽).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첫째 아리사등이 신라와 백제 양국에게 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했다는 점, 둘째 백제가 군대를 파견하면서도 청병사였던 노수구리를 포로로 삼고 아리사등을 압박하는 점, 셋째 23년 3월 신라가 함락시킨 3성 중의 하나인 포나모라성이 이때에도 함락된 5성의 하나로서 등장한다는 점이다. 먼저 아리사등은 가라와 신라의 통혼을 파기할 정도로 신라에 적대적이었고 이후 신라의 군사활동이 가시화되자 화해를 시도하지만 결국은 실패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그가 신라에게 군사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고, 양국이 공동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점 역시 사실로서 보기 어렵다.<sup>80)</sup> 그 이유는 6세기 들어 백제와 고구려 간 계속된 전쟁에도 불구하고 548년까지 신라의 백제 구원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특히 529년의 전투는 고구려 안장왕이 직접 병력을 거느리고 穴城의 공략 후 오곡을 공격해왔고 결국 백제는 크게 패배하였다. 백제가 불리한 상황임에도 신라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것은 5세가 말 이전의 동맹관계를 회복하지 못함을 의미할 것이다.<sup>81)</sup> 그렇다면 백제와 신라가 공동으로 함락했다는 5성과 구례모라성의 공동 축성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성왕의 회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신라가 봄에 탁순을 빼앗고 우리 구례산의 수자리를 쫓아내고 드디어 점령했다’<sup>82)</sup>고 하여, 신라의 탁순 병합 시 백제가 축성하였던 구례산 즉 구례모라성을 신라가 점령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구례모라성을 축성한 것은 백제이며, 5성의 공략도 백제로 봐야 할 것이다.<sup>83)</sup>

80) 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52-53쪽; 김태식, 『加耶聯盟史』, 214-215쪽; 서보경, 「6세기 한반도에서 활동한 倭人の 역할-近江毛野臣의 활동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195-196쪽; 박민경, 『6-7世紀 百濟의 對倭關係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2014), 73쪽.

81) 서보경, 같은 논문, 193-194쪽.

82) 『일본서기』권19 「흠명기」5년 3월조.

83) 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53-54쪽; 김태식, 『加耶聯盟史』, 214-216쪽. 김태식은 군사행동 주체는 백제였으나, 아리사등이 毛野臣을 제외시키고 탁순, 백제, 신라의 3자협정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자 신라에게 약간의 군사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서보경 역시 이 군사행동의 주체를 백제로 보고 있으나, 毛野臣의 존재에 대해서는 백제가 파견한 백제장의 안락에서의 활동을 毛野臣으로 개변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毛野臣이 백제의 군사를 맞아 싸웠다는 배벌(伐·評은 毘

그리고 백제가 노수구리를 사로잡고 아리사등에게 毛野臣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는 아리사등과 毛野臣과 한 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자,<sup>84)</sup> 毛野臣의 활동으로 대변되는 야마토 정권의 대외전략에 대해 백제가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sup>85)</sup> 즉 백제 입장에서 야마토 정권의 외교노선은 기본적으로 친백제적 관계에 기반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탁순과 안라가 자국 보전책으로서 야마토 정권을 끌어들이려 하자 야마토 정권도 이에 응하여 毛野臣을 탁순과 안라의 회합에 참여하게 하고 더 나아가 탁순의 영내에 머물러 있게 하자, 백제는 한반도 남부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야마토 정권이 더이상 개입하지 말 것과 동시에 외교노선에 대한 방향을 확고히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년 3월에 신라가 공략한 布那牟羅 등 3성과 24년 9월 백제가 공략한 5성 중에 布那牟羅城이 중복된 문제이다.<sup>86)</sup> 신라가 이

---

리라(의 의미)은 계체 23년에 신라의 이사부가 공취한 지역이기 때문에 백제는 배벌을 장악하고 있던 신라를 상대로 한 전투로 이해하고 있다(서보경, 「6세기 한반도에서 활동한 倭人の 역할-近江毛野臣의 활동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195~196쪽). 한편 위가야는 ‘신라에게 속았다’는 성왕의 회고를 통해 毛野臣을 배평에서 깨뜨리고 백제가 추격하자 신라는 이를 가야지역 진출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 백제군을 회유하여 공동 군사작전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의’」, 306~307쪽).

84) 위가야, 같은 논문, 307쪽.

85) 장인성은 아리사등과 毛野臣의 관계에 대해 아리사등이 毛野臣을 외교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인물로 파악하였다. 毛野臣이 장기 체류하면서 아리사등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의 세력확대에 집중하자 毛野臣을 배제하려고 하였으나 毛野臣이 백제에 강경대응하자 그를 축출하지 못하고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장인성, 「가야 阿利斯等の 외교와 행적」, 『백제학보』, 15(2015), 16쪽).

86) 기존의 연구에서는 계체 23년 3월의 北境 5성이 24년 9월조의 5성에 해당한다고 하여 동일 사건 내지 축약기사로 파악하기도 한다(末松保和, 『任那興亡史』, 140쪽;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下卷(東京:天山舎, 2002), 257~258쪽; 武田幸男, 「新羅法興王の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東京:龍溪書舎, 1974), 103쪽;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195쪽).

미 함락시킨 포나모라성이 백제가 공략한 성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탁순의 요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백제가 구례모라성을 축성한 후 신라가 장악하였던 포나모라성을 비롯한 주변의 요지까지도 장악한 것으로 보이며 그 지역은 창원 일대로 추정된다.<sup>87)</sup> 毛野臣의 축출을 목적으로 백제를 끌어들이던 아리사등은 오히려 백제의 축성과 5성 함락이라는 군사적 진출을 허용하고 말았으며, 탁순은 백제의 정치적 압박을 받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스스로 신라에 내응하여 결국 신라에 편입되었다.<sup>88)</sup> 그리고 毛野臣은 백제가 구례모라성을 축성한 후 철수한 후 귀국길에 對馬島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서기』 내에서 그의 행적이 부정적으로 기록된 이유를 간단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일본 고대의 선조전승이 선조의 무공을 찬미하는데 역점을 두고 그 업적도 군사적인 면을 과대하게 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sup>89)</sup> ‘다다라 등 4촌이 초락된 것은 毛野臣의 잘못이다’ (D-3) ‘정사를 게을리한다’ (E-1①) ‘항상 인민을 괴롭히고 끝내 화해하지 못한다’ (E-1③) 등등 그의 행적이 대부분 악정으로 기록된 점은 의외일 정도다. 한반도에서의 활동이 실패인 탓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毛野臣 기록만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는 『일본서기』 편자가 毛野臣의 전승을 기반으로 그의 행적을 실정·악정 등으로 개편하여 기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계기는 672년 임신의 난이었다고 생각된다.<sup>90)</sup> 近江毛野臣 이후로도 이 씨족은 이 씨족은 계체조~추고조까지 야마토 정권에서 외교와 군사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였는데, 추고 31년조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는다.<sup>91)</sup> 고대 일본 최대의 내전이라는 ‘壬申의 亂’ 을 거쳐 천무천

87) 김태식, 『加耶聯盟史』, 213~216쪽.

88) 『일본서기』권19 「흠명기」2년 4월조.

89) 井上秀雄, 『任那日本府と倭』(東京: 東出版, 1973), 89쪽.

90) 壬申의 난은 天智天皇이 그의 아들인 大友皇子에게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자 天智의 동생 大海人皇子가 吉野로 피신하였다가 천지가 사망하자 吉野에서 나와 거병하여 大友皇子를 제거하고 大海人皇子가 天武天皇이 된 일본 고대의 내전을 말한다(『일본서기』권28 「천지기」10년 정월, 10월, 11월, 12월조 및 『일본서기』권29 「천무기」원년 5월~9월조, 「천무기」2년 1월, 2월조 참조).

91) 近江毛野臣 이외에도 近江臣萬은 승준천황 2년에 東山道の 사신으로 파견

황이 즉위하여 씨족정책의 일환으로 ‘八色の姓’을 제정하였다.<sup>92)</sup> 그런데 이 八姓에 近江臣 씨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임신의 난 당시 近江朝廷을 지지하였으나 결국 이 난이 실패하자 近江臣 씨족도 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sup>93)</sup> 즉 권력에서 도태되었기 때문에 近江臣 일족의 전승이 부정적으로 개편되었던 것이며, 이는 역으로 近江毛野臣이 실제로 탁순과 안라에 왜사로 파견되었던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상으로 毛野臣의 한반도 행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毛野臣은 탁순과 안라가 부여한 역할과 야마토 정권이 기대한 목적 등에 부응하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신라와의 ‘화해상의’라는 중재 역할에 실패하였고, 또한 한자의 정리를 통한 야마토 정권으로의 외교권 귀속, 한반도 각국의 정보수집 등의 목적 역시 아리사등의 비관을 초래하여 백제의 병력까지 불러오게 되자 결국은 축출되어 실패로 끝난 것이다. 이로 볼 때 『일본서기』가 전하는 그의 활동은 ‘임나지배’를 전제로 하여 기술되었지만, 그 실상은 탁순과 안라 그리고 야마토 정권 간 정치적 실리가 합치된 결과로 도해하였고 탁순과 안라의 국가적 실리를 위해 활약하는 등 양국의 정치적 질서 하에서 행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의 활동이 탁순이나 안라의 국가적 실리와 배치될 때에는 그 관계는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 毛野臣의 역할이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탁순과 안라 그리고 야마토 정권과 정치적 합의 하에 파견되어 안라와 탁순의 정치적 질서 하에서 활약한 최초의 왜신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후 안라와 백제가 왜계관료를 기용하여 야마토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대비하려 한 점에서 외교방식의 다양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되어 蝦蛄와의 국경시찰 업무를 담당하거나(『일본서기』권21 「승준기」2년 7월조) 近江脚身臣飯蓋는 신라를 정벌하는 부장군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일본서기』권22 「추고기」31년 7월조).

92) 『일본서기』권29 「천무기」13년 10월조.

93) 大橋信彌, 『古代の地域支配と渡來人』(東京: 吉川弘文館, 2019), 27-29쪽.

#### IV. 맺음말

안라와 탁순 그리고 야마토 정권의 정치적 합의의 결과물로서 파견된 毛野臣의 한반도 행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가 파견된 배경에는 한반도 남부지역을 둘러싼 백제의 동진과 신라의 서진이라는 군사적 압박이 계기였다. 이에 안라와 탁순은 자국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해 야마토 정권에게 중재의 역할 등을 요청하였고, 야마토 정권은 이를 수락하여 毛野臣을 한반도에 파견하였다. 毛野臣의 역할은 탁순에서는 탁순과 신라 간의 화해를 위한 중재였고, 안라에서는 국제회의 개최시 공식적 공개적인 지지였다. 한편 毛野臣을 파견한 야마토의 실질적 목적은 반정의 난 당시 결탁한 신라의 동향과약과 열도 내 각 호족과 가야제국 간 별개의 루트를 통한 교역통제에 있었다. 毛野臣의 이러한 목적은 결국은 탁순의 아리사등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은 백제의 군사력까지 동원되는 과정을 거쳐 축출되었다. 약 2년간에 걸친 한반도 행적은 웅천(구사모라)회의 참가→안라의 국제회의 참가→웅천(구사모라)에서 거주하면서 한자 통제 및 정리→아리사등의 귀국 종용→거부, 백제군과의 배평 전투→추방되는 과정이었다. 탁순과 안라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고 활동하였던 毛野臣은 결국은 그 역할이 실패로 돌아가자 축출을 당하게 되지만, 이후 안라와 백제 내에서 왜계관료가 활약하는 외교방식의 다양화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강사, museo99@hanmail.net

주제어(Key Words) :

近江毛野臣(Ohuminokenanoomi), 야마토 정권(Yamato regime), 아리사등(Arishito), 탁순(Taksun), 안라(Alla)

투고일: 2023.10.17. 심사일: 2023.11.25. 게재확정일: 2023.11.27.

<국문초록>

6세기 전반 近江毛野臣의 한반도 행적 검토

박민경

近江毛野臣은 탁순과 안라의 자존을 위한 중재와 야마토 정권의 목적인 한반도 각국의 동향 파악 및 韓子の 통제 및 정리를 위해 파견된 야마토 정권의 사신이었다. 당시 탁순의 아리사등은 가라와 신라의 통혼을 파탄낸 후 신라의 군사적 압박에 직면해 있었고, 안라 역시 자국 주변으로 진출하여 걸탁성을 축조한 백제로 인해 자국의 안위를 어떻게 보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과제에 당면해 있었다. 이에 탁순은 毛野臣을 중재자로 하여 신라와 웅천회의를 개최하였고, 안라는 신라, 백제 그리고 毛野臣을 참가시켜 안라회의를 개최하였다. 야마토 정권이 탁순 등의 요구에 응한 것은 九州의 盤井세력과 결탁한 신라의 동향 및 열도 내 각 호족이 별도의 루트를 만들어 한반도 제국과 교역을 행하는 것을 통제하여 외교권을 야마토 정권으로 일원화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毛野臣의 역할 중 탁순과 신라와의 ‘화해상의’ 라는 중재는 실패로 돌아갔고, 아리사등에게 사소한 일에만 집중한다는 비판과 함께 귀국을 종용받게 되었다. 毛野臣은 귀국을 거부하고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은 아리사등이 백제의 병력까지 동원하여 그를 축출하려 하자 농성 끝에 귀국길에 올랐다가 병사하고 만다. 『일본서기』가 전하는 모야신의 행적은 ‘임나지배’를 전제로 하여 기술되었지만, 그 실상은 탁순과 안라 그리고 야마토 정권 간 정치적 실리가 합치된 결과로 도해하였고 탁순과 안라의 국가적 실리를 위해 활약하는 등 양국의 정치적 질서 하에서만 행동하였다. 毛野臣에게 부여된 역할이나 파견된 목적 등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지만 이후 안라와 백제의 외교방식의 다양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안라와 백제는 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왜계관료를 기용하여 야마토 정권과의 외교를 전개해 나가게 된 것이다.

<Abstract>

**An Examination of Ohuminokenanoomi's Life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irst Half of the Sixth Century**

Park, Min-Kyung

Ohuminokenanoomi 近江毛野臣, who appeared in the *Nihonsyoki* 日本書紀 *keitaiki* 繼體紀, stayed on the Korean Peninsula for about two years, and was an envoy of the Yamato 大和 regime to mediate the existence of Taksun 卓淳 and Alla 安羅,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control Hanza 韓子. At that time, Taksun's Arishito 阿利斯等 was facing military pressure from Silla 新羅 after breaking up the marriage between Gara 加羅 and Silla, and Alla was also facing the crisis of country due to Baekje 百濟, which advanced near the country and built Geoltak-Seong 乞毛城.

In response, Taksun held the Ungcheon Conference 熊川會議 with Silla with Kenanoomi 毛野臣 as the mediator, and Alla held Alla International Conference with Silla, Baekje, and Yamato's Kenanoomi.

The Yamato regime sent Kenanoomi to grasp the trend of Silla, that was in collusion with the forces of the Iwai 盤井 in Kyushu 九州. In addition, the other purpose of the Yamato regime was to control the heads of each state in Japan. Because they created separate routes and traded privately with the Gaya 加耶 countries.

Among Kenanoomi's roles, mediating Taksun and Silla through "reconciliation" failed, and Ashito's criticism that he focused only on trivial matters prompted him to return his country. Kenanoomi refused to return and tried to make up for his failure, but eventually, when Ashito



tried to oust him by mobilizing the troops of Baekje, he was expelled and returned his country.

His activities recorded in the *Nihonsyoki* were described on the premise of “Imna任那 domination“, but in reality, he was active for the practical interests of these two countries under the political order of Taksun and Alla. After his ouster, Alla and Baekje appointed “waegye officials倭系官僚“ to prepare for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East Asia in the 6th century amid relations with the Yamato regime.

This means that diversification of diplomatic methods has been established, and this is the significance of Kenanoomi’s activities.

## 참 고 문 헌

### 1. 사료

『三國史記』, 『日本書紀』, 『古事記』, 『先代舊事本紀』.

### 2. 역주서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서울: 일지사, 2003).

연민수 외 『역주 일본서기』 I·II·III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譯注 三國史記』 1~5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坂本太郎 外 校注, 日本古典文學大系, 『日本書紀』 上·下 (東京: 岩波書店, 1965).

小島憲之 外 校注·譯, 『日本書紀』 ①·②·③ (東京: 小學館, 1996).

### 3. 단행본

金泰植, 『加耶聯盟史』 (서울: 一潮閣, 1993).

金顯求,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85).

金鉉球, 『任那日本府研究』 (서울: 一潮閣, 1993).

남재우, 『安羅國史』 (서울: 혜안, 2003).

연민수, 『고대한일관계사』 (서울: 혜안, 1998).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東京: 吉川弘文館, 1956).

田中俊明, 『大加耶聯盟の興亡と任那』 (東京: 吉川弘文館, 1992).

大山誠一,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 (東京: 吉川弘文館, 1999).

大橋信彌, 『古代の地域支配と渡來人』 (東京: 吉川弘文館, 2019).

池内宏, 『日本上代史の一研究』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1970).

鈴木英夫,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東京: 青木書店, 1997).

井上秀雄, 『任那日本府と倭』 (東京: 東出版, 1973).

4. 논문

- 김은숙, 「6세기 후반 신라와 왜국의 국교 성립과정」, 『신라문화재 학술발표 논문집』, 15(1994).
- 나행주, 「6세기 한일관계의 연구사적 검토」, 『임나문제와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 박민경, 『6~7世紀 百濟의 對倭關係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2014).
- 박민경, 「‘안라국제회의’ 개최와 참가국의 목적검토」, 『지역과 역사』, 47(2020).
- 박윤선, 「5세기 중반~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숙명여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2007).
- 백승욱, 「안라고당회의의 성격과 안라국의 위상」, 『지역과 역사』, 14(2004).
- 백승욱, 「『日本書紀』에 보이는 阿羅斯等の 정체와 그의 외교활동」, 『한국민족문화』, 51(2014).
- 백승충, 「『任那復興會議』의 전개와 그 성격」, 『釜大史學』, 17(1993)
- 백승충, 「加羅國과 于勒十二曲」, 『釜大史學』, 19(1995).
- 백승충, 「加羅 · 新羅 ‘결혼동맹’의 결렬과 그 추이」, 『부대사학』, 20(1996).
- 백승충, 「6세기 전반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백제연구』, 31(2000).
- 백승충, 「‘阿利斯等’ 사료의 기초적 검토」, 『지역과 역사』, 43(2018).
- 서보경, 「6세기 한반도에서 활동한 倭人の 역할-近江毛野臣의 활동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임나문제와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 위가야, 「백제의 己汶·帶沙 진출과정에 대한 재검토」, 『사림』, 58(2016).
- 위가야, 「6세기 전반 한반도 남부의 정세와 ‘안라국제회의」, 『역사와 현실』, 115(2020).
- 이근우, 『『日本書紀』에 인용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1994).
- 이연심, 「近江毛野臣의 任那派遣에 대한 검토」, 『釜大史學』, 30(2006).
- 이영식,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한국고대사논총』, 7(1995).
- 이영식, 「六世紀 安羅國史 研究」, 『국사관논총』, 62(1995).
- 이영식, 「대가야와 신라, 혼인동맹의 전개와 성격」, 『역사와 세계』, 44(2013).

- 이재민, 「신라의 금관국 복속과정 연구」,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7).
- 이재석, 「6세기 야마토정권의 對韓政策」, 『임나문제와 한일관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5).
- 이재석, 「6세기 초 繼體 新王朝의 성립과 그 의의」, 『한성사학』, 27(2012).
- 이재석, 「6세기초 筑紫國 이와이(磐井)의 난과 新羅」, 『신라사학보』, 25(2012).
- 이재석, 「『日本書紀』를 통해 본 안라국과 주변제국」, 『한국민족문화』, 31(2014).
- 이형기, 「안라회의의 전개와 왜의 대응」, 『지역과 역사』, 29(2011).
- 장인성, 「가야 阿利斯等の 외교와 행적」, 『백제학보』, 15(2015).
- 정효운, 「‘繼體紀’ 사료에 관한 기초적 고찰」, 『일어일문학』, 33(2007).
- 주보돈,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 『慶北史學』, 4(1982).
- 三品彰英, 「‘繼體紀’의 諸問題-特に近江毛野臣の所傳を中心として-」, 『日本書紀研究』2, (東京: 塙書房, 1966).
- 山尾幸久, 「任那に關する一試論」,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下 (東京: 吉川弘文館, 1978).
- 山尾幸久, 『筑紫君磐井の戰爭』 (東京: 新日本出版社, 1999).
- 平野邦雄, 「六世紀, ヤマト王權の性格」,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 (東京: 學生社, 1980).
- 平野邦雄, 「繼體・欽明紀の對外關係記事」,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下 (東京: 吉川弘文館, 1978).
- 武田幸男, 「新羅法興王의 律令と衣冠制」, 『古代朝鮮と日本』 (東京: 龍溪書舍, 1974).
- 鎌田純一, 『先代舊事本紀の研究 : 校本の部』 (東京: 吉川弘文館, 1960).
- 吉田晶, 「古代國家の形成」, 『岩波講座 日本歴史』卷2 (東京: 岩波書店, 1975).

##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독일 튀빙겐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육영수

### I. 들어가며: 우연한 만남

2023년 6월 한 달을 독일 서남부에 있는 튀빙겐대학교(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한국학연구소 방문학자 신분으로 보낼 기회를 얻었다. 한국학과 사무실에서 소개해 준 게스트하우스(Gästezimmer)를 예약했는데, 현지 도착 당일에 그 집 안주인이 간호인력으로 독일로 건너온 지 50년이 된 팔순 할머니(오현주, 1942년 말띠 태생)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쁜 정원으로 둘러싸인 단독주택 3층 방을 배당받아 첫날 밤을 보내면서 문득, ‘오 여사 생애에 대한 구술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찾아왔다. 미시사, 기억문화사, 일상생활사, 트랜스 내셔널 역사학 등 내가 지난 한 세대 동안 익혔던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응용한 사례연구에 도전해 볼 기회이리라. 무엇보다도 ‘죽은 텍스트’ 보다는 ‘살아있는 사료’를 마주하는 구술사의 색다른 매력 또는 위험을 경험해보고 싶었다.<sup>1)</sup>

\* 독일 튀빙겐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방문학자로 불러준 이유재 교수와 튀빙겐 현지에서 우연히 만나 논문 작성에 도움을 준 한운석, 윤인진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한성대학교 ‘이주의 인문학’ 콜로키움에서 초고를 발표할 기회를 준 황혜성 선생님과 서툰 논문을 꼼꼼히 읽고 수정·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준 나혜심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연구조교 김연우는 독일어 자료를 번역해 주었다. 이 논문은 2023년도 독일유럽연구센터(ZeDES)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이 논문은 2023년도 중앙대학교 연구년 결과물로 제출됨.

1) 내가 읽은 구술사 참고서적은 윤택림 엮음,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서울: 아르케, 2010); 김귀옥, 『구술사 연구: 방법과 실천』(파주: 한울, 2014); 윤택림,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서울: 아르케, 2019) 등이다. 서양 전문가들이 글을 모아 엮은 첫 번째 책은 구술사

다음날, 나의 ‘밤샘 결심’을 오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전하고 그녀의 흔쾌한 동의를 얻었다. 이후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대략 총 24시간 분량으로 구술면담이 진행되었다. 숙소 1층 오 여사 정원에서의 바비큐 저녁 식사, 집 부근 보리밭 너머 숲길 산책과 야외 소풍, 막내딸·사위 집 뜰에서의 바비큐 점심 파티, 오 여사가 경영했던 튀빙겐 중심가 옛 피부-미용실 가게 자리 답사, 카레밥과 만두를 함께 만들어 먹는 저녁 식사 모꼬지, 오 여사가 담근 막걸리와 독일식 순대를 곁한 오후 새참 잠작 모임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술사를 위한 자료 채집을 함께 엮어갔다. 오 여사 배우자(Mr. G라고 부르겠다)는 가끔 잠깐씩 참석했고, 나의 아내는 일종의 읍저버로 대부분 구술사 미팅에 동참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가도록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속기록을 남겼다.

구술 채집의 기억이 휘발유처럼 날아가지 않도록 귀국 즉시 원고 쓰기에 돌입했다. 구술된 ‘1차 사료’를 바탕으로 연관된 역사적 배경과 ‘맥락적 지식’을 보태 반죽한 초고를 일단락했다. 몇 가지 부정확한 사실 확인과 공백으로 남겨진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긴 x톡 통화를 했다. 또한 추가 질문을 문서로 만들어 보낸 이메일에 오 여사가 몇 차례에 걸쳐 보낸 음성녹음 답변 파일을 참조하여 수정 원고를 갈무리했다. 별도로 오 여사의 가족 구성원(아들딸·사위 며느리·손녀 손자 등)에게 오 여사의 배우자를 중계자 삼아 “본인이 간직한 어머니/할머니와 연관된 좋았거나 나쁜 기억과, ‘한국적 뿌리(Korean Heritage)’가 본인에게 끼친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무엇인가?”를 묻는 편지를 이메일로 보냈다. 장남의 아들(장손)과 막내 따님이 마감일까지 보낸 답변도 최종 원고 완성에 귀한 자료가 되었다.

독일로 간 이주노동자에 관한 구술사 선행연구는 양적·질적으로 제법 축적되어 있다. 1960~70년대 독일파견 광부와 간호인력에 관한 기초 조사와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이 두 집단이 주도했던 사회운동이 한독관계사와 한국 현대사에 남긴 발자취에 대한 제조명 작업도 현재진행형이다.<sup>2)</sup> 그러나

---

이론과 사학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두 번째와 세 번째 책은 구술사를 실행하려는 연구자에게 좋은 책이다.

- 2) 대표적으로 도서는 양희순, 『파독: 파독간호 40년사』(슈투트가르트/독일, 2008); 나혜심, 『독일로 간 한인 간호여성』(서울: 산과글, 2012); 이유재·이선영, 『파독광부 생애사』(국사편찬위원회, 2022), 박찬경, 『독일로 간 사람들』(서울: 눈빛, 2003) 등 참조. 관련 논문은 한운석, 「‘재독 한인 여

많은 연구가 한국의 경제 발전/인력수출과 근대(민주)국가 만들기라는 거대 담론에 짜 맞춰 독일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표준화·보편화함으로써 이들의 다양한 욕망과 개인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데 일정한 한계와 약점을 보였다. 그리고 구술사를 여성사와 공공역사(Public History) 등과 접목하여 두텁게 실행함으로써 각 연구방법론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sup>3)</sup> 독일인과 ‘국제결혼’한 이주노동자의 구술생애사와 한인 1세대~3세대를 아우르는 사례연구가 절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사실<sup>4)</sup>도 이 글을 비틀거리며 끝까지 밀고 간 힘이 되었다. ‘관념이 아니라 몸으로’ 맺은 “가장 직접적이고도 농도 짙은 사건”으로 꼽히는 간호인력을 통한 한국과 독일의 관계 맺음<sup>5)</sup>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위에서 요약한 선행연구의 해석상의 편견과 약한 고리 및 공백을 고치고 메우며, 다양한 방법론을 유기적으로 횡단·연결하기 위해 본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론의 전반부에서는 식민시대에 일본에서 태어난 오현주가 해방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제주도→부산→대구→서울 등지로 유랑하면서 공장의 여성 노동자로 생존하며, 결혼과 이혼을 겪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 독일에 파견되기까지의 32년의 고된 삶을 추적한다. 후반부에서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병원에 배치되어 간호인력으로 근무하던

---

성’에서 ‘한국계 이주민 여성’으로—재독한국여성모임의 정치운동』, 『역사비평』, 120(2017) 등 참조. 2023년 7월에는 경희대학교 HK+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과 튀빙겐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독일에서의 한국 이 여성 간호 노동: 의료인문학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 3) ‘여성주의 구술사’의 가능성을 실험한 책은 이재경·윤택림·이나영 외, 『여성주의 역사쓰기—구술사 연구방법』(서울: 아르케, 2012)이 있다. 공공역사의 사학사적 기원과 그 범주 및 지향성에 대한 소개서는 마르틴 뤼케/이름가르트 쿨도르프, 정용숙 옮김, 『공공역사란 무엇인가』(서울: 푸른역사, 2020), 공공역사 개념의 한국적 수용과 현장 응용이 궁금하다면 이하나 등 지음, 『공공역사를 실천 중입니다』(서울: 푸른역사, 2023) 참조. 필자가 이 글을 마감할 즈음에 한국구술사학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한양대학교 에리카 등이 공동 주최하여 “이주, 공공역사, 구술사의 만남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2023년 11월 18일, 한성대학교)가 진행됐다.
- 4) 내가 읽은 거의 유일한 논문은 서문진희, 「독일 남성과 결혼한 파독여성의 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3(2015).
- 5) 최종고, 『한강에서 라인강까지: 한독관계사』(서울: 유로, 2005), 323쪽. 이 책 제10장에 “한독 문화교류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파독 광부와 간호인력의 이모저모를 설명한다.

오현주가 독일 남성과 재혼한 후에 튀빙겐으로 옮겨서, 주경야독으로 피부미용관리사와 헤어-드레서 자격증을 획득하여 30년 동안 개인사업에 경영했고, 은퇴 후에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변신한 사연과 그 파란만장한 과정에서 영킨 한인사회와의 관계와 사랑하며 미워했던 대가족의 역사 반세기를 스케치한다. 논문 제목에 묻어있듯이, 오현주의 생애를 우리 현대사를 폭력적으로 옥죄었던 ‘민족주의’ 라는 뒷에서 구출하여 그 격자 바깥에서 행복을 추구했던 개인으로 재발견하려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의도이다.

## II. 한국에서 보낸 서른 몇 해: 일본에 텃줄을 묻고 ‘고향’ 제주도로 건너와 부산, 대구 찍고 서울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 여사는 여러 개의 이름을 가졌다. 각기 다른 이름마다 그녀의 인생 역경과 무게가 매듭처럼 각인되어 있다. 그녀는 일본 혼슈의 북쪽 끝에 있는 아오모리에서 태어났다. 호적에 올린 첫 이름은 ‘오임자(吳林子)’이다. 오씨 성을 가진 아버지와 임씨 성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뜻으로, 일본식으로는 ‘릿코’라고 불렸다. 아버지는 16세 때에 고향 제주도에서 ‘본토’ 일본으로 이주하여 운동화 공장을 경영하던 청년 실업가였다. 어머니는 오사카에서 사업하는 아버지(오 여사의 외할아버지) 집을 방문했다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남자와 속성으로 부부관계를 맺었다. 어머니는 오 여사를 낳다가 1942년에 2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아버지는 도쿄로 옮겨 일본 여자와 재혼하여 아들(오 여사의 이복동생)을 낳고 이혼했다. 그리고 한국 여자와 다시 결혼했지만, 29세 젊은 나이에 세상과 작별했다. 낯선 일본 땅에서 줄지에 고아가 된 별거승이 ‘오임자’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1948년에 본가와 외갓집 있는 제주도로 ‘귀국’했다.

어린이 오임자는 외갓집에서 키워졌다. 외할아버지는 귀국 후 1년 만에 사망했고, 외할머니가 그녀의 보호자가 되었다. 비교적 부유했던 외할머니는 불쌍한 외손녀를 잘 돌봐 주었다. 고아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오임자는 13살 때에 초등(국민)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다. 음악 수업 장기 자랑 시간에 아버지 ‘18번’이었던 “쌍고동 울어울어 연락선은 떠난다.” 라고 시작하는 유행가<sup>6)</sup>를 불러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17살 나이에 부산 방직공장으로 일자리를 구해 떠났다. 타향에서의 홀로서기를 앞두고 불안했던 딸의 꿈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났다. “임자야, 잘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떠나는 그를 좇으며 “아버지, 나도 데려가세요!”라고 외치며 잠이 깨었다고 오 여사는 어제일 것처럼 생생히 기억했다.

청소년 때 겪은 공장노동자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오 여사는 회고했다. 기계가 직조하는 비단실이 끊어지면 달려가서 손으로 이어주는 작업을 12시간 연속으로 하고 30분의 짧은 휴식을 가지는 단순 반복 노동이었다. 화장실 다녀와서 잠시 줄 시간마저 빠듯했던 피곤한 공장살이였다. 그래도 자신의 배움이 짧았던 공장 사장님이 아침 6시에 열어주는 중학교 과정을 수료했을 만큼 오임자는 성실했다. 2년 남짓한 기간을 부산에서 보낸 후, 친구 소개로 월급을 더 준다는 대구 방직공장으로 옮겨 2교대 야간작업에 청춘을 갈아 넣었다. 그 후에는 외할머니 친구 아들의 소개로 서울 영등포 방직공장으로 옮겨 일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공순이’ 오임자는 이탈리아 신부님이 주임으로 있는 영등포 성당에서 ‘요셉과’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그러나 독일에 건너와서는 먹고사는 일에 바빠 지난 50년 동안 성당에 출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지금은 남편처럼 ‘무신앙인’이라고 오현주는 밝혔다.

여공 오임자-요셉과는 당시 기준으로는 혼기가 찬 처녀이기도 했다. 그녀는 제주도 외할머니 증매로 제주도 청년과 1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분홍 미래를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인연은 다른 방식으로 맺어졌다. 영등포 자켓집 주인아주머니가 근처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남자를 소개해 주었다. 객지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 외로웠던 오임자는 21살에 그 남자와 결혼했다. 남편의 고향인 인천 영흥도에서 죽두리 쓰고 전통혼례식을 치렀다. 이미 임신 8개월이었던 그녀는 시댁에서 첫딸을 출

---

6) 박영호 작사/김송규 작곡/장세정 노래로 1937년에 발표된 가요이다. 노래 제목의 ‘연락선’은 1905년에 시작된 관부연락선(부산↔시모노세키)이다. <눈물의 금강환>(관부연락선 배 이름)과 함께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의 심금을 울렸던 대표적인 유행가로 꼽힌다. 허부문,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초창기에서 1980년대까지」, 『호호 미그란스』, 14(2016), 112~113쪽 참조.

산하고 영등포로 돌아왔다. 시할머니가 육아와 살림살이를 돌봐 주었고, 이들 신혼부부는 각자의 직장에서 맞벌이했다. 첫째 딸은 1964년, 둘째 딸은 1966년에 각각 태어났다. 오임자는 남편의 심한 음주와 도박 등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견디지 못하고 27세인 1970년에 이혼했다. (전) 남편이 두 딸 양육권을 가져갔다.

### “나의 새 이름, 나의 다른 삶”

이혼 후 아모레 화장품 판매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오임자’는 20대 후반에 ‘오현주(吳炫周)’로 새로 태어났다.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이 많았던 ‘이혼녀’라는 주홍 글씨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향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이름난 점쟁이(명리학자)는 상처와 고생으로 얼룩졌던 ‘오 씨와 임 씨의 자식’이 ‘두루두루 세상을 골고루 밝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작명으로 기원했다. 호적제도가 엄격해서 개명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지만 다행스럽게도 제주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친척 오빠가 봐줘서 통과했다. 새로운 명찰을 단 그녀는 빛나는 미래를 설계했다. 부산 여공 시절에 공장 부설 야간 중학교 과정을 어렵게 이수했던 오현주는 경기도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 있던 <인화여자 종합고등학교(仁花女子綜合高等學校)>에서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고 1972년 2월에 졸업했다. 같은 해 4월에는 보건사회부장관 직인이 찍힌 ‘간호조무사 면허증’을 받았다. 그리고 독일에 파견할 간호조무사를 선발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오현주는 “한국에서는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어서” 독일 이주를 결심했다.

배경지식으로 덧붙인다면, ‘간호조무사’라는 지금의 공식 명칭 이전에는 ‘간호보조원’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독일파견을 위한 목적으로 처음으로 창출된 직업군이다. 상습적인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렸던 독일의 특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독일에 파견된 간호인력 때문에 정작 한국에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해결하는 묘책으로 간호조무사 제도가 마련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사설 간호학원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는 1966년부터 독일에 파견되었고, 1971년 이후에는 해외개발공사가 독점적으로 교육하여 9개월 이론 공부와 3개월 실습 과정을 수료한 9,800명에게 1971~1974년에 간호조무사 자격을 주었다.<sup>7)</sup>

7) 김학선·홍선우·최경숙, 「파독간호사 삶의 재조명」, 『한국직업건강간호학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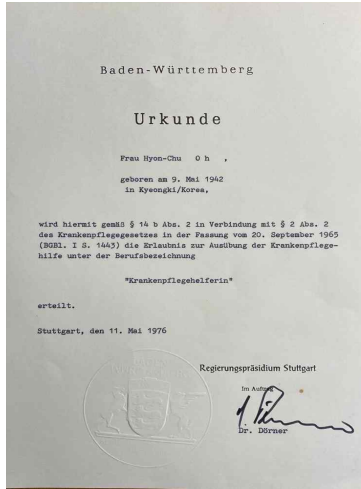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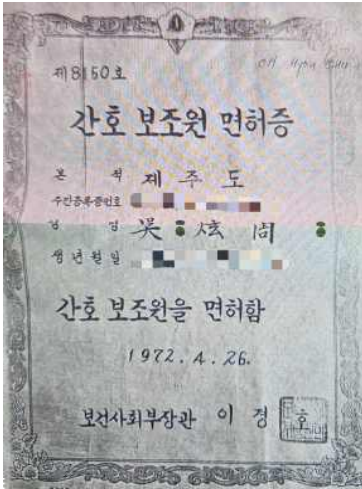


사진 자료 1): (왼쪽) 오현주가 1972년에 한국에서 취득한 간호조무사 자격증. (오른쪽) 1965년에 제정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법에 따라 오현주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증한 1976년에 발급된 공문서. 마지막 사진을 제외한 모든 이미지 자료는 오현주가 제공한 것임.

파독 간호조무사 티켓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했다, 본인의 남다른 노력과 우연한 행운 덕분에 오현주는 10대 1의 경쟁을 뚫고 파독 간호조무사 후보에 뽑혔다. 1차 선발된 이들은 당시 신촌에 있던 ‘외관’ (해외개발공사)<sup>8)</sup>에서 해외 파견 교양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최종적으로 선발되었다. 독일 체류 경험이 있던 중년 남성이 강사였는데, 그곳에서는 나이·직업·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너/당신’이라고 부르며 된다는 가르침이 새로웠다. 정규 중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그녀에게는 영어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하늘이 도왔는지 사돈 친척

회지』 18-2(2009), 181쪽. 간호조무사/간호보조원 양성제도와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해 나혜심 선생님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다.

8) 오현주가 ‘외관’으로 호명한 단체는 ‘세계 속에 한국을 심자’라는 목적으로 1965년에 창립된 <해외개발공사>이다. 이 기관은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외인력진출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75년에 <한국해외개발공사>로 계승되었고, 1991년 이후에는 외교통상부 산하 특수법인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이름을 바꿔 존속하고 있다. 윤종천, 『한국해외개발공사』,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검색일: 2023년 10월 10일).

이 시험감독관으로 들어와서 오현주가 작성한 답안지를 찢어버리고 그가 정답을 적어넣은 답안지와 바꿔치기해서 낙방 위기에서 구출해 주었다. 신체검사에서도 구세주가 나타났다. 파독 간호사 신체조건이 체중 42kg 이상이었는데, 체중미달(40kg)이었던 오현주는 은행에 다니던 친척 동생의 기발한 아이디어—동전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서 체중을 상향 조정— 덕분에 통과했다. “잘 살아야 한다!” 라는 죽은 아버지의 염원이 살아있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실현되어서 오현주에게 파독 간호조무사라는 날개를 달아 주었던 것일까.

### III. 독일에서 보낸 ‘꿈만 같았던’ 반세기

#### 1. 간호조무사: 슈투트가르트 징검다리를 딛고 튀빙겐으로

오현주는 1974년 초여름에 마침내 독일로 날아갔다. 간호인력 독일파견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1976년에 종료된 것을 상기한다면, 그 끝 물결에 간신히 올라탄 것이었다.<sup>9)</sup> 30여 명의 동료와 함께 앵커리지를 거쳐 20여 시간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독일 도착 후 오현주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다른 13여 명과 함께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바트 칸슈타트 적십자 병원(Krankenhaus vom Roten Kreuz, 현재도 있음)에 배치되었다. 독일어 교육은 한국에서 6개월과 독일 현지에서 의무적으로 3개월 동안 배웠지만, 일상 회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오현주는 사설학원에서 보충수업을 받았다. 근무 첫날인 7월 3일 아침에 병원 식당에서 독일인 직원들이 잼/버터를 바르기 위해 빵을 (가로로) 자르는 모습을 흘깃 엿본 한국 여성들은 모두 빵을 (세로로) 잘라먹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요구르트를 (두부인 줄 잘못 알고) 삶아서 환자에게 주거나, 손톱가는 치즐로 환자의 치아를 닦아(?) 주는 실수를 한 동료도 있었다고 오현주는 웃으며 회상했다. 언어불통이 빚은 ‘문화충돌’에 관한 에피소드는 다른 구술사에서도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다.

---

9) 한국 간호인력의 서독 파견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70~1974년 사이에는 연간 평균 1,384명이 바다를 건너갔다. 그 숫자가 1975년에는 459명, 1976년에는 62명으로 급감했다. 박재영, 「파독 간호사·광부의 독일 정착과 삼각이민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5(2013), 350쪽 <자료 2: 연도별·직종별 파독 현황> 참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묻자, 오현주는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간호사 업무와는 많이 다른 일을 했다.” 라고 간략하게 대답했다. 환자 식사 먹여주기에서 대소변 갈아주기 등 거의 모든 허드레 돌봄 작업이 간호조무사가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였다. 실제로 바트 칸 슈타트 적십자 병원의 수간호원은 오현주가 맡은 주요 업무를 “환자의 기초 케어와 치료 보조, 처방 투약, 식단 배급, 중증 환자의 각종 검사 및 치료실 이송 등” 이라고 명시했다.<sup>10)</sup> 독일의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간호여성(Krankenpfleger)’은 병원 입원 환자를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는 치료 보조행위는 물론, 환자 목욕시키기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마사지와 배변 활동 등 기본간호에 중점을 둔 업무를 수행했다. 엄격히 따지자면, 몇 년에 걸친 전문 교육과정을 졸업한 간호사(Krankenschwester)와 단기 속성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Krankenpflegehelfer) 두 집단을 포함한 상위개념이다.<sup>11)</sup> 파독 한국 간호인력이 ‘간호여성’이라는 두루뭉술한 이름으로 구별 없이 요양원이나 양로원 등에 많이 종사했던 배경이다.

당시 한국 간호인력은 환자와 언어소통은 서툴렀지만 상냥하고 성실하여 인기가 많았다는 사실을 오현주도 확인해 주었다. 그녀가 근무했던 병원 부서의 책임자가 작성해 준 문서(추천서와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오현주는 “책임감이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친절” 하고 “까다로운 환자를 대할 때도 그녀는 결코 인내심을 잃지 않”는다고 칭찬했다.<sup>12)</sup> ‘인내심(Geduld)’을 최고의 미덕과 직업윤리로 꼽은 두 독일 수간호원의 평가는 오현주뿐만 아니라 파독 한인 간호인력 대부분에게도 적용되리라. 일찍이 1968년에 원조 ‘국민가수’ 이미자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라고 목매어 부르짖지 않았던가.

---

10) Renate Schäfer, “ZWISCHENZEUGNIS,” (1976. 12. 28.) 참조. 이 문서는 오현주가 튀빙겐 병원으로 이직할 때 수간호원이 작성해 준 추천서이다.

11) 나혜심, 『독일로 간 한인 간호여성』, 30쪽. 나혜심은 간호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정확한 독일어 명칭과 그 미묘한 차이점을 나에게 보충 설명해 주었다.

12) Renate Schäfer, “ZWISCHENZEUGNIS,” & Schwester Luise Abel, “Arbeitszeugnis,” (1979. 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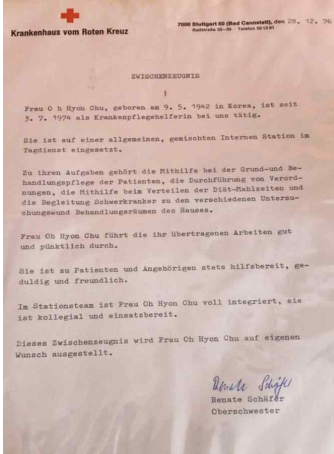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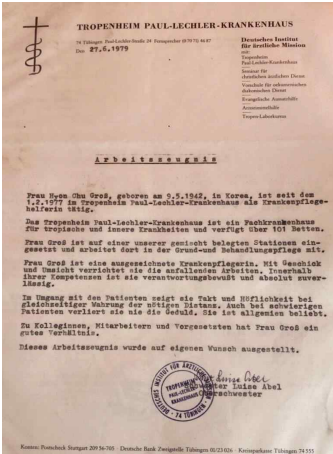


사진 자료 2): (왼쪽) 슈투트가르트 병원 독일인 수간호원이 오현주 요청으로 작성해 준 추천서 (오른쪽) 튀빙겐 병원 독일인 수간호원이 작성한 오현주의 취업 증명서.

“나는 돈벌이가 아니라 이혼의 도피처로 독일에 건너왔다.”

병원 기숙사에서 살았던 오현주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은 남편에 대한 첫인상이다. 환자들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들린 식당 부엌에서 야쿠르트를 끓이고 있는 Mr. G와 우연히 마주쳤다.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가정교육 받았던 보통 한국 남자와 다르게 부엌살림을 하는 서양 남자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갓 20세였던 그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유”로 징집 의무를 거부하고 병원에서의 1년 대체근무를 수행 중이었다. 징집거부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두 달 동안은 기본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Mr. G는 설명했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은 1949년에 제정된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도 양심에 반해 전투행위를 위한 병역을 강요받아서 안 된다.”라는 명기함으로써 “헌법에서 병역거부를 보장한 최초의 서구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1956년에 통과된 병역법 제25조 1항은 “양심의 이유로 무기를 둔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군복무를 위해 징집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인함으로써 대체복무가 제도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sup>13)</sup> “전쟁보다는 섹스!”라는 구호를 외쳤던 ‘68

13) 문수현, 「나치 이후의 ‘개인’의 자리: 서독에서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혁명 이후에는 징집 거부자들이 증가했는데, 이들 대체 복무자들은, Mr. G처럼,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진 자료 3): 슈투트가르트 병원 기숙사에서 한복차림으로 찍은 오현주와 Mr. G의 결혼 기념사진.

오현주와 Mr. G는 우연한 처음 마주침을 일어 교습을 핑계 삼아 필연적인 인연으로 만들었다. 파견 간호인력의 기본자격조건이 ‘아이가 딸리지 않은 미혼여성’<sup>14)</sup>이었기 때문에, 30세 초반의 이혼녀이며 본국에 두 명의 딸을 오현주가 떠돌갑 연하 독일 남자와 연인으로 교체하는 것은 당시 한국인인 기준으로는 ‘남사스러운 사건’이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한 사랑은 결혼 약속으로 발전했다. 슈투트가르트 병원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마친 Mr. G는 직업으로서의 간호인력이 되고자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튀빙겐에서 간호 전문교육 과정을 신청했다. 오현주는 그를 따라 1977년 초에 튀빙겐으로 이주했다. 의무 고용 기간 3년을 몇 달 못 채우고 간호조무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계약위반 범

중심으로», 『독일연구』, 45(2020), 49쪽, 57쪽.

14) 미혼 여성에게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고용주가 선호했고, 임신 여성은 모성 보호 대상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파독 간호인력은 ‘임신하지 않은 미혼여성’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나혜심, 『독일로 간 한인 간호여성』, 193~194쪽. 그러나 오현주의 증언에 따르면, 슈투트가르트 병원에 배치된 15명의 한국 간호인력 중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3명은 기혼자였다. 파독 후반기에는 미혼여성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신혼생활은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한국에 두고 온 딸 걱정으로 오현주가 시름이 잠겼기 때문이었다. 새색시의 불행했던 과거(이혼)를 알고 있던 Mr. G는 두 딸을 독일로 초청하여 입양하는 데 동의했다. 오현주는 옛 남편에게 두 딸을 먼저 독일로 데려오는데 협조한다면 나중에 그도 초청하겠다고 전략적인 거짓말을 했다. 두 딸은 각각 13세(1964년생), 11세(1966년생)인 1977년에 독일로 왔다. 도착 첫날 부부가 살림을 차렸던 공공 임대 아파트에 들어선 두 딸은 엄마가 젊은 백인 남자와 함께 산다는 사실에 놀랐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양탈을 부리는 자식에게 본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갈 수 있지만, 자신(오현주)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그동안 옛 남편과 주고받았던 편지문치를 보여주었다. 당시 오현주가 받았던 월급 1천3백 마르크 중에서 1천 마르크를 양육비로 한국에 보내주었지만<sup>16)</sup> 피 같은 그 돈이 그(아빠)의 술값으로 탕진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두 딸은 어머니와 화해하고 독일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그런데 스물이 조금 넘은 ‘입양 아버지’(Mr. G)와 ‘입양 딸’의 나이 차이가 열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 행정적으로 어려 절차를 어렵게 거쳐야만 했다. 사회복지사가 매달 집을 방문하여 두 딸이 잘 성장하는지 점검했고, 두 딸은 법정에 보호자 없이 출석하여 본인들이 자유의지에 의해 Mr. G의 가족이 되고 싶은지 등을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리고 한국 일간지에도 두 딸의 입양 수속을 공지하고,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거의 2년이 지나서야 두 딸은 공식적으로 한국 이름을 버리고 서양식으로 바뀌며 아버지의 성을 얻었다. 지금은 환갑에 가까운 나이가 된 두 딸이 단 한 번도 “괜히 먼 독일로 데려와서 고생시켰다.”라고 원망하지 않아서 정말 고맙다고 오현주는 덧붙였다.

네 명의 가족이 겪은 튀빙겐에서의 초창기는 힘들었다. 인종적인 차별과 따돌림이 특히 아팠다. 지리적으로 독일 서남부 꼬트머리에 있는 튀빙겐

---

16) 한 파독 간호사의 구술에 따르면, 1973년에 745마르크(DM, 한화 145,000원)를 월급으로 받았는데 한국 평균 월급(1만 5천)의 10배 이상의 금액이었다. 파독 간호인력의 월급은 나이(경력)가 많을수록 더 많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력서를 조작하여 나이를 상향 조정한 동료도 있었다고 오현주는 증언했다. 그녀가 당시 받았던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에 자녀수당 등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은 1970년대 후반~1980년대에는 동양인이 매우 적었던 소도시였다. 오현주 가족이 지나가면 발일하던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신기한 동물’을 구경하는 듯한 시선을 쏘았다. ‘슬리츠아우겐(Schlitzauge)’ — ‘옆으로 길게 찢힌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동양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모멸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튀빙겐<sup>17)</sup>에 살기 싫다고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지만, 자신의 간호교육 수련이 끝날 때까지 참아달라고 Mr. G는 애원했다. 인종적인 불관용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Mr. G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가 어릴 때 놀러 나갔다가 “짱짱쫑”(중국어?)이라고 손가락질당해 얼굴을 붉히며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동양 여자와 결혼해서 불편했던 경험이 없었는가?”라고 내가 Mr. G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가난한 동양 여자를 돈으로 사 와서 아내로 삼았는가?”라는 놀림을 당했었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했다”라고 그는 (요즘 유행어로) ‘쿨하게’ 대답했다. 오현주는 멋지고 부자인 독일 남자와 결혼했던 동료들이 남편과 시댁 식구로부터 ‘김치’라고 따돌림당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맛장구 아닌 맛장구를 쳤다.

## 2. 손님 노동자에서 이주·정착 개인 사업가로

### 1) 간호조무사에서 피부미용관리사로

튀빙겐에서 남편이 간호 수련을 마무리하는 동안, 오현주는 간호조무사 근무를 1981년 봄까지 계속했다. 독일 환자들로부터 “당신의 손은 비단(Seide)처럼 부드럽고 도자기(Porzellan)처럼 매끄럽다.” —오 여사는 갑자기 독일어로 그때 그 장면을 묘사했다—라는 칭찬을 자주 들었다. 피부미용 관리사로 일하면 손님이 많겠다는 오지랄 넓은 제안에 오현주는 솔깃했다. 환자 곁을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간호조무사와는 다르게 피부미용 관리사는 고객이 얼굴 팩을 하는 짬을 내서 아이들을 잠깐 돌볼 수 있다는 점도 직업을 바꾸는데 고려 사항이 되었다고 오현주는 설명했다.

---

17) 독일의 다른 (소)도시와 비교하여 튀빙겐의 인종차별 지수/인종주의적 배타성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히틀러유겐트 지부가 1934년에 튀빙겐 네 카어강 기슭 유스호스텔 자리에 세워졌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부역자/협력자가 튀빙겐 시장으로 뿔뿔히 20년 넘게 일했을 정도로 나치 시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곳임을 부정할 수 없다. 시민단체는 2016년에 ‘튀빙겐 국가사회주의 역사의 길’을 만들어 나치 협력을 반성하는 역사 기념물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형열,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독일 튀빙겐에서 만난 안내판」, 『역사연구』, 42(2021) 참조.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오현주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앞뒤 따지지 않고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MR. G와의 사이에 첫 아이(아들)를 잉태 중이었던 오현주는 6개월 임신 휴가를 이용하여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에 도전했다. 쌈짓돈을 털어서 슈투트가르트 피부미용학원 6개월(1981년 6월~12월) 과정에 등록했다. 기다리던 첫아들이 1981년 2월에 태어났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에 쫓겨서 둘째 딸이 초등학교를 휴학하고 갓 태어난 남동생을 돌보도록 임시조처했다. 부부가 살고 있는 집 지하실 벽에 전시해 놓은 1982년 12월 31일에 발행된 자격증(Diplom: Akademie Für Kosmetik)에는 Hyon-Chu G.라는 이름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다. 막내인 딸이 오빠와 한 살 터울로 1982년에 출생했다는 가족 연대기에서 되짚어 보면, 임신·육아·취업 공부·개업 준비 등을 쉽 없이 오가는 바쁘고 피곤한 나날이 40대에 들어선 오현주의 일상이었다. Mr. G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빨리 태어나면 두 사람의 ‘축복받지 못했던’ 부부관계가 더 안정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오 여사는 털어놓았다.



사진 자료 5): 오현주가 1981년 12월에 발급받은  
화장-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

피부 관리사 자격증을 딴 이듬해에 오현주는 개인사업자로 변신했다. 임시방편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의 방 1개를 고객 공간으로 꾸며 임시로 개업했다. 1983년에는 저금 800마르크와 은행 용자를 종갓돈 삼아 튀빙겐 시내 중심가에 52평 크기의 가게를 열었다. 처음에는 사업이 어려워서 용자받은 도이치뱅크에 가게를 압류당할 위기까지 몰렸지만, 은행을 옮겨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게를 확장(102평)하여 운영했다. 미용업이 피부미용보다 더 짧은 노동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실에 착안하여 미용실도 함께 차리는 사업수완을 발휘했다. 가게 앞쪽에는 향수-화장품 판매대를 설치하고 뒤쪽 공간에는 피부관리 시설을 마련하고, 복층구조인 위층에는 미용실을 설치한 복합적인 비즈니스 공간이었다. 남편도 피부과 진료 간 호인력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 가게 이름은 자기 이름과 남편 성을 조합하여 H-C G. 라고 지었고, 개업 기념품으로 고객을 위한 커피·음료 잔도 디자인해서 주문할 만큼 신바람이 났다.

“나는 바보천치라서 겁이 없었네”

자기표현처럼 ‘겁도 없이’ 크게 시작한 개인사업에서 인력관리가 제일 힘들었다. 화장품 판매원 2명, 피부관리 보조원 2명, 미용사 1명 등 모두 5명의 종업원을 고용했는데 특히 기술자(마이스터)인 미용사가 탈선을 피웠다. 임신, 알코올 중독, 상습적인 지각과 결근 등으로 애를 먹었다. 결국은 탈선꾸러기 미용사를 해고했는데, 양심을 품은 그녀가 “마스터 없이 영업한다” 라고 <미용사노동조합>에 고발했다. “손기술로 돈 버는 직업은 자격증 있는 기술자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 라는 평범한 사실을 깨달은 오 사장은 자신이 직접 미용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 1997년 5월에 이웃 도시 콘스탄츠(Konstanz)에 있는 미용사 교습학원 문을 두드렸다. 가족과 떨어져 3개월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실습과목에서는 합격했지만, 이론시험에서는 2번이나 낙방했다. 1997년 12월에 간신히 합격하여 이발사(Friseur-Handwerk) 마이스터(Meister)가 되었다. 남편은 “늙은 당신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양이 애처로워서 일부러 합격시켜 준 것 같다” 라며 늦깎이 헤어 드레서를 격려해 주었다.

사장-피부미용관리사-미용사라는 3개의 타이틀을 갖고 오현주는 2011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개인사업에 몰두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게를 열었고, 일요일 하루만 휴일이었다. 1974년에 독일에 온 이후 30년 동안 한국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 정도로 바쁘고 전쟁 같은 나날이었다. 늘그막에 시작한 미용사 자격증 공부에 정신이 없어서 가게 계약이 종료된 것을 깜빡해 자신을 고발했던 미용사에서 가게를 빼앗기다시피 넘겨준 뼈아픈 사건도 있었다. 시련을 삼키고 사업장 규모를 줄여서 시내 변두리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할 정도로 끈기와 성실을 잃지 않았다. 2007년에는 미용·화장품(Friseur und Kosmetik) 비즈니스에서 25년 동안 헌신한 공로를 축하하는 명예-증서(Ehren-Urkunde)를 로이틀링엔 수공예협회(Handwerkskammer)로부터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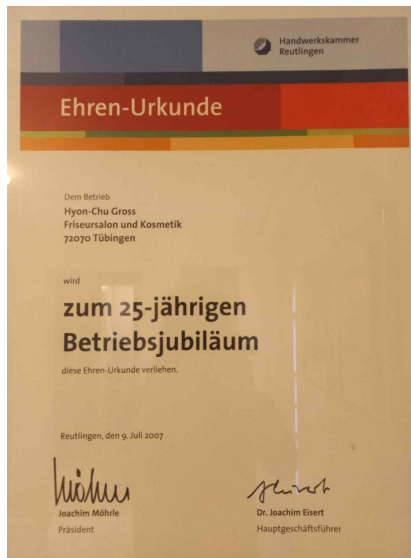


사진 자료 6): 로이틀링엔 수공예협회가 2007년에 오현주에게 수여한 25년 근속 개인사업 명예-증서

개인 비즈니스 30년을 되돌아보면, 조건 없이 응원해 준 남편과 바쁜 엄마를 견뎌준 자식들의 희생이 함께 만들었던 ‘패밀리 엔터프라이즈(Family Enterprise)’에 다름없었다. Mr. G는 10여 년 동안 남자 간호인력으로 일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얻은 아들딸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방과 후 학습 도우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조기 은퇴했다. ‘워킹 맘’ 부인이 사업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격으로 자식 교육과 집안 살림을

도말았다. “내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은 항상 말없이 기다려 주고 단 한 번도 ‘안돼!하지 마!’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은 남편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오현주는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가게에 매여 집밥을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 식사는 퇴근 후 근처 단골식당에서 때우다시피 했다고 미안해했다. 오랜 자영업으로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4명의 자녀를 잘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노후생활을 위한 부동산을 구매하여 관리할 만큼 재정적으로 편해졌다.

## 2) 피부미용관리사-미용사에서 부동산 임대업자로

튀빙겐 시내에서 북쪽으로 언덕배기를 3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오 여사의 3층 집이 있다. 1997년에 저축과 남편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보태서 집값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고 은행 융자를 받아서 장만했다. 원래는 2층이었으나 2004년에 3층을 얻는 확장 공사를 했다. 1층은 오 여사 부부가 사용하고 2층과 3층에 있는 방 5-6개를 단기 또는 장기 임대하여 손님을 받고 있다. 비교적 넓은 정원에는 장미와 피오니(목단)가 만발하고 텃밭에서는 고추와 깻잎 등 ‘한국적인’ 푸성귀가 자라고 있다. 오 여사는 왜 언제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

서독은 주택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거주권을 시민의 기본권리로 보장하는 ‘사회주택(Sozialwohnung)’ 정책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지방자치기관이 사회주택 건설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택은 일반/개인 주택으로 전환되었다. 주거보조금(Wohngeld) 제도는 1965년에 서독에서 법제화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가족 수, 연간소득총액, 담보대출금 등을 합산하여 주거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오현주는 간호조무사 월급 1,300마르크에서 월세로 월 500~700마르크를 지출했었다고 어렵פות이 섰했다. 신혼 시절 정부 주택보조금을 받아 1977년에 첫 등지를 틀었던 공공아파트가 건축 10년이 지나 민간아파트로 전환되었다. 기존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 여사는 1981년에 살고 있던 30평대 아파트를 처음으로 구매·소유했다. 동서독 통일 이후 1990년대 들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 탓인지 이 아파트를 팔아 짹짹한 수익을 올렸다. 자영업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시장의 매력에 뜬 오 여사는 환갑이 지난 2005년 전후에 임대업 사업을 구상했다. 사업 은퇴 후의 돈벌이를 미리 걱정한 것이다. 2007년 뒤늦게 퇴직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부부가 받는 연금을 합쳐도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하다는 현실감각도 임대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여자(아내)가 돈주머니를 꼭 쥐고 있어야지 그 집안이 잘 경영된다.”

오 여사는 2009~2020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사고 되파는 과정을 반복하여 재미를 톡톡히 봤다. 2004년 미국 투자-벤처 금융 기업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낮은 은행 이자로 부동산을 살 수 있었다. 운이 좋게도 투자(투기?)한 아파트가 수년 사이에 2배 넘게 가격이 상승했다. 2023년 9월 현재 오 여사는 부부 공동 900평 단독주택 외에 본인 이름으로 총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오 여사가 집중적으로 투자한 해발 350m 산 구릉 지역은 공기가 좋고 대중교통도 편리하여 비싼 거주지이다.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과 비슷하다”라고 오 여사는 땅의 가치를 쉽게 비유했다. 단독주택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고, 튀빙겐대학 의과대학과 병원도 도보 15~20분이면 갈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오 여사는 자랑했다. 참고로 2019~2020년 통계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의 자기 집 보유율은 노르웨이 80.3%, 이탈리아 72.4%, 영국 65.2%, 프랑스 64.1%, 독일 50.4%, 스위스 41.6% 등이다.<sup>18)</sup>

임대 수입 관리는 누가 하는지 묻는 말에 오 여사는 ‘와타시(私, わたし)’라고 뜬금없이 일본어로 대답했다. 임차인/숙박 손님과의 예약과 사무 처리 등을 도맡고 있는 Mr. G에게 불만이 없는지 되묻자, “아내가 그 돈을 잘 사용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웃었다. 오 여사는 “여자(아내)가 돈주머니를 꼭 쥐고 있어야지 그 집안이 잘 경영된다.”라는 외할머니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다고 그 웃음에 대답했다. 독일 보통 사람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세금 등의 부담이 없는지 물었더니, 증여를 통해 자식들에게 나눠주려고 궁리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최근에 신설된 (부동산과 별개로 부과되는) 토지세도 무섭지만, 10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판매하면 그 수익금의 4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18) 문수현, 『주택, 시장보다 국가: 독일 주택정책 150년』(서울: 이음, 2022), 18쪽, 22쪽.

#### IV. 나, 가족, 공동체: 미시적 사생활의 역사

30대 초반에 손님 노동자 신분으로 독일로 건너와 부동산 임대업자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 여사가 지난 반세기에 축적(안)한 독일-한국 커뮤니티와의 사회관계망은 어떤 모양일까? 간호조무사 시절 옛 동료들과는 지금까지 가깝게 지내며 초창기 튀빙겐 한인사회 구성에 한몫했을까? 나의 이런 상투적인 의문에 대해서 오 여사는 지역 한국인과는 왕래와 사교가 거의 없이 일종의 고립된 삶을 살았다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어린’ 독일 남자를 ‘피어서’ 재혼한 자신을 ‘양공주’—그녀가 직접 끄집어낸 단어이다—취급하는 동료들의 날 선 시선이 싫었다. 또한, 독일에서는 하층민들이 도맡는 간호-간병인이라는 힘든 육체노동을 직업으로 가진 남편도 한국 사회에 내 세우기에 떳떳하지 못했다고 오 여사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국 전통 예절에 어두워 저지른 실수 또는 ‘나쁜 경험’도 한몫했다. 한국에서 방문 학자로 온 가족을 반갑게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 대접을 했을 때, 식사 예절에 어긋나게 거실이 아닌 부엌에서 커피를 서빙 했다는 비난 어린 뒷담화도 한국인과의 교제를 꺼리게 했다. 그리고 60년대 말 일찍부터 독일로 ‘유학’ 온 간호 학생, 한국에서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 단기 속성과정을 수료한 간호조무사—이런 내부의 ‘다른 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과 구별 짓기가 오현주를 미운 오리 새끼처럼 바깥으로 튕겨낸 또 다른 이유일 것으로 짐작된다.

자신을 “알잡아 본다” 라고 오해(?)하여 한인사회를 자발적으로 멀리한 오현주의 불뚱은 자식들에게 번졌다. 교포사회와의 접촉이 의도적으로 단절된 환경에서 성장한 1.5세대—한국에서 태어난 두 딸—은 한국 전통문화와 낮가림하며 자랐다. 독일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다른 문화·인종·가치관의 틈바구니에 끼여 정체성의 혼란을 외롭게 겪어야만 했다. 13세 때 독일에 온 첫째 딸은 한국말을 이해는 하지만 쓰기와 말하기를 거의 잊어버렸다. “엄마는 자기 사업밖에 모르는 예고이스트!” 라고 오 여사에게 대들기도 했다. 둘째 딸도 ‘접경지대’에 방치된 희생자였다. 학교로 가는 버스에 튀빙겐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한국 간호사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그녀에게 호기심으로 던지는 반복적인 질문들—너는 어느 나라에서



왜 왔니? 엄마 아빠는 뭐 하시는 사람들이니? 등등—을 퍼부었다. 딸이 “엄마에게 이력서 제출하라고 할게요!” 라고 쏘아붙였다는 에피소드를 오 여사는 쓸쓸한 표정으로 들려줬다.

독일어를 전혀 모른 채 독일학교 시스템에 던져진 청소년 두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 약간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서독 연방정부는 197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동반·초청한 자녀도 독일 아동과 같은 교육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다. ‘손님 가족’이 모국으로 돌아가서도 잘 적응하도록 ‘동화’보다는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삼아 공교육을 했다. 독일어로 진행되는 정규 수업과 구분하여 출신 국가별 ‘민족학급’을 편성해 모국어 수업을 병행하는 “이중전략”을 펼쳤다. 흥미롭게도 연방정부의 이중언어 교육방침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실행한 모범 사례가 1970년대에 가장 많은 외국인 학생이 살았던 바덴-뷔르템베르크주(튀빙겐이 속한 광역 지역)와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였다.<sup>19)</sup> 오 여사의 두 딸이 이 경우에 정확히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튀빙겐 시내에 있던 ‘외국인 학교’에서 1년 동안 독일어 교육을 받았다. 정규학교에 같은 학년으로 편입한 두 딸은 ‘왕따’ 같은 큰 어려움 없이 공부했다.

이때의 경험 때문일까? 둘째 딸은 보훔 대학교에서 언어교육학/한국학을 전공하여 외국인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자식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밝아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있다. 두 자매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고 그리워하지도 않았으며 “독일을 고향처럼” 여기며 살고 있다. 독일로 도망(?)간 엄마가 남긴 빈자리에서 아빠와 살아야만 했던 3년의 세월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그 옛 기억과 마주하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오 여사가 대변해 주었다.

다른 한편, 이주 2세대에 해당하는 독일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은 한국어를 전혀 못 한다. 아이들이 빨리 독일어를 배워서 현지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은 일부러 멀리했기

---

19) 1970년에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서독 전체 외국인 학생의 31.1%가 재학하며 선두에 섰고,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28%로 그 뒤를 이었다. 1979년에는 그 순서가 바뀌었다. 최재호, 「1960-70년대 서독의 이주노동자 자녀 문제와 통합적 교육정책에 대한 회고」, 『독일연구: 역사·사회·문화』, 40(2019), 171~172쪽. 통계는 각주 41) 참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는 여러 개의 외국어 습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오 여사는 후회했다. Mr. G와 사이에 태어난 장남(D)은 앞에서 언급했던 어린 시절의 ‘인종차별적인 손가락질’이 지워지지 않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결혼 후 가족여행으로 중국과 베트남에 갔을 때, 현지인들이 자기를 모국어도 모르는 ‘ABC(American Born Chinese)’로 취급했다고 냉소적으로 뱉었다. 싸구려 동남아 패키지 단체여행과 비교하면, 한국에 가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비싸서 지금까지 ‘어머니 나라’에는 가보지 못했다고 덤덤히 말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들은 한국적인 뿌리에 전혀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오 여사가 내게 귀뜸해 주었다.

장남이 겪었던 자기 정체성의 분열과 인종차별적인 피해는 3세대에게도 대물림되었다. 오 여사 장녀의 아들인 외손자 J(1999년생)도 외삼촌 D와 비슷한 나쁜 기억을 성장통처럼 삼켜야만 했다. 어린 시절의 J는 자신을 반-독일인 + 반-한국인이라기보다는 100%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포함하여 누구도 일상생활에서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유별나게 한국 전통을 강조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김새를 따져 ‘중국인’이라는 놀림을 당하면서 ‘한국적 뿌리(Korean Heritage)’를 ‘극복해야 할 나쁜 감정(bad feeling)’으로 여겼다. 본인이 바꿀 수도 없는 차이점을 끄집어내서 자신을 ‘외국인(alien)’ 취급하는데 상처받았고, ‘출생지(origin)’를 묻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청년이 될 무렵부터는 이런 ‘타고난’ 약점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고자 J는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자신의 ‘외모’를 빌미 삼아 던지는 무례한 질문을 열린 마음으로 접수하여 친밀한 대화를 이어가는 연결고리로 삼았다. ‘한국적인 것’에 대한 타자의 호기심에 자신도 접속하여 좀 더 깊은 사قم으로 발전시켰다. 좋은 싫든 자신의 일부가 된 한국 전통·문화를 미래 아들딸(4세대)에게도 자랑스럽게 전달하겠다고 J는 다짐했다.<sup>20)</sup>

“어머니는 제 롤-모델입니다”

막내딸(M)이 어머니에게 갖는 감정은 복잡하고 이중적이다.<sup>21)</sup> “한편으로

20) J에 관한 위 이야기는 그가 나에게 보낸 2023년 9월 28일 이메일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1) 이하 내용과 직접 인용문의 출처는 막내딸 M이 “우리 어머니: 하나의 견해(Unsere Muttereine Perspektive)”라는 제목을 붙여 2023년 9월 28일에 나에게 직접 보낸 편지이다.

는 큰 감사, 존경, 감탄과 이해”를 보내는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고난과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M의 회고에 따르면, 어머니(오현주)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기 사업에 눈코 뜰 수 없을 만큼 바빴지만, 자식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어릴 때부터 승마, 스키, 발레, 악기, 윈드서핑 등을 배우도록 주선했고, 아들딸이 기죽지 않도록 필요하면 직원이나 친한 이웃 사람을 자기 대신 보내서 돌보게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삶은 M에게 당황함을 안겨줬다. ‘입양아’로 알고 있던 두 언니와 자신은 ‘이복 자매’ 관계임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았다. 또한, 한국 교포사회와 멀리하는 어머니 탓에 튀빙겐 한인교회<sup>22)</sup>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를 중도 포기한 아픈 기억도 있다. 교회까지 차를 태워주고 간식거리를 챙겨주는 다른 한국인 부모님과는 달리 가게 운영에 쫓겨 응원하지 못하는 엄마를 원망하며 한국말 배울 기회를 놓친 것은 큰 후회로 남는다.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M은 자신들이 다른 평범한 독일 가정과는 다른 태도와 가치관으로 양육되고 있다고 느꼈다. 독일 친구들이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듬뿍 받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랐다면, 자기 형제자매들은 “항상 공손한 거리와 위계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각기 다른 가치관을 앞세우는 “두 문화에 걸쳐 있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은 두 문화 중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난관을 마주하게” 됨을 경험으로 체득했다. 다행스럽게도, 바쁜 여성 사업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이 대학생-직장인-아내와 엄마라는 인생의 고비를 통과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M은 고백했다. “여성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기꺼이 싸울 줄 알고 이뤄내는 어머니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약한 여성’의 이미지를 내면화하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미성년 시절의 애증(愛憎) 관계는 ‘마이 웨이’를 실천했던 여성 선배-동지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으로 마침내 승화되었다. M이 자기 아들딸의 이름에 어머니의 이름 한 자씩을 끼워 넣어 각각 ‘Tom Hyon’과 ‘Ben Chu’로 지은 것은 개인 오현주의 삶에 보내는 헌정(獻呈)이었다.

---

22) 유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1976년에 창립된 독일남부지방한국교회 소속이다. 튀빙겐 한인교회에서 초창기 운영했던 한글학교는 현재는 중단된 프로그램이라고 이유제가 알려줬다.

반세기 가까이 튀빙겐 교포사회와 의도적으로 단절된 일상을 살았던 오 여사가 한국(인)과 다시 선이 닿은 것은 5~6년 전부터이다. 부부가 거주하면서 공유-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단독주택에 2017년에 처음으로 한국 손님이 찾아왔다. 지금까지 대부분 투숙객은 다른 도시에서 튀빙겐으로 출장 온 회사원이나 공부하러 온 대학생, 튀빙겐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 등 독일인 단기숙박객이었다. 그런데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유학하러 온 한국 대학원생을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받아들인 이후 한국인 손님들과 인연이 닿기 시작했다. 그의 친구들에게도 홍보되면서 한국인 교환학생과 방문학자 등이 손님으로 머물렀다. 이들은 장기 투숙객이기 때문에, 같은 집에 살면서 한국의 소식을 한국 음식 등과 교환할 수 있었다. 고맙게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연줄을 놓아주어서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 비공식적인 게스트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오 여사는 덧붙였다.

“따뜻한 손으로 줄 때 받아요”

어느 날 오 여사는 자신이 직접 담근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우리 방을 노크했다. 대구의 이름난 장인이 만든 값있는 장독을 특별히 장거리 구매하여, 아마존을 통해 국제소포로 받은 귀한 효소에다가 튀빙겐의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될 만큼— 좋은 물로 빚은 가양주(家釀酒)라고 자신의 수제품을 선전했다. 남편 Mr. G를 포함해서 아들딸 사위 며느리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서 가족 모임이 재미가 없다고 말했었는데, 어른이 주는 술마다 덤석덤석 받아 마시는 내가 어여뵈을까. 아닐 것이다. 오 여사가 정성으로 숙성시킨 막걸리는, 정원 귀퉁이에 키우는 껌잎처럼, 자신마저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한국적인 것’에 대한 오마주 또는 향수병 달래기의 상징적인 의례이리라. 염치가 없어 팔순 할머니가 내미는 막걸리를 사양하는 시늉을 하니, “따뜻한 손으로 줄 때 받아요”라고 오 여사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근근절약 정신이 투철한 오 여사에게 막걸리 담그기는 호사스러운 취미 아닌 취미이다. 십 년이 훨씬 넘은 벤츠 고물 밴을 아직도 털털거리며 끌고 다니는데, 디젤 엔진 차량의 도회지 운행이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아들 가족이 사는 슈투트가르트에 갈 수 없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낀 돈을 ‘할머니’ 오현주는 가족에게 배분다. 멀리서 늘 걱정해주고 잘 살기를 응원해주는 이종사촌 동생에게 두유 만드는 전기제품과 그 사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었다. 나는 막내딸 점심 파티에서 만난 며느리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는 오 여사의 ‘따뜻한 손’을 보았다. 첫째(손녀)가 쓰던 고장 난 유모차를 둘째(손자)에 힘들게 사용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던 할머니가 독일 며느리에게 주는 육아용 선물이다.

귀국하기 하루 전 오후에 집주인 부부 정원에서 번개 모임을 했다. Mr. G가 특별히 사 온 ‘독일식 순대’를 안주 삼아 남은 막걸리를 나눴다. 낮술 탓일까. 오 여사는 장남에게 걸었던 남다른 기대에 못 미치는 섭섭함을 토로했다. 다른 여자 자식들과는 다르게, 아들이 베를린에서 대학 다닐 때 매달 용돈을 넉넉히 주었다. 딸들처럼 자립한다고 힘들게 아르바이트하지 말고 학업에만 전념하도록 특별히 배려했다. 아들에게 결혼 후에는 자기 집 2층에서 함께 살 것을 권유했지만, 도회지 생활이 더 좋다는 핑계로 현재 슈투트가르트 좁은 아파트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무엇보다도 쾌찜한 것은 결혼 후에 상의도 없이 아들 맘대로 아버지 성을 버리고 아내 성을 선택한 일이다. 손녀 손자에게 친할아버지의 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을 물려주어 ‘집안의 대가 끊기는’ 불효를 저질렀다고 오 여사는 말했다.



사진 자료 7): 오현주 집 정원에서 필자가 2023년 6월에 찍은 부부 사진.

“해외에서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걷는다.”

오현주는 독일 체류 30년 만인 2004년에 한국을 방문했다. 개인사업으로 짬이 당연히 없었겠지만,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오 여사는 “한국에 갔다가 독일에 있는 가족들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늘 두려웠다.” 라고 말했다. 옛 남편과의 숨바꼭질 또는 권위적 국가권력에 대한 피해의식? 구체적으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그녀의 한국방문을 한 세대 동안 망설이게 했는지 나는 물어보지 못했다. 첫 방문에는 남편 Mr. G 대신에 막내딸 M이 동행했다. 제2세대 중에서 예외적으로 어릴 때부터 한국문화·전통에 유난한 애착과 호기심을 가졌던 그녀가 가족 대표로 뽑힌 셈이다. M이 9살 때 다니던 한인교회의 한글학교를 그만두게 했던 엄마의 뒤늦은 보상이었을까? M은 첫 한국 기행 또는 ‘엄마의 한국 나들이’ 인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단지 또 다른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마다 혹은 제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매 순간 달라 보였습니다.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이야기, 또 다른 삶에 빠져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인생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저희 어머니를 알아보고 챙겨주시는 한국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M은 한국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가 ‘이모’, ‘삼촌’, ‘누나’ 라고 서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밤늦게까지 이야기 삼매경에 빠지는 낯선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튀빙겐에서 숨어 살던 외톨이가 서울에서 친척을 만나 갑자기 감정적이고 바쁜 일상을 보내는 것을 옆에서 신기하게 관찰했다.

오 여사는 이후 2007년, 2012년, 2022년 등 모두 4번 한국을 방문했다. 두 번째 방문에는 남편 Mr. G와 막내딸과 사위가 동행했고, 세 번째 방문에는 막내딸, 손녀 손자와 함께 다녀왔다. Mr. G에게 한국방문 소감을 묻자, “아내의 친척들을 만나서 좋았지만, 너무 다른 나라였다.” 라고 짤막하게 응대했다. 한국 여행의 단골 동반자인 막내딸과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는 ‘고향’인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그리운 이모 이모부와 함께 옛 추억에

빠지기도 했다. 막내딸 M은 처음에는 자기도 외국인 취급을 받고 한국식 예의범절에 서툴러 친척 만나는 것이 불편했지만,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서울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독일의 어느 도시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고 존평했다. 주인공인 오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친 한국방문 인상을 묻자, “어릴 때 고아가 된 나를 불쌍하게 여겼던 친척들을 반갑게 만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았지만, 지난 60년 동안 한국이 너무 많이 변해서 오히려 낯설었다.” 라고 종합 평가했다. 제주도 외할머니가 단골이셨던 점쟁이 예언처럼 “해외에서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걷는” 것이 자기 팔자인 것 같다고 오현주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구술사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오 여사가 ‘독일에서의 파란만장한 반세기 삶’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독일로 이주해 온 결정을 후회하거나 살면서 겪었던 차별이나 나쁜 기억은 없었을까? 1970~1980년대 당시에는 한국과 비교하면 독일(서독)이 안전, 주택, 교육, 생활 수준 등에서 훨씬 좋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뻐했다고 그녀는 회상했다, 독일어에 익숙해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 유일한 불편한 점이었다. 이주노동자-자영업자로서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식-손자 세대까지 이어진 인종차별적인 배타성과 종업원에게 고발당해 가게를 빼앗기다시피 했던 사건은 아직도 속이 시리다. 독일 남자 손님 요구대로 전기 칩으로 안면 피부 털을 하나하나 뽑는 시술을 하면서 말았던 살타는 냄새 때문에 아직도 독일의 그 유명한 소시지를 잘 먹지 못한다고 오 여사는 털어놓았다. 이런 사소한 에피소드를 제외한다면 자신을 ‘독일 시스템’ 혜택을 받은 행운아라고 확신했다. 약간의 개인적인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그것은 독일 사회의 구조적(사회경제적인) 불평등 탓이 아니라 자기 개인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겼다.

오 여사는 독일인 평생 친구를 사귀었거나 가깝게 참여하는 모임이 있을까? “하나도 없다.” 라는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연애-신혼 시절에 잠시 왕래했던 남편 친구들과 간호(보조)사 직장 동료들은 (위에서 설명했던 이유로) 점점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늙은 부부만 남았다. 그리고 ‘음식문제’ 만을 대입해 보면 오 여사와 Mr. G 사이에도 건너지 못하는 간격이 있다. 오현주는 이제는 목이 까칠까칠해서 더 이상 독일 빵을 주식으로 삼지 못하여 간단한 한국요리를 일상적으로 먹고, 남편은 자기 스스로 ‘독일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한국 커뮤니티와도 단절되고 독일 이웃과도 교류가 거의 없는 오현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까? 일반적으로 이주민·디아스포라는 ‘정체성 협상’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초국적인’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sup>23)</sup> 오현주에게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그녀는 독일 이주를 또 다른 ‘삶의 기회’로 환영하여, 능동적인 직업적 변신으로 현실을 자기 의지대로 개조하고, 국제결혼 여성에게 쏟아지는 내부(한인사회)와 외부(독일사회) 공격을 자발적인 ‘외톨이 되기’라는 자기방어적 방식으로 돌파하면서 ‘정체성 협상’의 에움길을 완성했다. 초국적 자기 정체성의 민족적·문화적 뿌리를 어디에서 찾느냐는 보충 질문에 오현주는 ‘일본’이라는 또 예상 밖의 대답을 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자, 오현주는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난처해했다. 일본에서 태어나 7살까지 그곳에서 살았고, 제주도에 돌아와서도 15살까지는 일본말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소녀-청소년이 간직한 일종의 ‘노스텔지어 아이덴티티’일까? 여든 플러스 나이에 재발견한 무의식적인(?) ‘일본 친화성’은 그녀가 20년 전인 2007년에 남긴 다음과 같은 민족주의-글로벌 시각의 발연과 어긋난다.

제 인생의 나무는 한국 소나무에 뿌리를 두고, 독일 참나무의 튼튼한 줄기와 같으며, 내 자식과 손주들이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튀빙겐, 보훔, 에센, 베를린, 바이블링엔, 만하임, 하일브론, 뒤스부르크에 걸쳐 건강한 나뭇가지를 뻗어냅니다. 제게 조국과 고향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면서도, 참 신기하게도 닮아있습니다.<sup>24)</sup>

위 인용문은 2007년에 출간된 『내국인: 외국인은 어떻게 튀빙겐 시민이 되었나』라는 소책자에 실린 오현주의 인터뷰 기사에서 따온 것이다. 자신의 한국적 뿌리가 독일 이주 이후에 자손들을 통해 어떻게 독일 전역으로 갈래를 쳐서 뻗어가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이주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출발점이 한국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오현

23) 김영순·남혜경, 『초국적 정체성과 상호문화소통: 파독 간호사 이야기』 (성남: 북코리아, 2022), 58쪽, 441~442쪽.

24) Jacob J. L. Lohrmann, *Inländer: Wie aus Ausländern tuinger wurden* (Tübingen: Universitätsstadt Tübingen, 2007), p. 42. 독일 출신 미국 재야학자가 튀빙겐에 거주하는 28명의 외국 출신 이주자의 간단한 이력과 직업을 소개/인터뷰한 기사 내용의 일부이다.



주는 팔순이 넘은 지금(2023년)에 왜 민족주의적 감정이 퇴색했을까? 한국에 관해 간직했던 ‘원형’ 기억이 독일에서 ‘생성된 기억’과 섞여서 국적 없는 ‘재구성 기억’으로 변질 또는 격상된 것일까?<sup>25)</sup> ‘조국의 배반자’를 대하듯 따지는 나에게 그녀는 “민족이나 나라보다는 평생 애들만 생각하며 살았어요.”라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파독 간호인력 단체와 한인교포가 펼치는 각종 사회-정치(민주화·통일)운동과는 저만치 떨어져 ‘자랑스러운 한민족이 아니라 행복한 개인으로’ 살았다는 변명 아닌 항변이다. 잠들어 있거나 강그리 잊힌 ‘민족주의적 감정’의 불씨를 살리려는 것처럼, 나는 ‘한국 정부는 만 65세가 지난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가 원한다면 국적을 회복시켜 주고 있다’라는 최신 뉴스를 알려줬다. 오현주는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라고 망설임 없이 즉답했다. 그리고 독일 교포들이 귀국하여 살고 있는 경남 남해의 ‘독일인 마을’에도 (그곳에서 여생을 보낼 의도는 없지만) 가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 V. 나오며: 흠어진 기억, 다시 쓰는 이야기

구술사는 말을 걸고 기록하는 연구자(역사가)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는 연구대상자의 공동작업이다.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가치중립적으로 탐구하는 사람과 ‘기억’의 실타래를 주관적인 무늬와 패턴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함께 연출하는 춤 또는 씨름이다. 역사가가 주제넘은 개입과 유도 질문으로 ‘살아있는 사료’를 압박하거나 오염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 구술자는 가능한 정직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하찮거나 위대했던) 삶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삽입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오현주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구술면담을 준비했다. 개인/가족사진 자료, 자격증과 같은 증빙 문서, 자기 이야기가 실린 팸플릿, 가게 터 답사와 개인사업 때 사용하던 용품 등과 같은 ‘증거(evidence)’를 나에게 제공했다.

풍부한 구술자료와 증거물을 확보한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나의 논문’으로 윤색, 편집, 번역, 또는 오남용한다. 내가 결정해야 할 마지막 과제는 이 구술사의 장르이다.<sup>26)</sup> 한국-독일 수교 140주년(1883-2023년)을

25) 이영석, 「재독일 교민의 한국에 대한 기억」, 『독일어문학』, 40(2008) 참조.

26) 나는 역사 쓰기를 실증주의 사술에서 탈주하여 일종의 문학적인 장르—회극, 비극, 풍자극, 로망스 등— 서사구조 선택에 비유한 화이트의 주장을

기념하여 온갖 나쁜 조건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모범적인 사례연구에 맞추어 꾸밀 것인가? 고아-공순이-이혼녀-양공주로 차별받으며 숨어 살았던 ‘하층민 여성’의 얼룩진 삶을 복권 시키는 ‘아래로부터의/서발턴 역사’로 연출할 것인가? 구술된 콘텐츠를 어떤 격자에 끼워 넣어 어떤 앵글로 편집해야 좀 더 ‘객관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는 구술사로 갈무리될 것인가? 이런 딜레마를 마주하면서 이 사례연구에 내포된 의의, 유용성, 기대효과 등을 가족사, 공공역사, 이주-이민사, 구술생애사, 트랜스내셔널 역사 등이 교차하는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첫째, 오현주의 구술생애사는 20세기 후반 대한민국 역사의 역사에 대한 민족주의 과잉 담론에서 벗어난 대안적인 역사 쓰기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가난한 ‘조국’의 불모가 되어 독일에 ‘수출’된 해외인력의 피와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대 담론은 그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현주는 분단되고 전쟁으로 파괴된 조국을 부흥시키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독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혼녀라는 운명을 돌파하기 위해 부러진 무거운 날개를 꿰매고 닦아서 그곳으로 날아갔다. 자랑스러운 조국의 딸이 아니라 행복한 개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외길 모험이었다. 오현주가 한국말을 매개로 하는 언어공동체를 가족들에게 계승시키지 못했고, 한국의 문화 전통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민족주의적 실패’라기보다는 현지 적용의 ‘글로벌 전략’이었다. 근대화와 민족주의 담론이 공범이 되어 하찮게 취급·삭제했던 미시적 사생활 역사의 복권이라는 측면에서 재평가하면, 오현주의 삶은 해피엔딩이다.

둘째, 오현주의 구술생애사는 ‘말할 수 있는 서발턴’<sup>27)</sup>이 서술하는 ‘공공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디아스포라 사회학자의 분류법을 적용한다면, 한국과 독일에서 살아났던 그녀의 전 생애는 통합과 동화에 편입되지 못한 ‘고립과 주변성’이라는 공통 분모로 수렴된다.<sup>28)</sup> 일본에서 태

지지한다. 헤이든 화이트, 천형균 옮김,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메타역사』(서울: 문학과지성사, 1991) 참조.

27) 탈식민주의 문화비평가 스피박의 유명한 논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을 패러디한 나의 표현이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서울: 그린비, 2013), 1부 텍스트 참조.

28)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고려대학교

어나 조실부모하고 가까운 혈육이라고는 이복동생과 외할머니밖에 없었고, 청소년기에는 타지를 홀로 떠돌며 제 밥벌이를 했던 ‘불쌍한 인간/레미제라블(Les Misérable)’이었다. 20대 후반에 이혼하여 간호조무사 신분으로 독일로 건너와 착한 독일 남자와 재혼했지만, 오현주는 독일 사회에 동화되지도 못했고 민족공동체에서도 소외된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서발턴이었다. 오현주의 이런 독특한 주체적인 위치가 역설적으로 주류 역사에서 제외된 전형적이지 않은 이단적인 이야기를 구술할 힘이며 자격이다. 그녀의 구술생애사가 공공역사에 포함되어야 마땅한 이유이다.

셋째, 여성 이주노동자 오현주의 증언은 1970년대 한독관계사의 맨얼굴과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 인력수출’의 역사적 성격을 가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 덕분에, 파독 간호사-광부 선발 절차에 작동했던 개인적인 인맥과 뒷거래 관행 등을 우리는 더 잘 알게 되었다. 파독 간호인력의 주요 업무와 근무지, 급여와 주거 환경 등에 대한 사전정보가 당사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던 ‘깜깜이 해외 취업’이었다는 사실도 오현주의 구술로 재확인된다. 제각기 다른 배경/동기/목표를 품고 독일-미국-중동 등지에서 이주-정착 노동자로 고생하며 꿈꾸었던 사례연구(구술사)가 더 많이 채집된다면, 제3공화국-유신정권이 지휘했던 국민-국가 만들기 운동이라는 큰 열개 그림의 무늬와 색깔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오현주의 구술사는 예외적인 비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과 국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되물어 보는데 결코 생략할 수 없는 한 조각 모자이크이며 퍼즐(puzzle)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넷째, 이 글은 주인공 오현주의 독백이 아니라 대가족의 진술과 증언이 보태진 입체적인 구술생애사라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 선행 연구가 초창기 독일 이주노동자(광부 포함) 본인의 파란만장하고도 입지전적인 이야기에 한정되었다면, 오현주 구술사는 1.5세대(한국에서 데려온 장녀와 차녀), 2세대(재혼하여 독일에서 태어난 장남과 막내딸), 그리고 3세대(손녀·손자)가 다 함께 입을 모아 합창하는 가족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상세하게 적지는 않았지만, 가부장주의에 젖은 어머니 오현주와 딸들의 애증 관계, 어머니와 장남의 갈등과 충돌, 한국적 뿌리를 대하는 세대 간의 다른 가치관 등—해외 이주·정착 3세대가 펼치는 일종의 ‘가족 로망스’<sup>29)</sup>를 파편적으로나마 스케치하려고 노력했다. 오-G 부부가 낳고

---

출판부, 2004), 39~40쪽.

기른 총 12명의 2·3세대가 불협화음으로 부르는 ‘가족의 노래’는 다문화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잉태(발명)하는 ‘새로운’ 가족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성찰을 자극한다.

다섯째, 디아스포라 오현주에 대한 구술생애사는 직업으로서의 역사가의 본질(의무)과 작업 관행을 곱씹어 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역사가는 과거의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사실과 진리를 가치중립적으로 탐구하는 사회과학자인가? 아니면, ‘불완전한 과거’가 남긴 희미하고도 주관적인 ‘흔적(trace)’을 감정이입적으로 되짚어 복원시키려는 일종의 —막스 베버가 주창한— 문화과학자인가? 이 글에서 필자는 후자의 입장을 선호했다. 이제는 더 이상 ‘지금 여기에’ 없는 그리운 사람과 알게 모르게 옷깃을 스쳐 지나간 인연에 왜 나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던가! 그(녀)는 수백 년 전부터 이미/반복적으로 진술했지만, 왜 나는 아직도/처음처럼 그 메시지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현주 막내딸 M의 멋진 표현을 빌린다면, ‘나와는 다른 이야기,’ ‘나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 이야기,’ ‘여기서 멀리 떨어진 전혀 다른 문화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들은 말하지 않는 이야기…’ 이런 흩어진 기억과 ‘소리 없는 아우성’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는 시늉을 하는 나는 “역사는 끊임없이 다시 고쳐 쓰여야만 더 잘 보이는 안개 속의 거울”이라는 결론 아닌 결론으로 미끄러진다.

중앙대 역사학과, 교수, waldo@cau.ac.kr

주제어(Key Words):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 파독 한인 간호사(Germany-Dispatched Korean Nurse), 한인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 가족사(Family History), 한독관계사(History of Korea-Germany Relations), 서발턴/하층민 공공역사(Subaltern Public History)

투고일: 2023.10.19. 심사일: 2023.10.26. 게재확정일: 2023.11.23.

---

29)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적용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린 헛트, 조한욱 옮김,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맨스』 (서울: 새물결, 1999) 참조.

〈국문초록〉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독일 튀빙겐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육영수

본 논문은 1974년에 간호인력으로 독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튀빙겐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여성(Ms. Oh)의 구술생애사를 역사적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한다. Ms. Oh는 1942년 일본에서 태어나 양친을 잃고 1948년 부모님 고향인 ‘제주도’로 귀국하여 성장했다. 17세 이후에는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섬유공장 노동자로 홀로서기에 애쓰며, 주경야독으로 노력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얻었다. 첫 결혼으로 두 딸을 얻은 그녀는 이혼 후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독일로 건너갔다. 슈투트가르트 병원에 배치된 Ms. Oh는 같은 직장에서 대체 군복무 중이었던 독일 남성과 재혼 후 튀빙겐으로 이주했다. 한국에 두고 온 자녀들을 입양하고 재혼으로 얻은 아들딸을 부양하기 위해 Ms. Oh는 피부 관리사와 미용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30년 동안 개인사업을 경영했다. 합리적인 ‘독일 시스템’ 덕분에 독일에서 보낸 반세기는 행복했었지만, 교포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독일 사회에도 동화되지 못한 외톨이 인생을 살았다고 Ms. Oh는 회고했다.

Ms. Oh에 관한 사례연구가 갖는 의의, 중요성, 기대효과 등을 다음과 같다. 첫째, 자랑스러운 민족의 일원이 아니라 행복한 개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그녀의 이야기는 디아스포라 한인의 이주-이민사를 과잉된 ‘민족/국가 중심주의’ 시각으로 수렴·표준화한 선행연구에 대한 반성과 재성찰을 제안한다. 둘째, 이 구술생애사는 ‘말할 수 있는 서발턴/하층민이 서술하는 공공역사’의 일종이다. 독일과 교포사회의 주변부를 맴돌았던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서발턴이었던 Ms. Oh의 독특한 주체적인 위치는 역설적으로 주류 역사에서 무시된 전형적이지 않은 미시적 사생활의 역사를 기록하는 힘이며 자격이다. 셋째, 이 글은 주인공의 독백이 아니라 대가족의 증언이 보태진 입체적인 가족사라는 장점이 있다. Ms. Oh 부부와 1·5세대(한국에서 태어난 장녀와 차녀), 2세대(재혼하여 독일에서 태어난 장남과 막내딸), 그리고 3세대(손녀 손자)—이들이 사랑하고 미워하며 연출했던 ‘가족 로맨스’는 세계화·다문화 시대가 잉태/재발명하는 ‘새로운’ 가족관계의 모델과 방향을 모색·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 Happy Individual Rather Than a Proud Korean:  
An Oral Life-History of Female Korean Diaspora in Tübingen, Germany**

Yook, YoungSoo

This article intends to historicize the oral life-story of a Korean female diaspora (Ms. Oh) who migrated to Germany in 1974 as assistant nurse. Born in Japan 1942, Ms. Oh became an orphan and in 1948 returned to Jeju Island, home base of her parents, Her grandmother-in-law had taken care of Ms. Oh until she left for independence at the age of 17. She worked at garment factories in Busan and Seoul. She married, gave birth to two daughters, and divorced. In 1972 Ms. Oh obtained the license of assistant nurse and in 1974 was dispatched to Germany. Working at Stuttgart general hospital, she met there German gentleman and re-married him. Thereafter, she changed her career from nurse to skin care cosmetics & hair dresser, Ms. Oh had run her own business for 30 years. Reflecting a half-century residence in Germany, she appreciates the grateful ‘German System’ and cherishes happy memories—not as a proud Korean but as a survived individual.

The article concludes by emphasizing three new & important perspectives in a historiography of migration and diaspora studies. (1) This case study, primarily based on oral interviews with Ms. Oh, discloses the fallacy and short-comings of dominant discourse which tends to homogenize a diverse spectrum of Korean diaspora according to excessive Korean nationalism. (2) This oral life story presents a kind of ‘public history’ written by a subaltern who belonged to neither Korean community nor German main stream. Ms. Oh’s isolated marginal social status paradoxically becomes power and authority for her to liberate unique desires and alternative voices uncontaminated by stereotyped prejudices. (3) This article consists not exclusively of a solo recollection of protagonist (Ms. Oh), but collaboration of other family

‘자랑스러운 민족’ 을 넘어 ‘행복한 개인’ 으로 살아남기

members. A bitter and sweet ‘Family Romance’ portrayed by three generations of Ms. Oh’s extended family tree will shed a new light on what an ideal family model should b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 society.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귀옥, 『구술사 연구: 방법과 실천』 (과주: 한울, 2014).
- 김영순·남혜경, 『초국적 정체성과 상호문화소통: 파독 간호사 이야기』 (성남: 북코리아, 2022).
- 나혜심, 『독일로 간 한인 간호여성』 (서울: 산과글, 2012).
- 마르틴 뤼케/이름가르트 쾨도르프, 정용숙 옮김,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서울: 푸른역사, 2020).
- 문수현, 『주택, 시장보다 국가: 독일 주택정책 150년』 (서울: 이음, 2022).
- 박찬경, 『독일로 간 사람들』 (서울: 눈빛, 2003).
-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태혜숙 옮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서울: 그린비, 2013).
- 양희순, 『파독: 파독간호 40년사』 (슈투트가르트/독일, 2008).
-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 윤종천, 「한국해외개발공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동방미디어 제작, (디지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01).
- 윤택림 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서울: 아르케, 2010).
- 윤택림,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2019).
- 이유재·이선영, 『파독광부 생애사』 (국사편찬위원회, 2022).
- 이재경·윤택림·이나영 외, 『여성주의 역사쓰기—구술사 연구방법』 (서울: 아르케, 2012).
- 이하나 등 지음, 『공공역사를 실천 중입니다』 (서울: 푸른역사, 2023).
- 최종고, 『한강에서 라인강까지: 한독관계사』 (서울: 유로, 2005).
- 린 헌트, 조한욱 옮김,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망스』 (서울: 새물결, 1999).
- 헤이든 화이트, 천형균 옮김,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 메타역사』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1).
- Jacob J. L. Lohrmann, *Inländer: Wie aus Ausländern tuinger wurden* (Tübingen: Universitätsstadt Tübingen, 2007).



2. 논문

- 김학선·홍선우·최경숙, 「파독간호사 삶의 재조명」,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18-2(2009).
- 문수현, 「나치 이후의 ‘개인’의 자리: 서독에서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독일연구』, 45(2020).
- 박재영, 「파독 간호사·광부의 독일 정착과 삼각이민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5(2013).
- 서문진희, 「독일 남성과 결혼한 파독여성의 생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3(2015).
- 이영석, 「재독일 교민의 한국에 대한 기억」, 『독일어문학』, 40-1(2008).
- 조형열,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독일 튀빙겐에서 만난 안내관」, 『역사연구』, 42(2021).
- 최재호, 「1960-70년대 서독의 이주노동자 자녀문제와 통합적 교육정책에 대한 회고」, 『독일연구: 역사·사회·문화』, 40(2019).
- 한운석, 「‘재독 한인 여성’에서 ‘한국계 이주민 여성’으로—재독한국 여성모임의 정치운동」, 『역사비평』, 120(2017).
- 허부문, 「대중가요에 나타난 이주와 이산: 초창기에서 1980년대까지」, 『호모 미그란스』, 14(2016).

##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년 2월 16일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민인종연구회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대상과 범위

1. 이 규정은 본 연구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 활동의 범위는 본 연구회에서 주관·참여하는 모든 학술회의 발표문과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이민인종연구”(가칭)의 투고원고이다.

### 제3조 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1.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2.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과 활동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와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총무이사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호선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4.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4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은 확정되고, 연구회는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5.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 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반복·경감할 수 있다.
6.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공표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의 연구회 연구 활동 참여를 3년 동안 금지한다.

#### 제5조 위반사태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연구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는 이후의 학술지 논문투고가 3년 이상 금지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7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

『호모 미그란스』 원고 작성 요령

---

---

2022년 12월 16일 개정

제 1 조: 원고의 작성

1. 원고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 제목은 로마 숫자(I, II, III...)로 하며, 절 제목은 숫자(1,2,3)으로 한다. 위치는 맨 왼쪽에 둔다.
3. 투고 원고는 본문, 필자의 소속, 직위, e-mail 주소, 핵심 주제어(Key Words)[한글(영문)], 국문 초록, 영문 초록, 참고 문헌 순으로 구성한다.
3. 본문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1)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처음 나올 때에만 ( )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서양 인명은 처음 나올 때 1회에 한해 full name으로 쓴다.  
(예) 인명 - 에릭 홉스봄(Eric Hobsbaum)  
(예) 책명 - 『사회과학사전(Dictionary of Social Sciences)』(반각)
  - 2) 기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예를 따른다.
    - (1) “ ” : 인용  
(예) 그는 “진리를 설명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 (2) ‘ ’ : 강조 또는 재인용  
(예) “르네상스와 ‘시민적 휴머니즘’ ” ; ‘프랑스 사노당(FTSF)’
    - (3) 『 』(반각기호) : 문헌, 저서, 신문 등  
(예) 홍길동, 『서양문화사』
    - (4) 「 」(반각기호) : 논문  
(예) 홍길동, 「1930년대 독일 노동조합」
    - (5) · (가운데 점) : 동일 사항의 나열  
(예)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걸쳐

(6) 진한 글씨 : 인용문에서의 강조

(예) 프랑스 대혁명의 3대 표어는 자유, 평등, 우애이다.

(7) 영화명, 미술작품명 등은 < > 로 표기한다.

3) 외국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각주의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과 실례를 준수해야 한다.

\* 기호 √ 는 띄어쓰기를 표시한다.

1) 인용 문헌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끝에 편(編) 또는 ed.를 기입한다. 영어 및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 단행본과 논문의 제목에서 전치사, 관사, 접속사를 제외한 단어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 관사의 경우도 처음에 오는 경우는 대문자로 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문헌의 경우 ed., 대신 dir., hg., 을 쓸 수 있다. 부제가 있는 경우 : (콜론)을 사용한다(예3).

2) 인용 문헌의 페이지 표기는 다음과 같다.

(예1)홍길동√편,√『서양사강의』√(서울:√길동출판사,√1992),√12쪽.

(예2)홍길동,√「그리스인의√역사서술」,√허균√편,√『서양고대사√강의』√(서울:√길동출판사,√1996),√12쪽.

(예3)Gary√Kates,√ed.,√*The√French√Revolution:√Recent√Debates√and√New√Controversies*√(London√&√New√York:√Routledge,√1998),√p.√12.

(예4)J.√S.√Morrill,√“*The√British√Patriarchy?√Ecclesiastical√Imperialism√under√the√Early√Stuarts*”,√A.√Fletcher√&√P.√Roberts,√eds.,√*Religion,√Culture,√and√Society√in√Early√Britain*√(Cambridge:√Cambridge√University√Press,√1994),√p.√12.

3)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된 논문은 「」(반각기호)안에, 단행본은 『』(반각기호)안에 제목을 넣는다.

(예1)홍길동,√「호레이쇼√얼저와√성공신화」,√『미국사연구』,√4집(1996),√12쪽.

홍길동,√『프랑스√근대사√연구』√(서울:√길동출판사,√1998),√12쪽.

(예2)木畑洋一,√『帝国のたそがれ:√冷戦下のイギリスとアジア』√(東京:√東京大学出版会,√1996年).

(예3)草光俊男,√「東アジアの構築:√表象空間の発見と近代ドイツと日本」,√『史学雑誌』,√3号(2004).

4)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 서양어(西洋語)로 된 논문은 “

” (한글타자용)안에 제목을 써넣고, 단행본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

5) 단행본의 경우 이름, 성, 책명(이탤릭), 권수(있는 경우), (출판지명: 출판사, 연도)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1)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51), p. 9.

(예2)Michel Vovelle, *La Révolution contre l' Eglise-De la Raison à l' Etre Suprême* (Paris: Gallimard, 1988), pp. 12-13.

(예3)Michael Schneider, *Streit um Arbeitszeit. Geschichte des Kampfes um Arbeitszeitverkürzung in Deutschland* (Köln: Suhrkamp, 1984), p. 15.

6) 정기 간행물의 경우, 이름, 성, “논문제목”, 잡지명(이탤릭), 권수 (연도), 인용 페이지 의 순으로 기입한다.

(예 1)James Eayrs, “The Political Ideas of the English Agrarian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18-3(1952), p. 287.

(예2)Serge Bianchi, “Les Curés Rouges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249(1982), p. 364.

(예3)J. Kocka, “Zurück zur Erzählung? Plädoyer für Historische Argumentatio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10(1984), pp. 395-408.

7)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두 번 이상 인용될 경우

(1) 바로 앞의 것인 경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경우: ‘같은 책’ 또는 ‘같은 논문’.

(예)홍길동, 『서양 문화사』(서울:길동출판사, 1998), 13쪽. - 홍길동, 같은 책, 25쪽. 서양어(西洋語)의 경우: Ibid. 로 표시한다.

(예)William Sewell,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 The Language of Labor from the Old Regime to 18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 120.

- Ibid.

- Ibid., p. 130.

(2) 바로 앞의 것이 아닌 경우

op. cit., loc. cit., 혹은 ‘앞의 책’, ‘전게서’, ‘상게서’ 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저자와 책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여서 표기

한다.

(예1)홍길동, 『서양의 지적 전통』(서울:길동출판사, 1998), 13쪽.

→ 홍길동, 『서양의 지적 전통』, 15쪽.

(예2)William Sewell,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 The Language of Labor from the Old Regime to 18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 120.

→ Sewell,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 p. 122.

8) 번역서의 경우, 역자, 번역서명, 출판사항만을 쓰고 원서의 명은 표기하지 않는다.

(예)E. J. Hobsbawm, 『강명세 역,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서울:길동출판사, 1994), 30쪽.

9) 웹 사이트 인용의 경우, 인용문의 주소와 검색일을 표기한다.

(예)<http://www.answers.com/topic/multiculturalism> (검색일: 2009년 11월 14일).

10) 참고 문헌은 자료, 저서(단행본), 논문 순으로 배열한다. 참고 문헌은 언어별(한국어, 영어, 기타 외국어 순)로 구분하여 배열한다. 참고 문헌의 표기는 각주의 저서, 논문의 표기 방법을 따르지만 서양사의 경우는 성, 이름, 저서명 (출판지: 출판사, 연도) 순으로 표기한다.

(예)

Brantlinger, Patrick ed., *Dark Vanishing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3).

Sewell, William, *Work and Revolution in France: The Language of Labor from the Old Regime to 18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제 2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부칙

- ① 본 규정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호모 미그란스』 편집·투고 규정

---

---

### 제 1 장 편집위원회

제 1 조 (편집위원회) 본 연구회는 학술지 『호모 미그란스 -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Homo Migrans - Migration, Colonialism, Racism*)』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 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구성, 소집, 의결) 편집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조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계획, 논문 투고 및 심사, 기타 원고 게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비롯한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엄정하게 심의 결정한다.
  - (1) 투고된 원고 1차 심사 및 심사 진행 여부 결정
  - (2) 연구논문과 비평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 (3)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의 확인과 게재 여부의 판정
  - (4) 여타 원고의 기획과 집필 의뢰
  - (5) 기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4.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위해 연 2회,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1/3의 발의로 소집한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편집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2 장 투고

제 4 조 (투고 자격) 원칙적으로 학술지에는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특수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비회원에게도 원고를 청탁할 수 있다.

제 5 조 (원고의 종류)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글은 연구논문, 비평논문, 서평 및 기타로 한다.

제 6 조 (원고의 투고)

1. 투고원고의 컴퓨터 파일을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2. 투고원고는 컴퓨터 프로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아 한글’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3. 투고 원고에는 필자의 소속, 지위, e-mail 주소, 핵심 주제어(Key Words)[한글(영문)], 국문 초록, 영문 초록, 참고 문헌이 첨부되어야 한다.

(1) 초록에는 제목과 이름이 표기되어야 한다(영문 초록의 경우는 영문 표기).

(2) 초록의 분량은 250단어(관사 포함)로 제한한다. 핵심 주제어는 5단어 이내로 제한하며 국문과 영문이 표기되어야 한다.

(3) 논문 본문 말미에 필자의 소속, 지위, e-mail 주소가 기재되어야 한다.

4. 각주를 포함한 투고 원고의 매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50매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지정된 분량을 초과하거나 『호모 미그란스』 원고작성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는 반송할 수 있다.

제 7 조 (원고작성요령) 투고 논문의 분량, 원고 작성상의 주의점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을 둔다.

제 8 조 (학회지 저작권 일부 이용과 수입)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온라인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이메일(도장이나 서명이 있는 동의서 스캔파일 첨부) 또는 우편으로 본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작권의 수입은 본 연구회에 귀속된다.

### 제 3 장 심사

제 9 조 (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2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10 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1.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
2. 논문 주제의 독창성 및 학술적 가치
3. 논리전개의 명확성 및 문장 표현력
4. 참고문헌 활용의 적절성 여부
5.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제 11 조 (심사 결과 및 판정) 심사결과는 A(게재 가), B(수정 후 게재가),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 A: 게재

A, B: 게재

B, B: 수정 후 게재

A, C: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A,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B, C: 수정 후 재심사

B, D: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C, C: 수정 후 재심사

C, D: 게재 불가

D, D: 게재 불가

제 12 조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논문심사 소견 및 판정서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3조 (심사 결과 통보)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14조 (기타 원고 심사) 논문 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형식, 내용, 분량 등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 **제 4장 학술지 발행**

제 15조 (발행자): 이주사학회 회장으로 한다.

제 16조 (발행횟수 및 일자): 연 2회, 5월 31일과 11월 30일에 발행한다.

#### **부칙**

- ①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③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호모 미그란스』 연구회 회칙

< 제정: 2009년 2월 16일 >

< 개정: 2015년 2월 9 일 >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이주사학회(Korean Society for Migration Histor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관련 분야의 연구 촉진 및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대회 개최
2.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행
3. 연구자료 및 정보 교환
4. 공동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5. 해외 연구자 및 관련단체와 학술교류 사업 추진

### ◆ 제 2 장 회 원

제4조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회의 정회원은 이민인종 및 관련 학술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의 석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 준회원은 학생회원, 기관회원, 기타 이에 준하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8조 연구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 회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 제 3 장 총 회

제9조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권을 갖으며 주요 사업을 결의한다.

제10조 총회는 출석한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은 이사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4 장 임 원

제12조 본 회의 회장은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제13조 모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는 이사 중 편집위원장을 선임하고 편집위원에게 학술지 발간을 위촉하며 그와 관련된 편집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15조 (회장)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본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를 임명한다.
3. 회장의 직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이사 가운데 연장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장의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시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 회가 추진하는 일체 업무 및 회계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 5 장 재 정

제17조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사업 소득,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 본 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 6 장 연구윤리

제20조 본회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둔다.

1. 본 위원회는 이주사학회 연구윤리 위원회라 칭한다.
2. 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임원 중 약간 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3. 본 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행위를 감독하고, 부정행위 적발시 규정에 따라서 조취를 취한다.
4. 총회에서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감독, 검증 결과를 보고한다.

#### ◆ 제 7 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결정을 따르거나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개정 회칙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